

연구 2005-18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Production of Welfare Statistics by Local Governments

고경환 장영식
오영희 권선진
김명중 남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복지의 향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역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복지통계는 그 지역사회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당면한 지역문제를 제시하고, 정책결과의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 등에 활용된다. 물론 지금까지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계들이 활용되었고 일부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통계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결과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 96종(지역의 인구수·가구 수, 사업체 수 등) 중 64종이 전국 공통통계로서 지역간 비교를 통한 정책수립에는 유용하지만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할 정책수립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통계연보에 수록된 복지관련 통계는 보고통계가 10여종, 조사통계가 2~3종, 그리고 가공통계가 수개로 아주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와 이들의 연결고리인 통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체계개발을 위해 Logic model을 사용하였다. Logic model은 프로그

램의 투입자원, 활동, 산출, 목표그룹 등에 관련된 논리적 연계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본특성인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성과의 요소별 통계체계를 개발하였다. 통계체계는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에 따라 크게 5개 부문(공공부조,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으로 분류하였다. 각 부문은 배경, 구조(대상·전달·재정), 산출(급여), 성과, 그리고 통합요소별로 통계체계를 수립하였다(5개 부문의 420개 개별통계).

또한 본 연구는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을 제시(7개 부문의 203개 개별통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생산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들 통계들이 보다 쉽게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생산을 둘러싼 기본환경과 여건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고경환 책임연구원의 주도 아래 장영식 지식경영정보실장과 오영희 책임연구원, 또한 외부의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중 일본 게이오대학교 산업연구소 연구원, 남현주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와의 공동연구의 산물이다. 연구진의 각장 집필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고경환)

제2장 지역복지통계의 개념과 생산현황(고경환, 장영식)

제3장 선진국 지역복지통계의 현황분석(김명중, 남현주)

제4장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오영희, 고경환)

제5장 지역복지통계의 체계개발(권선진, 고경환)

제6장 지역복지통계의 효율적 생산방안(장영식, 고경환, 오영희)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고경환)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서울대학교 이승욱 교수, 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최봉호 과장, 한국여성개발원의 문유경 박사께 감사를 표한다.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본원의 최병호 연구위원, 이삼식 책임연구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김현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기울인 연구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은 차후 기회에 더 노력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5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0
제2장 지역복지통계의 개념과 생산현황	32
제1절 지역복지통계의 개념	32
제2절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	36
제3절 지역복지통계의 문제점	69
제3장 선진국 지역복지통계의 현황분석	72
제1절 호주	72
제2절 독일	84
제3절 일본	100
제4절 시사점	120
제4장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	122
제1절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필요통계	122
제2절 외국의 사회복지에 비취 본 필요통계	128
제5장 지역복지통계의 체계개발	131
제1절 체계개발의 방법론 고찰	131
제2절 체계개발 모형과 구성 틀	133
제3절 복지제도별 통계체계개발	135

제6장 지역복지통계의 효율적 생산방안	187
제1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187
제2절 제도개선 및 예산의 확보	192
제3절 조사 및 보고통계의 개선	193
제4절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	197
제7장 요약 및 정책과제	237
제1절 요약	237
제2절 정책과제	240
참고문헌	245
부 록	249

표 목 차

〈표 1-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2- 1〉	사회복지기능을 가진 사회제도의 특성	35
〈표 2- 2〉	(광역)지역복지통계의 세부현황: 보고통계	40
〈표 2- 3〉	(광역·기초)지역복지통계의 세부현황: 보고통계	41
〈표 2- 4〉	국가복지통계 생산현황: 보고통계	43
〈표 2- 5〉	복지정책DB상의 생산가능 통계현황	52
〈표 2- 6〉	조사표 중 장애인분야 주요내용	54
〈표 2- 7〉	조사표 중 노인분야의 주요내용	55
〈표 2- 8〉	시·도의 복지관련 조사현황	57
〈표 2- 9〉	시·군·구의 복지관련 조사현황	60
〈표 2-10〉	지역복지통계 생산현황(조사통계) - 지역특성 및 사회복지환경 ...	63
〈표 2-1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현황: 조사통계	65
〈표 2-1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세부현황: 조사통계	66
〈표 2-13〉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세부현황: 조사통계	68
〈표 3- 1〉	아동복지통계 현황	76
〈표 3- 2〉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수발공급자 현황	78
〈표 3- 3〉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80
〈표 3- 4〉	저소득층 임대주택자들을 위한 보조금	81
〈표 3- 5〉	무숙자(無宿者)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통계	82
〈표 3- 6〉	소득보조프로그램	83
〈표 3- 7〉	독일연방통계청의 사회보험급여 내용	85
〈표 3- 8〉	독일연방통계청의 공공부조급여 내용	87
〈표 3- 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현황	89
〈표 3-10〉	중증장애인 현황	91

〈표 3-11〉	성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현황	92
〈표 3-12〉	요양시설과 수발현금급여 수급자	93
〈표 3-13〉	노인보호시설 현황	95
〈표 3-14〉	사회부조의 종류에 따른 사회부조 현황	96
〈표 3-15〉	욕구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금 현황	98
〈표 3-16〉	사회복지종합동태조사	105
〈표 3-17〉	장애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사	108
〈표 3-18〉	장애인실태조사	109
〈표 3-19〉	심신장애인 생활실태조사	110
〈표 3-20〉	장애인 사회참가의 기초조사	111
〈표 3-21〉	장애인 생활요구조사	111
〈표 3-22〉	와상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112
〈표 3-23〉	고령자시책에 대한 의식조사	113
〈표 3-24〉	고령사회대책 실태조사	113
〈표 3-25〉	고령자복지현황조사	114
〈표 3-26〉	고령자복지기초조사	115
〈표 3-27〉	고령자생활조사	115
〈표 3-28〉	개호서비스 이용 상황 실태조사	118
〈표 3-29〉	요개호 및 요지원 고령자 실태조사	119
〈표 4-1〉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123
〈표 5-1〉	공공부조제도의 통계체계의 구성 틀	136
〈표 5-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통계체계 구성	137
〈표 5-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138
〈표 5-4〉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139
〈표 5-5〉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141
〈표 5-6〉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143
〈표 5-7〉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144
〈표 5-8〉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145

〈표 5-9〉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147
〈표 5-10〉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149
〈표 5-11〉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성틀	150
〈표 5-12〉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151
〈표 5-13〉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151
〈표 5-14〉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152
〈표 5-15〉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153
〈표 5-16〉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154
〈표 5-17〉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154
〈표 5-18〉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155
〈표 5-19〉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156
〈표 5-20〉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157
〈표 5-21〉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158
〈표 5-22〉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159
〈표 5-23〉	여성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160
〈표 5-24〉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161
〈표 5-25〉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162
〈표 5-26〉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163
〈표 5-27〉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163
〈표 5-28〉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164
〈표 5-29〉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165
〈표 5-30〉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166
〈표 5-31〉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167
〈표 5-32〉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168
〈표 5-33〉	노인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169
〈표 5-34〉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170
〈표 5-35〉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171
〈표 5-36〉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172

〈표 5-37〉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173
〈표 5-38〉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174
〈표 5-39〉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175
〈표 5-40〉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176
〈표 5-41〉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177
〈표 5-42〉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178
〈표 5-43〉 장애인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179
〈표 5-44〉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180
〈표 5-45〉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181
〈표 5-46〉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182
〈표 5-47〉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183
〈표 5-48〉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184
〈표 5-49〉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185
〈표 5-50〉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186
〈표 6- 1〉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총 괄	200
〈표 6- 2〉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인구·가족)	201
〈표 6- 3〉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사회복지일반)	204
〈표 6- 4〉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206
〈표 6- 5〉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공공부조	207
〈표 6- 6〉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아동분야	210
〈표 6- 7〉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여성	217
〈표 6- 8〉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노인분야	220
〈표 6- 9〉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장애인	227
〈표 6-10〉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보육	2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내용의 흐름도	31
[그림 2-1]	생산범위에 따른 지역 및 국가통계의 비교	34
[그림 4-1]	복지정책 DB의 구성도	45
[그림 4-2]	복지정책 DB의 업무 구성도	47
[그림 4-3]	복지정책 DB의 개념 구성도	48
[그림 5-1]	체계이론에 입각한 통계체계모델	134

부 표 목 차

<부표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필요통계	249
<부표 2>	모자 및 부사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254
<부표 3>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기초생활보장	256
<부표 4>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노인	257
<부표 5>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장애인복지	258
<부표 6>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아동복지	259
<부표 7>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모부자복지	260
<부표 8>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복지지원	261
<부표 9>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복지대상자	261
<부표 10>	복지정책 DB 상의 생산가능 통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262

Abstract

Research on the Production of Welfare Statistics by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revitalization of local authorit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re is a tendency to reinforce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a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to prepare a supply of welfare resource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n their own, it is still insufficient for them to achieve such goals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welfare and to establish and evaluate social policy, local authority needs various statistics and a statistical system that is a chain of those statistics.

In this study, we used a logic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al system. A logic model is a tool for demonstrating a logical linkage related to program resources, activities, outcomes, and target group. In other words, a logic model explains the process of acquir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outcomes (the satisfaction of needs) to achieve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by accepting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from social system and engaging in activities which is expected to lead to a specific result. Thus, a logic model generally consists of four elements: resource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tatistical system for each of those four elements based on the background statistics, which is a basic characteristic of local community. The statistical system i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ubjects of social welfare system: public assist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women services, elderly services,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Each category establishes a statistical system classified by background, structure (subjects, delivery, financing), outputs(social benefits), outcomes, and integrated elements (420 individual statistics in five categories).

In addition, this study allows for local authority to utilize individual statistics more easily by indicating the definition and production method of individual statistics that were used i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al system (203 individual statistics in seven categories). Finally, this study also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basic environment and given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roduction of statistic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produce those statistics more easily in the future.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다양한 통계와 이들의 연결고리인 통계체계의 개발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평가를 위해 종합된 통계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즉, 지역사회의 기본특성인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Input(투입), Process(과정), Output(산출), Outcomes(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각 단계의 통계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이며 현황도시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복지 분야에 국한하여 깊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계생산측면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둠.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체계를 개발하고, 나아가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연구목적을 둬.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은 지역복지통계의 생산실태와 주요 선진국의 생산체계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체계를 제시함. 나아가 생산해야 할 개별통계에 대해 통계정의와 산식 등을 포함한 통계생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로써 지역복지통계의 개념, 생산현황 분석 등에 대한 고찰
 - 국내 지역통계의 생산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 기존문헌 고찰
 - 일본·독일·호주 등의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종류·방법·생산주기·생산기관 등)은 기존문헌과 각 국가의 특정지방자치단체의 Home page 이용
- 지역복지통계의 수요파악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관련자 및 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계생산 관계자와 실무 간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II. 지역복지통계의 개념과 생산현황

1. 지역복지통계의 개념과 범위

- 지역복지통계의 개념은 일정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한 통계로서 국가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지역의 범위는

국가행정구역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대상

- 국가통계와 지역통계의 차이점은 수록하는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구분
 - 국가통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간한 연보로 시·도 단위의 자료수록
 - (광역)지역통계: 시·도가 발간한 연보로 구·시·군 단위의 자료수록
 - (기초)지역통계: 구·시·군이 발간한 통계연보로 읍·면·동 단위의 통계 수록
- 복지의 범위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가진 사회제도 모두(친족제도, 종교제도, 직장, 시장, 상호부조, 정부제도)를 포함.
 -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과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법률 제3조)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등에 국한할 것임.

2.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작성되는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을 생산방법에 따라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분류함. 지역복지통계 중 보고통계는, 국가단위 및 지역단위가 8종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단위의 8종 보고통계는 지역사회배경,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민간자원임.
- 조사통계는 국가단위가 7종, 지역단위가 5종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국가조사통계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활동계약자실태조사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사회통계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조사통계는 복지우선과제, 소득수준, 가족관계, 고용구조, 그리고 사

회참여의 5종(17개)으로 분류할 수 있음.

Ⅲ.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

-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 측면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현재의 복지선진국가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았음.
-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분석 한 결과 지방정부가 신규로 필요한 통계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분야로 정리할 수 있음.

1.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문제들의 시급성 정도
-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지역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

2. 아동·청소년복지통계

- 아동보호유형
 - 공식적 보호: 방과 전·후 보호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주간가정보호센터, 임시보호, 유치원, 기타,
 - 비공식적 보호: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족, 기타
 - 두 유형의 보호를 모두 받지 않는 아동
- 노동과 아동보호
 - 부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여건
 - 탄력적 근무시간 조절여부
 - 기업의 양육지원 내용

- 출산관련 복지제도 이용여부(육아휴직제도 등)

3. 노인복지통계

- 고령사회대책 실태
 - 건강상태(개호 필요여부 등)
 - 가구구성(독거노인 여부 등)
 - 경제상태(경제활동, 소득 등)
-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 노인요양시설 현황

4. 장애인복지통계

- 차별경험
-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5. 사회복지자원통계

- 자원봉사 및 NPO활동
-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

□ 신규 필요통계로는 복지선진국가들의 일반추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정책관련 내용으로 고령사회대책, 아동보호, 육아휴직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임.

- 장애인의 사회참여정도와 NPO활동과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에 대한 내용들임.

IV. 지역복지통계의 체계개발

- 오늘날 국민들의 사회복지, 후생, 여가 등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점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계에 대한 체계의 검토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도시행의 각 단계별 통계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Logic Model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Logic Model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체계로부터 인적·물질적 투입(자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입은 체계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성과인 유형·무형의 산출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궁극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써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흐름도(Flow-Diagram)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등 주요 5개 부문에 국한하여 통계체계를 개발하여 보았음.
- 통계체계의 구성 틀은 복지제도가 놓여 있는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구조통계(Input), 산출통계(Output), 성과통계(Outcomes), 그리고 복지제도 내외부 체계와의 관련성을 가진 통합통계로 구성하였음. 여기서 구조통계에는 대상, 전달, 재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음.
 - 5개 부문의 통계체계에 제시된 개별통계는 총 420개임.

V. 지역복지통계의 효율적 생산방안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가. 중앙정부의 역할

1) 통계생산 계획의 정보공유

-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
 - 중앙과 지방은 통계생산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설계, 조사 실시, 분석 그리고 예산의 확보에 있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호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유익함.

2) 통계전문가 양성 및 통계생산기법의 지원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통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필요
 - 현재 직무교육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교육이수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요구.

3) 복지통계생산의 표준화 방안 마련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조사실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사표 개발 및 분석이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조사결과의 활용이 해당지역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후 조사에서도 표준화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조사의 비교가능성이 높도록 조사표준화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

나. 지방정부의 역할

1) 통계생산 조직 및 인력의 확보

- 점차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강조되면서 통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걸 맞는 통계담당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인력의 확보는 수적인 충원에서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되어야 함.
- 또한 유능한 전문조사원의 원활한 확보는 조사실시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 조사원의 효율적인 면접조사방법과 조사원 DB 구축의 개발 등 조사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조사능력향상에도 주력.

2)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성제고에 노력

3) 통계생산실태 파악

- 현재의 지역복지통계생산 실태파악을 통해 향후 생산계획 수립

4) 복지정보 DB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복지통계에 대한 DB구축과 이를 통해 정보제공.
 - 여기에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그리고 기초자료 등이 될 것임.

2. 조사 및 보고통계의 개선

가. 조사내용의 표준화

-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실시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조사설

계 부문임.

- 어떤 항목을 조사하며, 그 산출방법과 중요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필요. 조사방법과 함께 각 항목의 정의 및 산출기준 등 조사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조사의 표준화가 요구됨.

나. 조사통계생산의 우선순위 결정

-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통계 중 우선적으로 생산할 통계가 무엇인지를 선정하고 이어서 선택통계는 점차 통계생산을 폐함.

다.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조사확대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통계생산을 위하여 국가통계의 생산방법과 기준을 참고함. 지역의 통계생산은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조사내용과 방법을 중앙과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복지정책DB 활용 강화 및 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와 업무보고의 방향전환이 필요.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통계를 받을 때에는 복지정책DB를 활용하도록 강제화.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정책DB가 지역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만 활용되고 풍부한 기초자료들이 사장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보고통계를 위해 별도 서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중 업무가 발생 될 수 있음.

마. 입력자료의 신뢰성 검토 및 개선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력자료의 가능범위나 로직을 미리 설정하여 덤으로써 입력자가 자료를 범위 밖의 것 또는 입력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거나,

나아가 틀린 로직자료가 입력되는 경우, 확인 또는 검토요망의 신호가 작동되도록 입력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

바. 지속적인 feedback 시스템의 운영

- 중앙정부는 복지정책DB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자료가 발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수정요구.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함과 아울러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미활용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동 시스템을 활용토록 독려.
 - － 신규공무원과 시스템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Online, Offline)

3.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

-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선정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준 파악,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활용, 그리고 현재 복지선진국의 통계반영에 두었음.
-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개별통계의 현황은 7개분에 203개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 － 노인과 장애인이 41개(20.1%), 아동 38개(18.7%), 공공부조 31개(15.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통계생산방법별로 볼 때 보고통계가 110개, 조사통계가 99개로, 통계필요정도별로 볼 때 기본통계가 91개, 선택통계가 112개로 구성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복지의 향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계들이 활용¹⁾되었고 일부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통계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서 전국 수준에서는 사회복지의 발전정도의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역수준에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얻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복지관련 항목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상호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통계의 부족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급증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

주1)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2005년)하고 필요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도입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반재원으로 보통·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각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경상적 수요의 경우)에 사용된 지역복지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1. 노인복지비: 경로당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수, 치매상담센터 및 지역사회시니어클럽수, 2. 장애인복지비: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수,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종사자 수, 장애인복지관 및 의료재활시설 수, 등록장애인 수, 3. 그 밖의 복지비: 아동시설종사자 수,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등이다(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용, 2005).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은 2005년과 2006년에 수립하여, 향후 4년(2007년 1월~2010년 12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결과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 96종(지역의 인구수·가구 수, 사업체수 등) 중 64종이 전국 공통통계로서 이는 지역간 비교를 통한 정책수립에는 유용하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통계연보에 수록된 복지관련 통계를 보면 보고통계가 10여종, 조사통계가 2~3종, 그리고 가공통계가 수개로 아주 미흡함을 알 수 있다²⁾.

지역복지통계가 수록된 전국공통통계의 보고통계로는 국민연금가입자,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 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이 있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보훈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등이다. 지역복지통계가 수록된 전국공통통계의 조사통계로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경제활동인구연보·농가경제통계(작성주기, 1년)등이 있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는 통계청이다.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복지통계로는 서울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3년), 서울시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5년), 경기사회지표(1년), 부산의 사회지표(1년), 대전시민의식조사(1년), 경북의 사회지표(1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1년),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1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매년) 등이 있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조사한 통계로는 종로구사회지표, 송파사회지표, 수원시사회지표,

주2) 조사통계는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실시조사를 하여 얻어진 제1의 통계(primary data)를 말하며, 보고(행정)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1차 통계에 어떤 연산을 가해 얻어진 통계로서 1차 통계에 비하여 해석적 특징이 있다(김선기, 1994).

부천시사회지표, 진주시사회지표, 그리고 태안군사회지표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공표하는 대부분의 통계는 보고통계이며, 조사통계는 일부생산하거나 또는 생산계획은 갖고 있으나 전문인력,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통계자료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종합된 통계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의 기본특성인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Input(투입), Process(과정), Output(산출), Outcomes(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각 단계의 통계가 필요하다. 참고로 통계체계를 개발하는 틀은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지역통계의 체계개발은 지방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HINCO(Human-Institutional-Natural-Capital-Other Components) 접근방법^{주3)}에 따라 개발하기도 한다. HINCO접근방법이란 지역통계의 분류체계 중 가장 큰 단위를 「인간적-제도적-자연적-자본적-기타측면」의 5개로 분류하여 한 분야의 속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새로운 통계수요의 제시 또는 세부제도 중심의 통계개발에 관심을 두어 왔으며, 현실적으로 연구결과가 통계생산으로의 연결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통계들과의 연결고리인 통계체계를 제시하고,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생산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계생산방법별로 분류하여, 조사통계는 국가조사통계에 지역통계생산에 필요한 항목의 추가 또는 생산방안(소지역추정법의 활용 등)을 모색하기 될 것이다. 다음 보고통계는 국가의 기존 통계생산망인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행정)’을 개선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보고통계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 수 및 이용자 현황 등 통계(복지인력 및 시설,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및 부랑

주3) Avrom Bendavid-Val, Regional and Local Economic Analysis for Practitioners, Praeger, 1983.

인 복지), 공공부조의 수급자 현황,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등이다. 가공통계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통계생산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의 분석, 통계생산 활동실태파악, 통계생산체계분석, 지역통계체계의 문제점 도출, 그리고 지역통계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지역통계의 생산현황과 관련하여 모든 부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이며 현황도시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복지 분야에 국한하여 깊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계생산측면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발전방향 - 연구자(연도): 김선기(1994) - 연구목적 :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발전방향 제시	- 문헌조사 -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지역통계체계의 실태분석 - 지역통계체계의 문제점 제시 - 지역통계의 발전방향 제시
주요 선행 연구 2	- 과제명: 지역통계생산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 이상연 서경숙(1998) - 연구목적: 지역의 특성을 스스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발전 방안 탐색	- 문헌연구 - 공동연구	- 지역통계 생산현황 분석 - 외국의 지역통계 생산현황 제시 - 지역통계의 문제점 제시 - 지역통계의 발전방안 제시
3	- 과제명: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 연구자(연도): 이병기(1998) - 연구목적: 지역통계의 수준향상	- 실태분석 - 사례분석 - 문헌연구	- 지역통계의 유형과 내용분석 - 지역통계의 수요분석 -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제시
본 연구	- 지역통계의 OUT-LINE(통계체계) 제시와 이 중 미생산 통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둬.	- 문헌고찰 - 공동연구 - 통계생산 실태조사 - 전문가 회의	- 지역통계의 생산 현황파악 - 외국 지역통계의 생산실태와 체계 파악 - 지역통계의 OUT-LINE제시 -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 모색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통계의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와 주요 선진국 지역통계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본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생산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통계의 생산까지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복지통계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확한 지역실정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통계체계 개발에 아울러 이에 대한 통계생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통계의 생산실태와 주요 선진국의 생산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산해야 할 개별통계에 대해 통계정의와 산식 등을 포함한 통계생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복지통계의 개념, 지역통계의 생산현황 및 생산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둘째, 주요 외국의 지역복지통계의 종류(항목), 생산방법, 작성주기, 생산기관 등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외국의 현황에 비취보았을 때 우리의 필요통

계로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정책기획(수행)자, 전문가 등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기본체계를 개발한다. 이때 체계개발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Logic Model을 적용하여 체계를 개발하며, 구성 틀을 제시한다.

끝으로, 지역복지통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통계생산과 연계하여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생산방안은 생산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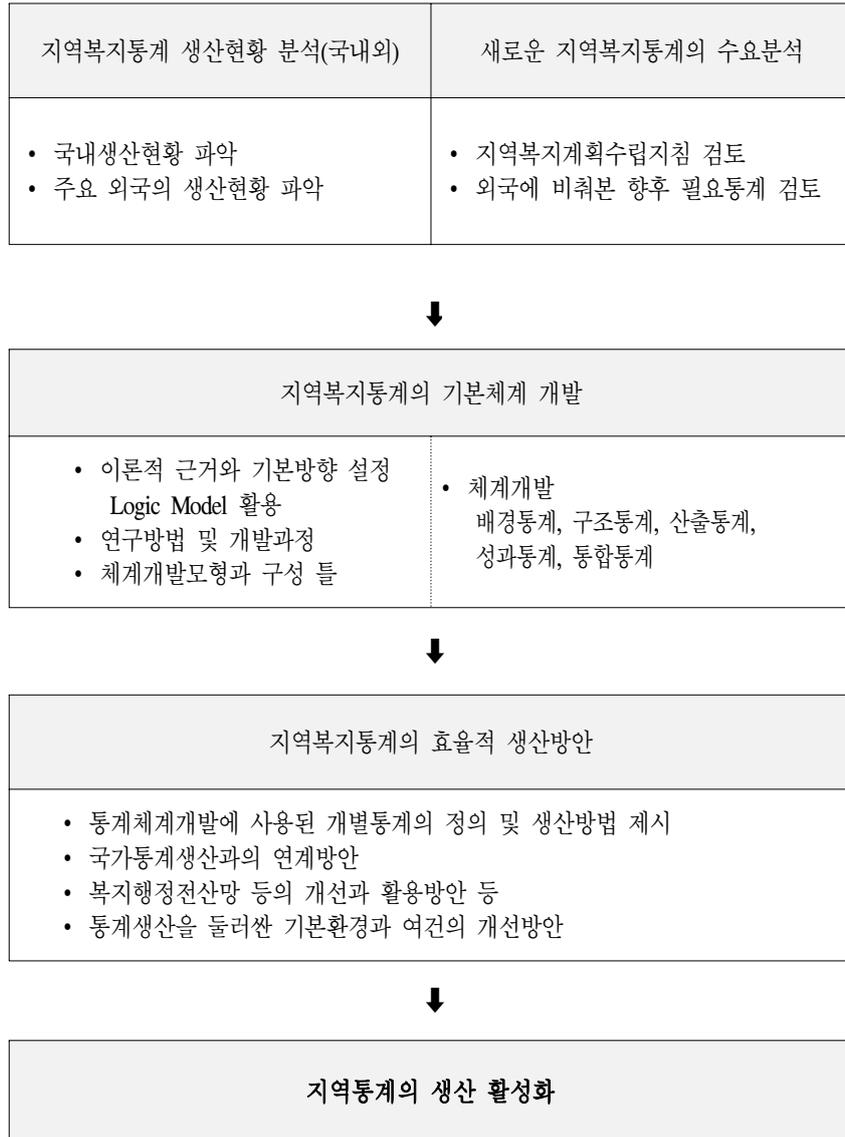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외 지역복지관련 문헌 연구로써 지역복지통계의 개념, 지역통계의 생산현황 분석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국내 지역통계의 생산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사회조사,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등)의 기존문헌을 고찰 한다. 일본·독일·호주 등의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종류·방법·생산주기·생산기관 등)은 기존문헌과 각 국가의 특정지방자치단체의 Home page를 이용한다.

둘째, 지역복지통계의 수요파악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관련자 및 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계생산 관계자와 실무 간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 1-1] 연구내용의 흐름도



제 2 장 지역복지통계의 개념과 생산현황

제 1 절 지역복지통계의 개념

1. 개념

지역발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통계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역통계를 활용하면 그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통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통계는 그 지역사회의 상태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등장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통계를 생산 및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의 대비개념으로서 ‘전국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소지역 단위별 또는 몇 개의 소지역을 합한 공간단위로 작성되어진 통계’를 말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포괄범위를 정하고⁴⁾, 지역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의 개념은 1) 국가행정구역을 나타내는 하부행정조직으로서 특정한 지정학적 경계를 갖는 범위와 2) 공통의 특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몇 개 행정조직을 포함하는 범위가 있다.

주4) 지역의 포괄범위에 따라 통계의 해석과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A광역시자치단체에 있던 기업 중 절반이상이 인근의 B시, C시로 옮겨가는 현상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통계를 행정구역단위로 생산하여 해석하면, A시는 분명히 제조업공동화 현상 발생 또는 소비도시로의 변화로 해석될 것이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A광역시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나 기업유치정책에 재정지원이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경제구역단위로 산출하여 해석하면, 산업의 지역재배치 또는 동일경제권내의 이동으로 해석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기업유치에 등에 대한 노력은 다른 분야로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센서스나 표본조사 또는 일반 행정 통계로부터 도출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에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 광공업,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 센서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는 조사주기가 커(약 5년 내외), 조사결과를 지역의 통계자료로서 활용하는 데는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통계는 그 지역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상세히 파악되어 해당 지역의 잠재력이나 개발가능성 등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자료와 함께 지리적 상태도 포괄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통계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주5).

본 연구에서 지역복지통계의 개념은 일정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한 통계로서 국가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범위는 국가행정구역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은 사회복지분야로 국한한다. 국가통계와 지역통계의 차이점은 생산되는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그림 2-1 참조). 국가통계는 중앙행정기관이 생산한 시·도 단위를 수록한 통계이며, (광역)지역통계는 중앙 또는 시·도가 생산한 시·군·구 단위가 수록된 통계이다. 그리고 (기초)지역통계는 중앙, 시·도 또는 시·군·구가 생산한 읍·면·동 단위의 통계이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가 모이면 국가통계가 되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에는 보고통계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조사통계가 관련될 것이다. 보고통계는 기초지역통계가 모여 광역지역통계가 되고 나아가 국가통계가 된다. 하지만 조사통계는 조사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각 지역별 표본규모가 작을 경우 국가통계는 생산할 수 있지만 지역통계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5)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통계연보』를 작성·발표하고 있지만, 주로 물리적이고 계량적인 지표에 한하고 있다. 비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는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등이 있다.

[그림 2-1] 생산범위에 따른 지역 및 국가통계의 비교

생 산 범 위		
읍·면·동	시(군·구)	시(도)
(기초)지역 통계		
(광역)지역 통계		
국 가 통 계		

2. 지역복지통계의 범위

사회복지의 개념을 학문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것은 각 국가나 사회마다 활동, 견해, 목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리고 변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Macarov, 1978:22~24). 즉, 자선, 교정, 복지국가, 복지사회 등의 용어가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범위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제도적 관점에 의거하여 다양한 기능과 범위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Perspectives)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무엇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사회복지”는 사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들의 특징과 기능들을 고찰함으로써 영역의 규정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섯 가지의 각 제도들은 아래와 같다.

- 가. 친족(kindship)제도: 출생, 정서적 지지(피부양자에게 서비스제공, 상담), 경제적 복리(사적인 소득보장체계 제공)를 위한 주요제도 기능
- 나. 종교(religion)제도: 비공식적인 지지와 상담으로부터 보건, 교육, 사회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회복지 급여지원.

- 다. 직장(workplace)제도: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 및 복지혜택(fringe benefit: 부가급여) 제공한다. 직장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연금, 의료보험, 육아휴가, 그리고 자녀의 대학학비 등을 보조한다.
- 라. 시장(Marketplace)제도: 사회적 자원이 시장제도를 통하여 구매자, 판매자, 생산자의 욕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배분된다.
- 마. 상호부조(mutual assistance)제도: 사회복지활동에 가장 명시적으로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 바. 정부(government)제도: 복지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는 기능으로 공적활동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가는 흔히 복지국가라 규정한다.

〈표 2-1〉 사회복지기능을 가진 사회제도의 특성

사회제도	주요 조직형태	일차적 기능	사회복지적 기증
친족제도	가 족	출산, 사회화, 보호, 친밀성, 정서적 지지	피부양자의 부양, 가족성원들 간의 금전적 지원
종교제도	예 당	영적인 계발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복지,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상담 등
직 장	기 업	근 로	근로자의 급여(기업복지)
시 장	생산자(기업) 소비자(가구)	재화와 용역교환	상업적으로 생산된 사회복지 상품의 제공
상호부조	각종 상호부조단체, 민간단체 등	상호부조, 박애	자조, 자원봉사,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정부제도	정부	집합적 목적을 위해 자원을 동원 및 분배	빈곤퇴치정책, 사회보장, 보건, 교육, 주택서비스

본 연구에서 복지의 범위는 <표 2-1>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적 기능을 가진 사회제도 모두를 포함하고자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과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법률 제3조)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등에 국한할 것 이다.

제 2 절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작성되는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을 생산방법에 따라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복지통계 중 보고통계에 대해 보면, 국가단위가 8종(82개 통계), 지역단위도 8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사통계는 국가단위가 7종, 지역단위가 5종(17개 통계)으로 정리된다.

1. 보고통계의 생산현황

가. 국가단위

국가단위의 8종 보고통계는 지역사회배경,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민간자원이다.

1) 지역사회 배경(23개)

지역사회 배경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23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규모, 연령별 인구수 및 비율, 유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인구규모·인구밀도·세대수,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이동 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대상별 인구수, 사회복지담당과 조직 및 인원 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사회복지관련 각종 기금현황, 사회복지관련 예산 현황,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 의료기관 수, 종교단체 수, 문화시설 수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총보고서」·「시도별추계인구」·「인구이동통계연보」·「인구동태통계연보」·「사회통계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공간현황」 등 이다.

2)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3개)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3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가입자,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 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적,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등 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8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8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특성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현황, 조건부 수급자 규모 및 사업참여현황, 자활후견기관 직원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등 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이다.

4) 노인복지(18개)

노인복지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18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인구 및 노인인구 비율,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성, 연령), 노인인구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현황, 연령별 인구구성비, 경로연금 수급 현황, 노인인구의 사회복지수급자 현황, 지역별 노인가구 비율,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분포, 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 경로당 현황, 연도별 경로식당 이용현황, 노인의 건강진단 현황, 노인복지예산 내역, 노인복지회관 사업실적, 사회복지관의 노인 복지사업 현황, 사회복지관의 노인재가사업 현황, 장묘시설 현황 등 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이다.

5) 장애인복지(7개)

장애인복지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7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의 성별현황, 장애인의 연령현황,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장애인 생활시설현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현황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이다.

6) 여성복지(10개)

여성복지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10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연령별 여성인구현황, 저소득 모자가정현황, 여성의 위원회 참여현황, 여성복지사업현황,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금 실적, 이혼건수 변화추이, 지역별·연령별 여성노인 인구현황, 여성 외국인 인구현황,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복지예산 현황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성부 「여성통계연보」 등 이다.

7) 아동복지·청소년복지(14개)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14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인구현황, 영유아보육대상 아동수, 지역별·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인구 현황,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인구 변화추이,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정원,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아동 정원, 영유아 보육률현황, 보육사업 예산

현황, 지역별 보육시설현황, 아동복지사업 계획 및 예산, 장애아 보육현황, 청소년 규모,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 그리고 청소년복지 예산현황 등 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성부 「여성통계연보」 등 이다.

8) 사회복지 민간자원(2개)

사회복지 민간자원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2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현황과 자원봉사자 교육 현황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이다.

나. 광역 및 기초단위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하는 지역복지통계의 수록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국가단위와 같다(표 2-2 참조). 지역단위의 보고통계 8종은 지역사회배경,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민간자원이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수록내용을 비교해 보면, 각 자치단체간 통계의 항목이나 내용에 있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일적이며, 발간시기도 매년 12월부터 매 익년 3월임을 알 수 있다.

〈표 2-2〉 (광역)지역복지통계의 세부현황: 보고통계

통계명칭	간행물명 (발간시기)	보고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기본통계	서울통계연보(매익년3월)	〈지역사회배경통계: 1종〉 1. 시·도의 기본현황 및 경제, 사회, 인구, 노동, 주택, 소득 등 16부문	연 (매년12월)
	부산통계연보(매익년3월)		
	대구통계연보(매익년3월)	2.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인천통계연보(매년12월)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취업현황 등	
	광주통계연보(매익년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대전통계연보(매익년3월)	4. 경로당(노인정) 현황	
	울산통계연보(매익년3월)	4. 노인교통수단 현황	
	경기통계연보(매익년3월)	4. 노인복지시설 수용	
	강원통계연보(매익년3월)	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충북통계연보(매익년3월)	5. 장애인 등록현황	
	충남통계연보(매익년3월)	6. 여성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전북통계연보(매익년3월)	6. 여성상담 실시현황	
	전남통계연보(매익년3월)	6. 모자보호시설 현황	
	경북통계연보(매익년3월)	7. 아동복지시설 현황	
	경남통계연보(매익년2월)	7. 보육시설 현황 등	
	제주통계연보(매익년2월)	7. 소년·소녀 가정현황	
		7. 사회복지시설 현황	
		7. 부랑인시설 수용	
		8. 묘지 및 납골시설현황 등	

또한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수록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234개)가 공표하는 지역복지통계는 아래의 〈표 2-3〉에서 보듯이 크게 16개의 세부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록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급여실적, 노인교통수당현황, 모부자가정, 복지대상자, 부랑인, 시설수급자, 아동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대상자,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실적,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Work-Net불이행자 현황 등이다. 현재 이들 통계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각 지

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입력과 검증 등의 과정에 대한 노력부족으로 아직 일부 통계에 대해서만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3〉 (광역·기초)지역복지통계의 세부현황: 보고통계

통계명칭	간행물명	수 록 내 용
복지정책 데이터 베이스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각 지역별 통계연보	<p>기초생활보장: 시군구별부양의무자부양능력현황(3), 시군구별부양의무자현황(9)</p> <p>기초생활보장급여실적: 시군구별현황(1), 월별추이현황(1)</p> <p>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수준현황(1), 보장기간별현황(1), 생활보장탈피원인별현황(1), 시군구별가구수현황(1), 시군구별건축상태현황(2), 시군구별교육수준현황(9), 시군구별보장기간별현황(9), 시군구별월임대료분포현황(9), 시군구별전세금분포현황(9), 시군구별조건부수급자현황(9), 시군구별주거면적현황(9), 시군구별주거유형현황(9), 시군구별차량소유현황(9), 시군구별취업상태현황(9), 시군구별특례기준별보장현황(9), 연령현황(9), 주거유형별현황(9), 차량소유현황(9), 취업상태현황(9), 특례기준별보장현황(9),</p> <p>노인교통수당현황(4)</p> <p>모부자가정: 시군구별보장사유현황(5), 보장사유별현황(5)</p> <p>모자보호시설:시군구별현황(9), 입소자총괄현황(6), 종사자총괄현황(6), 총괄현황(9), 상세현황(6)</p> <p>복지대상자: 부채별현황(5), 상담구분별현황(5), 상담구분월별현황(5), 소득공제유형별현황(5), 소득유형별총괄현황(5), 복지대상자건강상태:시군구별현황(5), 복지대상자기타지원:시군구별현황(5), 복지대상자기타지원:월별현황(5),</p> <p>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별소득재산현황(5), 복지대상자소득인정액현황(5), 복지대상자시군구별상당유형별현황(5), 시군구별취업훈련현황(5), 신청시군구별월별발생현황(6), 의료보험:시군구별현황(7), 재산공제유형별현황(5), 재산유형별현황(5), 재산의소득환산액현황(5), 전출입시군구별현황(5), 질병종류시군구별현황(5), 총괄현황(5), 복지시설총괄현황(6)</p> <p>부랑인: 시군구별발생현황(6), 월별발생현황(6)</p> <p>시설수급자: 연령별현황(6)</p>

〈표 2-3〉 계속

통계명칭	간행물명	수 록 내 용
복지정책 데이터 베이스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각 지역별	아동지원: 실적(종합)현황(10) 의료급여수급권자: 상실사유별시군구별현황(7), 성별시군구별상실현황(7), 성별시군구별취득현황(7), 시군구별성별현황(7), 시군구별연령현황(7), 시군구별의료급여유형현황(7), 시군구별의료급여평균연장일수현황(7), 연령별시군구별상실현황(7), 연령별시군구별취득현황(7), 의료급여유형시군구별상실현황(7), 의료급여유형시군구별취득현황(7), 장애인시군구별상실현황(7), 장애인시군구별취득현황(7), 총괄현황(7), 취득사유별시군구별현황(7)
	통계연보	장애인대상자: 시군구별복지카드발급현황(8), 시군구별복지카드신청현황(9), 시군구별장애유형현황(8), 시군구별학력현황(8), 연령별장애유형현황(8), 총괄현황(8), LPG할인정지현황(8) 장애인등록신청: 시군구별발생현황(8)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총괄현황(8), 종사자총괄현황(8), 총괄현황(8) 장애인복지지원실적: 시군구별현황(8), 월별추이현황(8)미부양사유:시군구별, 장애유형별장애등급현황(8), 장애유형별현황(8) 조건부수급자 시군구별현황 : 자활방향(2), 제외사유(1) 주거및복지시설현황(12) Work-Net불이행자 현황: 시군구별발생현황(2)

- 주: 1)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현재 구현단계이며 2006년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될 계획임.
 2) ()안은 관련법이나 사업지침 등 이며 아래와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수급자현황,차상위계층등각종조사결과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5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급여관련보고)
 4. 노인복지시행규칙3조[별지제5호서식]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5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7.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
 8. 장애인복지사업안내(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0.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서식32호,
 - 1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2. 노인복지시행규칙, 노인복지사업법, 노인복지시행령

2. 보고통계의 생산과정 고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 생산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면보고방식이며 둘째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방식, 그리고 셋째는 두 방식의 혼합이다. 현재 방식은 셋째 방식이지만, 앞으로 지향하는 생산방식은 둘째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 서면보고 방식

보고통계는 정부의 각 부서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계이다. 따라서 보고통계는 각 사업의 수행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실적통계가 대부분이다. 복지부문의 보고통계는 다양하지만 그 중 주요통계로 1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표 2-4 참조). 아직 이들 통계는 복지정책DB로 생산 할 수 없어 각 기관별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받고 있다.

〈표 2-4〉 국가복지통계 생산현황: 보고통계

통 계 명	간행물명	작성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분기
부녀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모자복지시설현황	반기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아동상담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국내입양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5년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연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분기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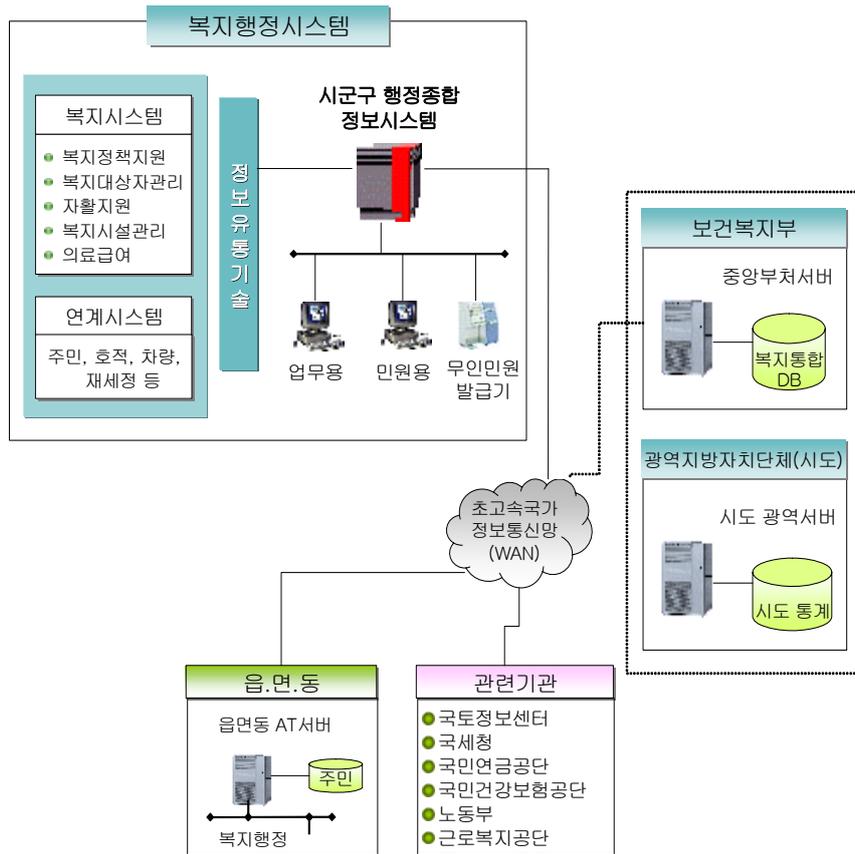
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방식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PC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복지행정시스템이 민원서비스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단계이며,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통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으로 복지행정시스템의 활용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한 업무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어 활용도면에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는 주정보와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들을 생산할 수 있다.

1)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요

복지행정시스템은 시도중심의 행정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크게 분류해 볼 때 구축목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과 신속한 보장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다. 즉,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동차, 토지, 건축물 보유정보 및 지방세 부과정보, 농지원부 정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국세청, 국토정보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전국의 자산을 전자적으로 조회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과 신속한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로 대상자 욕구에 맞게 지원한다. 즉, 통합서식으로 표준화한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서/통합조사표/통합관리카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존의 복지사업별로 관리하던 체계를 복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다. 끝으로 통합급여에 의한 적시 지급이다. 급여지급을 위한 전단계를 자동화하여 지정된 일자에 통합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 2-2] 에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복지정책 DB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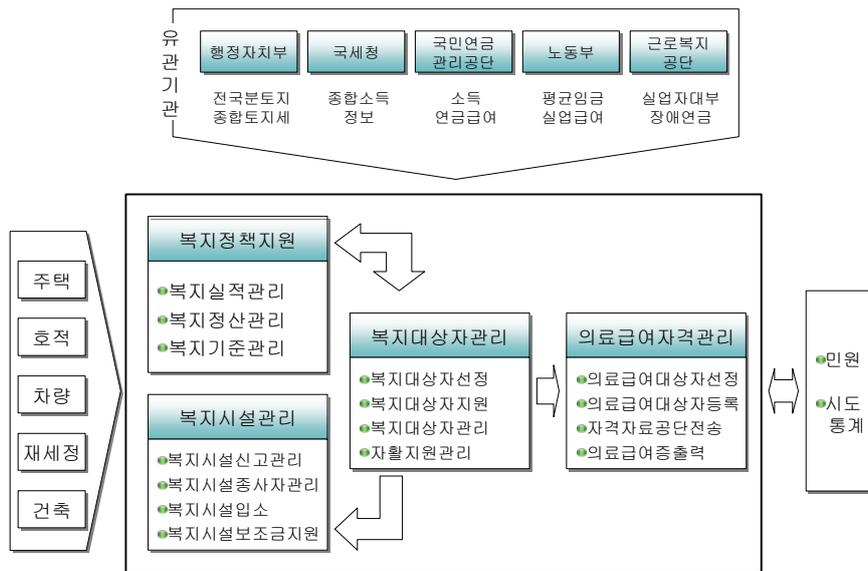


자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센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행정 - 』, 2003. 재편집

가) 업무구성도

복지행정시스템은 크게 복지정책지원, 복지대상자관리, 복지시설관리, 그리고 의료급여자격관리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3 참조). 이들 업무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정책지원은 복지대상자관리에서 생성된 대상자선정 및 지원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각종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 실적관리,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급여에 대한 정산내역을 관리하는 사업정산관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각종 처리에 관련된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복지기준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복지대상자관리는 복지대상자의 선정, 지원, 관리, 자활지원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복지시설관리는 복지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업무와 시설종사자관리, 시설입소관리,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관리, 시설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지원은 복지대상자의 선정 자료를 자동 연계하여 등록하고,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자격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활용한다.

[그림 2-3] 복지정책 DB의 업무 구성도



자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센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행정 - 』, 2003.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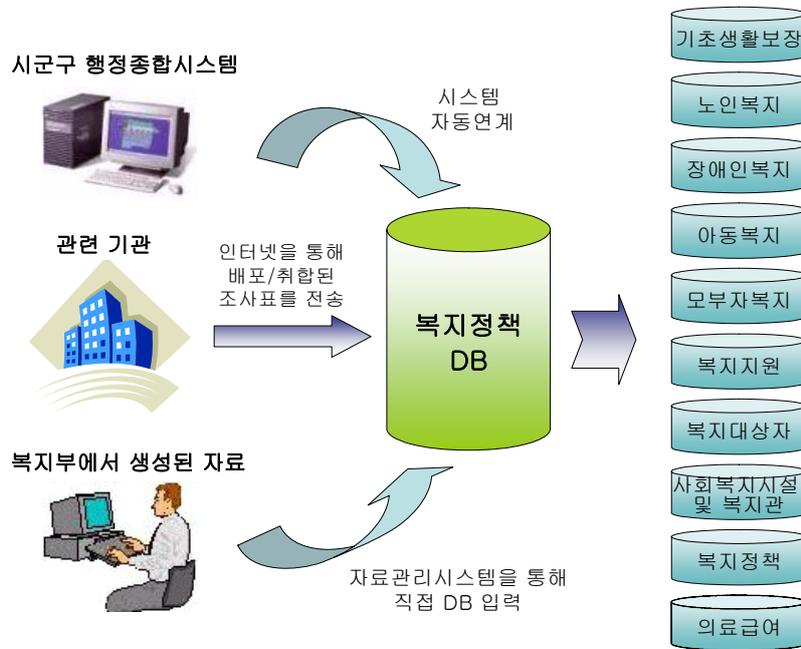
나) 복지정책 Database의 개요

복지정책DB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방대하고 유용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DB는 시·군·구의 복지관련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망인 것이다. 복지정책DB는 2001년에 구축하여 현재 234개 시·군·구(출장소 포함)종합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다(그림 2-4 참조). 복지정책DB에 입력되는 자료는 매일 초 종합행정시스템으로부터 전송 받고 있다.

복지정책DB의 범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자료 및 관련기

관의 자료이며, DB의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복지, 복지지원, 복지대상자(공통지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공통지표), 그리고 복지정책 등이다(그림 4-3 참조).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DB의 범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현황, 자활지원 관련 자료, 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등 지원추이, 생업자금대여 관련 자료 등이다.

[그림 2-4] 복지정책 DB의 개념 구성도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사용지침서』, 2000.12. 재편집

다) 복지정책DB의 구성내용

(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 일반현황, 수급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수급자 급여실적, 수급자 관리, Welfare-net 조회결과, 용자/영구임대주택, 자활사업 일반현황, 자활사업 내용현황, 자활후견기관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통계를 제공한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급여실적을 다양한 특성별로 분석하며,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매월 복지행정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2)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노인일반현황 및 생활실태, 경로연금, 노인_주거의료복지시설, 장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일반현황 및 생활실태는 노인인구현황, 노인가구현황, 노인진료비 현황등과 같이 노인의 일반적인 정보를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축적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수급자, 수급액을 성별, 연령별, 가구구성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고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입소자, 연령별, 직종별 종사자 현황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는 공설, 법인 묘지현황, 화장장 현황, 납골시설 현황 등의 장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현황,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현황은 장애인 진단기관현황, 장애인일반현황, 장애인 복지카드와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로 구성된 화면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정보와 운영현황 등의 시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입소시설의 현황 정보 및 입/퇴소자 정보, 예산 현황 등을 분석할 수 있다.

(4)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아동보호 일반, 미아 찾기, 입양아동, 아동복지시설, 보육일반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일반에서는 소년소녀가장현황, 가정위탁 가구현황 등을 분석한다. 미아 찾기는 아동카드 작성현황, 미아신고 아동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입양 아동은 국내 아동입양 현황과 장애아 입양 현황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아동 특성을, 보육 일반 현황은 보육시설 분포도 및 특성과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5)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는 저소득 모부자 가구특성, 저소득 모부자 개인특성, 여성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구특성은 가구유형, 보장사유, 소유 차량에 따른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복지시설은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모자자립보호시설의 입소자 및 시설 현황을 분석한다.

(6) 복지지원

복지지원은 결연사업, 푸드뱅크, 재가복지 봉사사업, 부랑인 사업, 노숙자 보호사업에 관한 통계를 제공한다. 각 시설의 입/퇴소자,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특성치별로 분석하며, 장비나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7)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는 복지대상자 일반현황,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수급자 급여실적, 복지대상자 관리, 용자/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지표를 제공한다. 복지대상자를 개인/가구특성별로 분석가능하며 수급자에 대한 급여종류별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월 복지행정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8)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의 법인설립자, 운영자, 종사자, 입소자, 예산, 후원금 등을 시설의 다양한 특성치별로 분석하며, 복지시설의 시설현황,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이나 복지관 이용자현황과 같은 정보 또한 제공한다.

(9) 복지정책

복지정책은 사회복지법인,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별 법인 분포 현황과 의료시설 운영 법인을 분석한다. 미신고 시설은 시설종류, 운영주체별 시설 수 및 입소자 수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및 배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예산은 정부 및 보건복지 예산 추이, 분야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 예산 등을 분석한다.

2) 복지정책DB상의 생산가능 통계현황

현재 시군구복지정책DB에는 9개 부문에 대해 기초 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앞으로 일정한 노력만 기울이면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이들 부문은 75개의 하위부문에 361개의 개별통계로 구성되어 있다(표 2-5 참조). 각 부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에는 수급자 일반현황, 수급자의 소득·재산분포, 부양의무자 현황, 수급자급여 실적 등 11개 하위부문을, 노인복지에는 노인 일반현황 및 생활실태, 노인취업현황, 경로연금, 예산현황 등 11개 하위부문을, 장애인복지에는 장애인현황,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7개 하위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아동복지에는 아동보호일반, 결연사업, 입양, 보육일반현황 등 11개 하위부문을, 모부자복지에는 저소득모자부자가정특성, 모자일시보호시설, 여

성복지시설 등 9개 하위부문을, 복지지원에는 자원봉사, 결연사업, 푸드뱅크, 노숙자보호사업 등 6개 하위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에는 복지대상자일반현황, 수급자급여실적, 수급자소득·재산 등 5개 하위부문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에는 시설일반, 시설종사자, 시설후원금 등 8개 하위부문을,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현황, 미신고시설현황, 예산현황 등 7개 하위부문을 수록하고 있다(부표 3~부표 10참조).

〈표 2-5〉 복지정책DB상의 생산가능 통계현황

부 문		하 위 부 문	개 별 통 계
계		75	361
1	기초생활보장	11	58
2	노인복지	11	71
3	장애인복지	7	59
4	아동복지	11	40
5	모부자복지	9	27
6	복지지원	6	35
7	복지대상자	5	26
8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8	27
9	복지정책	7	18

3) 생산되는 보고통계의 현황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생성되고 있던 전산자료를 복지정책DB가 운영(2001년 10월부터) 되면서 일부 통계의 생산을 시도하였다. 아직 복지정책DB의 자료 정확도나 신뢰도 등이 낮은 불완전성으로 통계항목을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통계 중 수급자현황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자료입력은 234개 기초자치단체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하고 있다. 기존자료의 검증과 앞으로 자료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3. 조사통계의 생산현황

가. 국가단위

복지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조사통계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활동제약자실태조사,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사회통계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국가유공자등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에 있는 만큼 앞의 세 가지 조사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는 재가 및 시설 장애인에 대해 장애특성,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호여부, 보장구, 여가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생활 만족도 및 생활환경,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등으로 분류하고 관련된 세부항목을 조사하고 있다(표 2-6참조).

〈표 2-6〉 조사표 중 장애인분야 주요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계항목		
배경(1)	장애인 관련 일반지표	장애인 출현	장애인출현율		
			장애인추정수		
기본	경제	경제활동	중복장애인율		
			장애원인		
			장애발견시기		
			장애원인진단시기		
			의식주	만족도	의식주 전반 생활만족도별 장애인 비율*
			이동	교통	주된 교통수단별 장애인 비율
			경제	경제활동	장애인의 자가용 보유율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비
건강(1)	신체적 건강	주관적 경제상태*			
		장애인의 월평균 생활비 만족도*			
건강(2)	주관적 건강	경제활동 만족도*			
		장애인의 보호수발인 필요율			
안전	소득	소득지원서비스	보장구 소지율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상호연계	가족 및 사회적 연계	가족	연금 가입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존중	학대 및 차별 가치관	차별경험	연금 일시금 수혜율		
			고용	고용서비스	구직활동비율
자아실현	교육 사회	교육활동 종교활동	결혼상태		
			거주	거주형태	
자아실현	교육 사회	교육활동 종교활동	차별 종류별 경험률		
			종교활동참여율		

주: * 주관적 지표

2)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노령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분야는 가구주 관련 사항, 부모접촉·연락 관련 사항, 주택소유 여부 및 경제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외상가구의 부양실태,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황, 부양의 교환, 건강 및 의료, 사회참여 등이다(표 2-7 참조).

〈표 2-7〉 조사표 중 노인분야의 주요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계항목	
기본	경제	소득·소비	소득원 월평균 용돈액수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	직업별 구성비 과거의 주된직종 종사상의 지위	
		만족도	주관적 경제상태* 경제활동 만족도*	
	건강	신체적 건강		ADL제한비율 IADL제한비율 만성질환율
			주관적건강	주관적 건강*
		고용	고용서비스	구직활동비율
상호연계	가족 및 사회적 연계	가족	결혼상태 사별기간 생존자녀수 형제자매수 기타 친척수	
상호연계	가족 및 사회적 연계	사회적 연계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 사회적 연계망의 친족비율 사회적 연계망의 유형	
		거주	거주	비동거 자녀와의 거리
존중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	주택 소유율	
		심리적 독립성	노인 가구주 비율	

〈표 2-7〉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계항목
자아실현	교육	교육활동	교육수준 노후준비교육 참여율 평생교육참여율
		만족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사회	종교활동	종교활동참여율
		시민단체 활동	시민단체활동 참여율 시민단체활동시간

주: * 주관적 지표

자료: 정경희 외,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3) 사회통계조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는 복지분야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분야별로 주기적으로 관련분야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1998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주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통계조사는 해당년도에도 한 분야의 조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제한을 받고 있어 많은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계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노인문제,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여가 시간 활용,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장래 살고 싶은 곳,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 실태 및 견해, 성차별에 대한 인식,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생활여건의 변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 향후 늘여야 할 공공시설 등이다.

나. 지방단위

1) 지역통계의 조사현황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단위 조사에 있어서 포함되고 있는 복지관련 항목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예산의 규모나 조사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느냐에 따라 상이한 항목의 조사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조사가 복지통계생산을 위한 조사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지표 생산을 위한 다목적 조사이기 때문에 복지지표 관련 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시·도에서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부산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 관련 항목으로 1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사회복지 관련항목을 2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복지관련 항목이 4개 그리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북도 등에서도 생활의 식조사 등의 명칭으로 복지관련 조사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표 2-8 참조).

시·군·구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종로구 사회지표조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항목을 10개 포함하고 있으며, 송파구,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등에서도 사회지표조사의 형태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복지관련 조사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표 2-9 참조).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복지관련 항목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상호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시도나 시군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8〉 시·도의 복지관련 조사현황

시·도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 규모	조사 주기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7개 부문 52개 항목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부산사회통계 조사	보건(1개 항목), 노동(7개 항목), 주거·교통(13개 항목), 환경(5개 항목), 사회(13개 항목) , 공공행정(8개 항목), 가구일반사항(5개 항목)	약 5,000 세대	매년

〈표 2-8〉 계속

시·도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 규모	조사 주기
인천광역시 (정보화 담당관실 통계팀)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12개 부문 41개 항목 보건(3개 항목), 가족(3개 항목), 소득·소 비(2개 항목), 노동(1개 항목), 교육(3개 항 목), 환경(2개 항목), 주거(7개 항목), 정보 ·통신(10개 항목), 사회복지(2개 항목) , 문 화여가(4개 항목), 안전(1개 항목), 정부와 사회참여(3개 항목)	약 4,500 가구	매년
광주광역시 (예산 담당관실)	광주 사회통계조사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13개 부문 103개 항목 보건(8개 항목), 인구(1개 항목), 가족(9개 항목), 소득·소비(12개 항목), 노동(5개 항 목), 교육(11개 항목), 주거·교통(13개 항 목), 정보·통신(6개 항목), 환경(10개 항목), 복지(4개 항목) , 문화·여가(12개 항목), 안 전(4개 항목), 정부와 사회참여(8개 항목) (2001년 조사: 6개부문(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42개 항목)	약 10,000 가구	매 2년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정보관리 담당관실)	울산광역시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8개 부문 38개 항목 보건·위생(4개 항목), 소득·소비(5개항목), 고용·노사(3개 항목), 교육(4개 항목), 교 통·환경(4개 항목), 사회복지(6개 항목) , 문화·여가(3개 항목), 공안·법무·정보(9개 항목)	약 4,775 가구	매년

〈표 2-8〉 계속

시·도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 규모	조사 주기
경기도 (정책기획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조사	<p>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가구부문; 가구일반사항, 가계 생활형편 변화, 생활용품 소유비율 및 주차장소, 보 육시설,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23 개 문항</p> <p>가구원부문; 가구원 일반사항, PC 및 인터 넷 이용, 개인생활 만족도, 주거생활 만족 도, 통근통학사항, 월평균 수입 및 지출, 개인생활 시간활용 및 사회적 계층의식 등 17문항</p>	약 16,700 세대	매년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p>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기본사항, 가족부문, 소비소득, 노동부문, 교육부문, 보건부문, 주거와 교통, 환경부 문, 복지부문, 문화와 여가, 안전부문, 정 부와 사회참여 등 12분야</p>	약 10,000 가구	매년
경상남도 (기획관리실)	경남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p>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7개 부문, 35개 항목</p> <p>소득·소비, 보건·체육, 주택, 환경·교통, 사회, 정보화, 문화·여가부문</p>	약 10,000 가구	매년

〈표 2-9〉 시·군·구의 복지관련 조사현황

시·군·구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 규모	조사 주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종로구 사회지표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10개 부문 75개 항목 보건(4개 항목), 주거(10개 항목), 주택(6개 항목), 교통(7개 항목), 교육(5개 항목), 사회복지(10개 항목) , 문화와 여가(14개 항목), 구행정(8개 항 목), 식구와 경제생활(5개 항목)	약 1,200명	매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송파지역 사회통계조사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일반, 주거 및 주택, 안전과 불편, 정보와 통신, 청소·환경, 지역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사회복 지·보건 , 이웃관계, 지역사회활동 등 사회복지·보건 ; 의료시설만족도, 여성·청소년·아동복지 우선사 업 , 부모공양, 장묘(화장)문화, 노후생활 등	약 1,200명	매5년
경기도 수원시 (기획예산과)	수원시 사회지표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 14개 부문 95개 항목 보건(5개 항목), 일반사항(12개 항목), 가구(4개 항목), 인구(1개 항목), 주거와 교통(8개 항목), 복지(6개 항목) , 문화와 여가(16개 항목), 환경(6 개 항목), 정보와 통신(6개 항목), 사회참여(9개 항목), 안전(8개 항목), 소득과 소비(4개 항목), 교육(7개 항목), 노동(3개 항목)	약 1,000 가구	매5년

〈표 2-9〉 계속

시·군·구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 규모	조사 주기
경기도 부천시 (기획예산과)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10개 부문 67개 항목 보건·복지(11개 항목), 가구 및 주거(12개 항목), 안전(8개 항목), 환경(3개 항목), 교통(4개 항목), 소득과 소비생활(2개 항목), 고용 및 노사(4개 항목), 문화·예술·체육(9개 항목), 교육(4개 항목), 사회참여(10개 항목)	약 1,200 가구	매4년
경상남도 진주시 (정보관리 담당관실)	진주시 사회지표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13개 부문 159개 항목 사회복지·보건(12개 항목), 지역사회활동(8개 항목), 인구 및 가족(8개 항목), 고용 및 소득(18개 항목), 주거(7개 항목), 일상생활(10개 항목), 교통(10개 항목), 환경(8개 항목), 문화생활(21개 항목), 정보·통신(7개 항목), 일반사항(8개 항목), 농업(9개 항목), 교육(33개 항목)	약 1,100 가구	매3년

2) 지역통계의 내용분석

우리나라의 지역복지통계 중 조사통계는 통계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주6)} 조사통계는 크게 다음의 5종(17개)으로 분류할 수 있다. 5종의 분류는 복지우선과제, 소득수준, 가족관계, 고용구조, 그리고 사회참여 이다(표 2-10 참조).

주6) 국가통계 중 대부분은 시·도 까지만 포함할 뿐, 기초단체인 시·군·구 단위 이하까지 알 수 있는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와 대규모 표본조사(고용구조조사 등), 일부 지역별 조사통계(소비자물가조사) 등이다.

가) 복지우선과제(3개)

복지우선과제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3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해야 할 복지정책,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 실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경기도, 「경기도 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경상남도,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천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등 이다.

나) 소득수준(2개)

소득수준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2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 월평균소득과 가계생활형편 평가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경제활동인구연보·농가경제통계 이다.

다) 가족관계(5개)

가족관계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5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의 만족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노인들의 불만사유, 노후준비방법, 그리고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경상남도,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천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등 이다.

라) 고용구조(5개)

고용구조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5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취업자, 교육정도별 취업자, 여성취업 장애요인, 그리고 취학전 자녀양육실태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경제활동인구연보·농가경제통계 등이다.

마) 사회참여(2개)

사회참여 관련 지역복지통계는 2종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률(통계청: 자원봉사참여율), 사회적 계층의식(통계청: 주관적 계층의식) 등이다. 이들 통계의 생산주체와 수록연보는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경상남도,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천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등 이다.

〈표 2-10〉 지역복지통계 생산현황(조사통계) - 지역특성 및 사회복지환경

구분	자료	세부 수록통계	작성 주기	
우선해야 할 복지정책	인천광역시, 2002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보고서, 2002	의료보험제도개선, 실업보험확대, 노인복지사업확대 등(속성: 성, 연령, 구·군,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산업, 종사형태, 주거형, 주택소유형태 등)	매년	
복지 우선 과제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노후생활보장, 의료서비스개선, 노인시설, 여가프로그램 등 (속성: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등)	매년
	실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취업알선, 생활비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속성: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등)	매년
소득 수준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소득분포(속성: 구·군, 교육수준, 가구주직업, 가구주산업, 종사형태,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등)	매년
	가계 생활형편 평가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올해 가계생활형편 평가, 내년의 가계생활형편 평가	매년

〈표 2-10〉 계속

구분	자료	세부 수록통계	작성 주기	
가정생활의 만족도	인천광역시, 2002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보고서, 2002	경제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배우자 관계 등(속성: 성,연령, 구·군,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산업, 종사형태,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등)	매년	
가족 관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경상북도, 1999경북의 사회지표, (속성: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등)	3척도(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노인들의 불만사유	경상북도, 1999경북의 사회지표,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등)	경제, 가족, 건강, 친구 등	
	노후준비방법	경기도, 경기사회지표 (통계청, 사통계조사보고서)	연금, 보험, 부동산 등 (속성: 연령별, 교육수준별 등)	매년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경기도, 경기사회지표 (통계청, 사통계조사보고서)	동거, 따로살 등 (속성: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등)	매년	
경제활동인구	경상북도, 1999경북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등(속성: 연도별 등)		
고용 구조	연령별 취업자	경상북도, 1999경북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속성: 성별, 5세간격의 연령별, 분기별)	1년
	교육정도별 취업자	경상북도, 1999경북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속성: 성별, 학력별, 분기별)	
	여성취업 장애요인	경기도, 경기사회지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속성: 성별, 학력별, 연령별)	매년
취학전 자녀양육실태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지역별	매년	
사회 참여	사회봉사활동률 (통계청, 자원봉사참여율)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사회봉사활동률, 봉사활동분야	매년
	사회적 계층의식 (통계청, 주관적 계층의식)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5계층으로 조사	매년

자료: 각 지역(기초, 광역)의 사회지표

다음의 <표 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역복지통계를 생산하는 곳은 16개 중 9개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통계를 생산하는 곳은 6곳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현황: 조사통계

광역단체	통 계 명 칭	기초단체	통 계 명 칭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2005)	서울송파구	송파지역사회통계조사
부산광역시	부산 사회통계조사	서울종로구	종로구사회지표(2000)
대구광역시	-	경기수원시	수원시사회지표(2001)
인천광역시	인천 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경기부천시	부천시사회지표(2000)
광주광역시	광주 사회통계조사	경남진주시	진주시사회지표
대전광역시	-	충남태안군	태안군사회지표(200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	-
경 기 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조사	-	-
강 원 도	강원도 여성 취업 실태조사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	-	-
경상북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	-
경상남도	경남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	-
제 주 도	-	-	-

주: 1) 기초지방자치단체 주관 1회한의 간헐적 조사통계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통계목록』 2004.
 _____, 『정부승인통계목록』 2005.3.
 _____, 『한국통계 조사현황(상권)』 2002.
 최봉호, 『지역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5.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는 지역복지통계의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 2-12>에서 보듯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사회통계조사,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그리고 도시정책지표조사 등이다.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고 있다. 사회통계조사는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그리고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와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다.

<표 2-1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세부현황: 조사통계

통계명칭	간행물명 (발간시기)	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보고서 (매년12월)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주거, 정보·통신,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연 (매년12월)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조사 (매익년1월)	- 가구부문: 가구일반사항, 가계생활형편 변화, 생활용품 소유비율 및 주차장소, 보육시설, 자교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 가구원 부문: 가구원 일반사항, PC 및 인터넷이용, 개인생활만족도, 통근통학사항, 월평균수입 및 지출 등	연 (매익년1월)
사회통계 조사	부산사회통계조사 보고서(매익년3월)	- 가구원사항, 주거형태, 주택소요형태, 문화시설,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 취업자에 관한 사항, 소득·소비(4), 노동(12), 교육(2), 보건(1), 주거·통신(1), 환경·교통(9), 사회·복지(9), 문화·여가(3), 안전·공공행정(9) 등	연 (매익년2월)
	부산의 사회지표 (매익년4월)		
	광주의 사회지표 (조사실시년도12월)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2년 (조사실시 년도12월)
	울산의 사회지표 (매년10월)	인구·주책, 사회복지, 소득·소비, 공안, 정보통신, 보건·환경, 문화·여가 등	연 (매년9월)

〈표 2-12〉 계속

통계명칭	간행물명 (발간시기)	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사회통계 조사	경북의 사회지표 (매익년1월)	- 기본사항: 가구내 보유한 문화생활용품 - 복지: 거동불편노인, 장례방법등 - 정부와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행정관심도 등 - 환경: 농촌환경 파괴요인, 합성세제 사용 등 - 노동: 지난 한 주동안 주요 한일, 고용형태 등	연 (매익년1월)
	경남의 사회지표 (매년12월)	- 소득·소비, 보건·체육, 주택, 환경·교통, 사회, 정보화, 문화·여가 등	연 (매년10월)
사회복지 실태 및 육구조사	서울시 사회복지 실태 및 육구조사 보고서	- 저소득부문: 성, 교육정도, 소득, 주택유형, 정 부지원, 급여종류 등 - 청소년부문: 학력, 직업유무, 주관적 생활수준, 고민유무 및 상담유형, 여가시간 활용형태 등 - 노인: 성, 이환상태 및 병명, 가족과의 동거여 부, 가정도우미 활용에 관한 인식, 주거 및 경 제상태 등 - 장애인: 지체장애, 시각, 청각, 정신지체,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일상생활 상태, 가족구성, 경제상태 등에 관한 항목 - 여성: 성, 연령, 혼인상태, 소득, 주택유형, 1일 자유시간, 여가활동 종류, 취미·문화활동 의향, 경제 활동여부 및 근로상태 등	5년 (조사실시 년도7월말)
도시정책 지표조사	미발간(서울시) (2005)	- 거주환경만족도, 납세대비 서비스만족도, 노후 준비방법,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등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사회지표조사에 국한하여 6개 지
역에서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통계 세부현황: 조사통계

통계명칭	간행물명 (발간시기)	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사회지표	종로구 사회지표	- 주거, 환경, 안전, 교통,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정보·통신, 구행정 등	5년 [조사실시년도 (끝자리가 0, 5자인 년도)익년1월]
	수원시 사회지표 (조사실시년도 익년3월)	- 가구, 인구, 보건, 주거와 교통, 복지, 문화와 여가, 환경, 정보와 통신, 사회참여, 안전, 소득과 소비, 교육, 노동 등	5년 [조사실시년도 (끝자리가 1, 6자인 년도)익년 3월]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실시년도익년6월)	- 가구 및 주거, 안전, 환경, 교통, 소득 및 소비생활, 고용 및 노사 등 67개 항목	4년 (조사실시년도 익년3월)
	태안군 사회지표	- 관광, 주거, 교육, 의료, 복지, 환경, 생활권 등 7개 분야에 대한 군민의식조사	금년처음 실시 (조사중)
	진주시 사회지표	- 지역사회활동(8), 인구 및 가족(8), 고용·소득(18), 주거(7), 일상생활(10), 교통(10), 환경(8), 문화생활(21), 정보·통신(7), 사회복지·보건(12), 일반사항(8), 농업(9), 교육(33)	매3년
사회통계 조사	송파지역사회지표 (조사실시년도익년2월)	-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주거부문, 안전과 불편해결방법, 정보통신,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사회와 보건, 지역사회활동 등 71항목)	5년 [조사실시 년도 (끝자리가 9, 4자인 년)익년2월]

제 3 절 지역복지통계의 문제점

1. 조직의 분산 및 인력의 취약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조직은 중앙부처의 지역통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중앙부처의 통계조직은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등에서 지역별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계작성 기관별로 지역통계가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상호간의 수평적인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작성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통계별로 조사방법의 차이와 조사의 중복에 따른 낭비가 발생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광역자치단체가 통계계 수준의 통계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1~3명으로 구성된 통계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주7)} 그러나 이마저도 통계계 직원이 통계업무를 전담하지 못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직원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계담당직원 중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이 전국에 32명(6.7%)에 불과한 실정이다(최봉호, 2005).

2. 지역통계의 부족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만을 가지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복지상태를 파악·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고통계에 대한 속성 관련 정보의 부족과 조사통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각종 시설(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에 대한 통계는 단순한 수 자료의 정보제공만 하고 있다. 통계는 다양한 속성별(시설규모, 프로그램내용, 정원, 등) 정보를 제공할 때만이 이용가치가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보고통계의 경우 시·군·구별로 작성이 가능하나, 현재 시·도 단위로 공

주7) 2004년 기준 1개 시·도 당 평균 6.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봉호, 지역통계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5)

표되고 있다.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료 등이 시·군·구별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의 지역복지통계는 보고통계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나마 조사통계는 전국단위로 설계되어 지역단위의 통계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복지수요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통계가 많이 필요한 상태다. 즉, 노인생활실태조사, 활동제약자실태조사 등이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나, 시·군·구별로 주민의 생활실태(노인의 부양실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이용도, 노인의 경제·건강·주거·여가 등의 실태, 장애인수 추정, 재가장애인의 생활실태,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등)를 보여주는 통계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3. 획일적·정태적인 지역통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항목구분이나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하다. 이는 지역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지역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경제활동에 의한 고용, 임금, 실업, 생산성, 재고율, 소득분배, 그리고 가계지출 등의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부족하다. 또한 지역내 및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동태적 자료가 미비 되어 있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지역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야 하는데, 현재는 신뢰도가 높은 시계열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국적이고 총량적인 통계생산을 위주로 했던 우리나라의 여건 하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모형의 설정과 현실성 있는 장래예측이 어렵다.

4. 복지정책DB의 활용도 미흡

234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된 복지정책DB시스템은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복지대상자 등 보고자료를 보건복지부가 매달 추출/가공 한 후 해당 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DB시스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기존자료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의 보완 및 수정은 234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운영담당자들과 공동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 3 장 선진국 지역복지통계의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호주, 독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계체계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 1 절 호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태즈메니아(Tasmania) 등의 6개 주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도 캔버라는 뉴기니 섬의 동부와 부근의 작은 섬들을 통치하고 있다.

1. 통계생산 제도 및 생산방법

호주의 통계조직은 중앙통계국과 지방통계국으로 구분되는데, 지방통계국에는 주명(州名)이 부쳐진다. 지방통계국에는 6개 주(Province)와 2개 지역(Territory) 등 8개의 국(局)이 있다. 호주에서는 복지통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해당 정부부처와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과 호주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AIHW)이 지역사회서비스, 주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교환계약을 맺고 있다. 통계정보는 호주의 중앙통계국인 ‘호주통계청’이 제공 한다

자료제공은 호주통계청이 통계청 내에 통계정보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Service & Marketing Division)를 통해 직접제공하고 있다. ‘호주통계청 데이터베이스’(ABSDB) 안에서 각 지역, 연구소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 통합하여 재구성한 후 정보서비스과(자료제공분과, 대민서비스분과)를 통해 직접 제공하고 있다. 자료이용료는 이미 발간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요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을 소개하고 기본 통계자료를 제공하지만, 장기 시계열 통계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Email, www.statistics.gov.au site접속)으로 통신망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보안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관련 부서로는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정부 산하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부’(Minister for Community Services), ‘노인부’(Minister for Ageing), ‘장애인서비스부’(Minister for Disability Services) 그리고 ‘청소년부’(Minister for Youth) 등이 있다. 복지통계는 상기 부서 밑에 있는 각 부처에서 대상별로 관리되고 있다. 다민족국가의 특성상 호주통계에는 한국과 달리 민족, 종교, 언어분류가 있다.

호주통계국의 업무를 보면 중앙통계국에서 기획하고 지방통계국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단순구도로 되어있지 않다. 각각의 지방통계국은 본래 중앙통계국이 실시하는 기획, 분석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통계조사 중 특정통계조사를 특화(特化)하여 실시한다(예컨대 빅토리아통계국은 전국의 서비스산업조사를, 서부호주통계국은 노동통계를 소관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통계국은 통계조사의 기획, 조사, 집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통계 역시 지방통계국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집, 분석되고 있다.

2.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의 사회복지통계

본 연구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회복지 통계를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관한 통계내용은 호주통계청의 인터넷사이트의 주

제별 링크 중 ‘복지와 사회서비스’(Welfare and Social Services)란에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부(Minister for Community Services), 노인부(Minister for Ageing), 장애인서비스부(Minister for Disability Services) 그리고 청소년부(Minister for Youth)에서 분담하고 있다.

상기의 4개부서는 아래의 6개 주무부서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보고통계를 수집하고 복지사업의 재정을 담당한다. 주무부서로는 지역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아동후견인사무소(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노인, 장애인 및 재가요양국(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재가보호서비스(Home Care Service of New South Wales), 아동 및 청소년위원회(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그리고 2003년에 새로 설립된 사업연계소(Businesslink)가 있다.

가. 아동복지

1) 생산방법

12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해 실시된 본 조사는 1969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래 매 3년마다 2주간 인터뷰를 통하여 실시된다.

2) 주요 내용

가) 인구통계학적인 항목

인구통계학적인 항목으로는 한 가족의 12세 미만의 아동수, 성, 연령, 탄생지, 생년, 가정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의 사용여부, 가정에서 주로 쓰는 언어, 취학여부, 부모의 근로상황, 부모의 주당 근무시간, 부모의 총수입, 주 수입원, 가정유형, 주 거주지 등이다.

나) 아동보호유형(Child care arrangements)

아동보호유형에는 조사가 실시되기 전 한 주에 아이의 케어를 맡긴 유형, 조사가 실시되기 전 한 주 동안 아이를 맡긴 날 수, 조사가 실시되기 전 주에 아이의 케어를 맡긴 시간 수, 지난 주 동안 맡긴 시간대(방과 전과 방과 후 케어만), 지난 주 동안 케어를 맡긴 곳의 주소(방과 전과 방과 후 케어만), 방학기간동안의 케어 공급(장기주간보호와 유치원만), 지난 주 동안 아동보호를 위한 비용, 지난 주 동안 아동보호를 이용한 이유, 지난 12개월 동안 아동보호를 바꿨는지 여부와 이유, 지난 12개월 동안 방학보호프로그램 사용여부(학교를 다니는 아동만), 아동보육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여부, 아동보호부조금(Childcare Assistance) 수여여부 등 이다.

다) 아동보육수당(Childcare Rebate-CR)

아동보육수당에는 아동보육수당 수혜여부, 아동보육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아동보육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택한 아동보호유형 등이다.

라) (추가로 필요한) 공식적 보호수요

공식적 보호수요에는 공식적 보호유형, 공식적 보호의 날 수, 공식적 보호를 요구하는 이유, 공식적 보호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 공식적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 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에는 <표 3-1> 과 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통한 통계정보가 나열되지만, 개인이나 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호주통계청은 위의 가)~라)까지 조사된 내용을 따로 공급하고 있다.

〈표 3-1〉 아동복지통계 현황

부 문	세부부문	변수(계, %)
아동 보호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유형별 -공식적 보호: 방과 전/후 보호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주간가정보호센터, 임시보호, 유치원, 기타 -비공식적 보호: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아동 ● 가족유형별: 부부/편부모 ● 거주지역별 ● 주당 보호일수, 주당 보호시간 ● 연령별: 1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6~8세, 11세 ● 아동보호비용: 비용없음~100\$ 이상까지 ● 주당가족소득 : \$400미만~\$2000이상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식적인 보호를 받는 아동 ● 현재 비공식적인 보호만을 받는 아동 ● 두 유형의 보호를 모두 받지 않는 아동 ● 공식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연령별: 0~4세, 5~11세
노동과 아동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의 노동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상근근무 ● 부모가 근무를 하지만 부나 모가 파트타임근무 ● 부모 중 한 명만 근무 ● 부모 중 한 명은 실직상태, 다른 한 명은 근로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근무를 하지만, 적어도 한 명이 실직상태 ● 부모가 근무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조절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조절(work arrangements) ● 고정적인 파트타임 근무 ● 교대근무 ● 분담 노동(job sharing) ● 재택근무 ● 근무시간조절을 하지 않음.

나. 장애인과 노인복지

1) 생산방법

호주통계청은 장애인, 노인 그리고 비공식적 수발공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호주 전체 가구 중 15,000가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6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장애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 정도, 수발공급자들의 경험과 욕구 파악, 그리고 이들에 관한 생활환경조사 등이다.

2) 주요내용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다(표 3-2 참조).

- 가정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지 여부
-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정도
- 장애가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
-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 현재 노인과 장애인들이 공식적/비공식적 수발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의 양
- 수발공급자들의 경험 등이다.

〈표 3-2〉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수발공급자 현황

개별 통계명	변 수	세 부 변 수
장애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거동하는데 불편한 정도, 학교에 다니거나 근로를 하기 어려운 정도 등 총 6개의 카테고리 • 신체적 장애종류별 (암 포함) • 정신적 장애종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4세 이하 ~ 85세 이상 • 성별 • 출생지별 • 학력 • 경제상황: 소득여부, 근로여부, 근로유형, 주근무의 산업별 • 주거유형별: 단독주택, 아파트 (전세, 월세), 시설 • 동거유형별 • 지금까지 받은 재가서비스와 앞으로 필요한 재가서비스 종류별 : 대화, 가사서비스, 식사준비, 건강관리, 문서업무, 재산관리, 가동성 등. • 재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완전만족, 어느 정도, 불만족. • 남의 도움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활동: 식사준비, 식사, 목욕, 옷 갈아입을 때 등. • 가동성 여부와 장소 및 방법 : 본인 혼자, 집 주변, 집 밖, 자동차 대중교통 수단 이용여부와 불편함 • 장애인복지카드이용도 • 운전면허증 소유여부와 자가운전여부 및 빈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 년에 한 번 이상, 운전을 전혀 안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접촉정도, 지역사회/문화생활/여가 생활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개월 동안: 친구방문, 교회,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외출 없었음. - 지난 12개월 동안: 박물관, 도서관, 극장, 음악회, 공원 등. 외출 없었음.

〈표 3-2〉 계속

개별 통계명	변 수	세 부 변 수
노인 복지	• 수발필요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소득원별: 경제활동, 연금, 투자활동 등. • 주거유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아파트(전세, 월세) • 동거여부 • 도움이 필요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 가사서비스, 식사준비, 건강관리, 문서업무, 재산관리, 가동성 등
	• 사회활동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접촉정도, 지역사회/문화 생활/여가생활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3개월 동안: 친구방문, 교회,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외출 없었음. -지난 12개월 동안: 박물관, 도서관, 극장, 음악회, 공원 등. 외출 없었음.
수발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공급자의 기능 : 주된 수발공급자인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18세 이하 ~ 75세 이상 • 성별 • 소득원별: 근로소득, 연금, 배우자의 소득, 기타 • 근무유형: 상근근무, 파트타임 • 실직상태: 상근근무지 혹은 파트타임근무지를 찾는 중. • 주거유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아파트(전세, 월세) • 주당 수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시간 이하, 40시간 이상 • 수발수요자와의 관계: 배우자 • 수발을 공급하게 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척관계, 다른 친척이나 친구가 도울 수 없어서,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등.

다. 공공부조

1) 주택보조(Assistance for housing)

호주에는 2011년까지 1,149,000호 이상의 급격한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03년 호주연방과 지방(주와 지역)은 “2003 연방-주 주택 조약”(2003 Commonwealth-State Housing Agreement(CSHA)) 을 맺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관련 통계에는 기본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토착인 여부, 연령, 장애여부 등이 고려된다.

〈표 3-3〉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부 분	특 성 분 류
보유권	소유, 매매, 임대, 기타
보유선택	첫주택소유자 연령, 소득(주당)
보유(주거조건) 안전성	정확한 계약상태, 매달 계약, 영구임대, 주인에 대한 만족도, 거주 기간(1년 미만, 2년, 3년, 4년 이상),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지난 5년 동안의 이사 여부와 수
주택유형	개인소유(시내, 변두리 등), 공공주택, 공동주택, 기타
개·보수 수요	보유유형별

〈표 3-4〉 저소득층 임대주택자들을 위한 보조금

급여종류	개별통계(세부유형)	특성분류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Base funding grants, Aboriginal Rental Housing Program, Crisis Accommodation Program, Community Housing Program, State matching grants CSHA private rent assi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 • 가구유형별(싱글, 동거, 아동 있는 동거 가구, 부부, 아동 있는 부부, 한부모 가정, 일시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질병 때문에 별거중인 가정) • 보증금, 임대비, 이사비용
공공주택 거주가구	CSHA Aborigina rental hous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이후 개별 상황: 안정적, 건강 향상, 지역참여 향상, 새 직업, 새 교육/트레이닝 참여 등. • 소득원: 근로소득, 장애연금, 노령연금, 실업수당, 기타공공연금이나 보조금, 기타 • 가구원수, 가구유형, 등록된 세대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새 가구가 필요한 이유: 무주택, 안전 문제, 건강문제, 높은 집세, 기타 • 세대주의 만족도
주택소유자와 매매자를 위한 보조금	첫주택소유보조금(First home woner grant), CSHA home purchase assistanc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ome Ownership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액수별 • 보조유형별: 대출, 보증금 보조, 이자보조금, 집세보조금, 상담서비스, 기타

2) 무숙자(無宿者)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 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SAAP)

기본 인구사회적 특성에는 연령, 문화와 언어별 구분(원주민, 호주에서 태어난 원주민이 아닌 사람,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등)이 있다(표 3-5 참조).

〈표 3-5〉 무숙자(無宿者)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통계

개별통계	특성분류
대상	청년, 남편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 싱글 남자, 싱글 여자, 가족, 혼합
서비스 수요	서비스를 받은 기간(단위: 일)
서비스를 받기 전 거주지	SAAP나 기타 다른 긴급거주지, 개인주택, 공공주택, 호텔, 자가주택, 자동차, 기타
급여신청이유	장기노숙자, 가정불화, 육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경제적 이유, 마약/알코올 중독, 노름중독, 정신질환, 주택계약만기 등.
신청거부	건수, 대상별(청년층, 싱글 남자, 싱글 여자, 가족,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정신질환, 혼합), 거부이유(정신질환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지체장애인, 건강관련 이유, 남자/여자 아동이 있는 가족, 블랙리스트에 있는 자, 행동장애자, 폭력장애자, 신용불량자, 케이스메니지먼트 플랜 참여거부자, 현재 소송에 걸린 자 등)

3) 소득보조프로그램(Income support programs)

호주 소득보조의 주요 재원은 정부연금과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다. 소득보조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구분하면 〈표 3-6〉과 같다. 지방정부의 지출액과 대상자들의 인구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기본 항목으로 포함된다.

〈표 3-6〉 소득보조프로그램

보조유형	세 부 보 조 프 로 그 램	특 성 분 류
가족보조금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세금감면(Family Tax Payment), 임신수당(Maternity Allowance),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 아동 연령
청년 및 대학생 보조금	청년수당>Youth Allowance), Austudy, 대학생제정보조(Student Financial Supplement), 등록금 수당(Fares allowance)	• 대상유형: 싱글/동거가족, 아동여부, 연령 • 주거형태: 독립, 가족과 동거 •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여부, 구직등록 여부
아동양육 보조금	아동보육보조(Child Care Benefit), 아동보육수당(Child Care Cash Rebate), Child Care for eligible parents undergoing training	• 〈표 3-1〉 아동복지통계 현황 참고
노동시장관련 보조금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성인연령수당(Mature Age Allowance), 미망인수당(Widow Allowance), 조의수당(Bereavement Allowance), 연금수급자교육보조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특별보조금(Special Benefits)	• 장기/단기 수당: 연령, 성별, 신청자 수 • 가족유형: 싱글/동거, 아동여부, 한부모가정 • 수급자 연령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	장애연금, 교통수당, 여성배우자연금(Wife Pension-DSP), 질병수당(Sickness Allowance)	• 〈표 3-2〉 참고
수발자들을 위한 보조금	수발급여(Carer Payment), 수발수당(Carer Allowance)	
노인을 위한 보조금	노령연금, 저축보너스(Aged Persons Savings Bonus), One-off Payment to Seniors, Self Funded Retirees' Supplementary Bonus, 전화요금수당(Telephone allowance for Commonwealth Seniors), 건강카드(Health Card Holders), 미망인 연금(Widow Class B Pension), 여성배우자연금(Wife Pension)	• 〈표 3-2〉 참고

제 2 절 독일

독일은 16개 주(州)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언(Bayern), 베를린(Berli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헤센(Hessen),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라인란드-팔츠(Rheinland - Pfalz), 사르란드(Saarland),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쉴레스빅-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그리고 튀링엔(Thüringen) 등 이다.

1. 통계생산방법

독일은 기본적으로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이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수립하는 중앙정부 집중형 체제를 갖추고 있다. 내무부 산하의 연방통계청은 10개 국(局), 38개 하부조직(課)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2개 지청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금융국제수지통계는 독일연방은행에서, 노동시장 통계는 노동성에서 작성된다.

지방에서는 지방정부 통계기관인 통계및정보처리국(Landesamt der Statistik und Datenverarbeitung)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산형 체제를 갖추고 있다. 州 단위의 자료수집 및 처리는 16개 州통계청에 의해 직접 수행되며, 연방통계청은 방법론적인 측면과 州단위에서 처리된 결과를 전국단위의 통계편제와 배포만 담당한다. 州통계청은 연방통계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조직 및 재원측면에서 전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기능적으로는 연방통계의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기관으로 운용되며,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지방의 통계를 생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조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주정부의 사회(복지)급여(Sozialleistungen)에 관한 자료는 각 주의 통계 및 정보처리국의 보고통계에 의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예산은 기본통계에 포함되며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되어 집계된다. 사회복지

지제도에 따른 사회보험급여는 연금-, 의료-, 수발-, 산재-, 실업보험 및 노동촉진과 관련된 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는 공무원과 고용주를 위한 급여제도와 아동수당과 보육수당 등이 포함된 공공부조가 있다. 복지분야 및 대상은 부부와 가족, 건강, 노동, 노후와 유족 등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와 공공부조 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의 사회(복지)급여 통계에 포함된 현금/현물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7과 표 3-8 참조).

〈표 3-7〉 독일연방통계청의 사회보험급여 내용

통계분야	통 계 변 수
연금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입 및 지출 • 피보험자: 피용자, 자영업자(가내공업 경영자, 해운업자, 교사, 유치원 교사, 교육가, 음악가, 예술가, 모모, 조산사, 병원간호원, 수공업자 등 •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1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65세미만, 65세 이상), 지역별(독일 전체, 구(舊)서독, 구동독과 동베를린 구분), 성별, 국적, 모국 • 보험유형: 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광부, 농민, 자유직업인 (의사, 세무사, 건축가, 변호사, 약사, 세무사, 건축가) • 연금보험가입자: 1924년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수, 현재 의무가입자 수 • 연금신청자: 신청한 수, 허락된 수, 반려된 수, 기타 및 연말에 해결되지 않은 신청자 수 • 연금 수급자 • 독일 전체, 구서독, 구동독과 동베를린 구분
의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입 및 지출 • 피보험자 유형: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수급자로 나뉘며, 자세한 것은 피용자, 직업교육을 위해 유료 급료로 고용된 자, 연금생활자, 학생, 농경 및 산림기업가와 가족구성원, 예술가와 저널리스트, 실업자,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에서 직업능력을 가르치는 자 등으로 구분됨. •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 연령(1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지역별(독일 전체, 구(舊)서독, 구동독과 동베를린 구분), 성별, 국적, 모국 • 병가 날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날수 • 질병유형 • 조합유형 : 지역-, 기업-, 상공업-, 농업-, 선원-, 광부질병금고, 노동자를 위한 공제질병금고,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공제질병금고

〈표 3-7〉 계속

통계분야	통 계 변 수
수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입 및 지출 • 보험가입자: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연금수급자, 피부양자 • 보험자 유형: 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 보험급여수급자: 수발등급(I, II, III), 급여형태(현물-, 현금-, 혼합급여) • 서비스 유형: 재가보호서비스(주간-, 시설보호서비스), • 각 지방정부: 요양원, 수발 및 요양서비스, 서비스공급자 및 수발수요자
산재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입 및 지출 • 피보험자: 피고용자, 가내공업노동자, 실업자, 학생, 가내공업경영자, 흥행인, 예술가, 농업기업가, 공공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등. •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 연령(1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65세미만, 65세 이상), 지역별(독일 전체, 구(舊)서독, 구동독과 동베를린 구분), 성별, 국적, 모국 • 산재보험가입자, 산재보험급여신청자, 산재보험수급자 현황 •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산재유형 • 보험자유형
실업 보험 및 노동 촉진 관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노동사무처의 전체 수입 및 지출 •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 연령, 지역별(독일 전체, 구(舊)서독, 구동독과 동베를린 구분), 성별, 국적, 모국 • 실업수당과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 생계수당(Unterhaltsgeld), 단기근로수당(Kurzarbeitergeld): 수급자와 액수 • 노동촉진관련 사업 유형 • 연방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의료-, 수발보험급여 • 연방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 공공부조성격의 급여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2005. http://www.destatis.de/themen/d/thm_sozial.php

〈표 3-8〉 독일연방통계청의 공공부조급여 내용

통 계 분 야	통 계 변 수
사회부조	• 각 지방마다 관리
망명자보호	• 수급자 수와 액수
아동 및 청소년보호	• 보육유형, 청소년보호 관련 과제 및 관련 지출 상황 • 지방정부 보고
보육수당	• 독일 전체의 수급자와 액수
아동수당	• 각 지방정부의 지출내역, 수급자 수
장애인보호	• 장애인 수, 성별, 연령, 장애 종류
주택보조금	• 독일 전체 수급자와 지출
전쟁피해자보호	• 각 지방정부에서 수급권자와 액수 관리

2. 바이언(Bayern)주 정부의 사회복지통계

독일 주(州)정부의 통계및정보처리국들은 각 주별 유사한 사회복지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바이언 주정부의 사회복지통계를 예로 삼고자 한다.

가. 아동과 청소년복지

1) 생산방법

바이언 주의 통계및정보처리국은 주정부 산하 “노동·사회안정·가정·여성·보건부”(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StMAS)의 위탁으로 매년 1월 1일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지도와 교육지도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아동복지시설기관에는 일반적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Kindergartengruppen),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함께 보호하는 특수 유치원(Integrative Kindergartengruppen) 그리고 학교어린이집(Schulkindergartengruppen) 등이 있다.

2) 아동복지시설

가) 일반 어린이집/유치원(Allgemeine Kindergartengruppen)

3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다.

나) 특수 유치원(Integrative Kindergartengruppen)

3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함께 보호하는 시설이고 한 그룹 당 최고 15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 중 3~5명의 장애아동을 함께 보호한다.

다) 학교어린이집(Schulkindergartengruppen)

특별한 사항으로 인하여 취학하지 못한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표 3-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계, %)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간: 반나절 보호(4시간, 4~6시간), 하루 종일 위탁(6~8시간, 8시간 이상) • 영업시간: 오전반, 오후반, 6~8시간, 8시간 이상 • 그룹크기: 15명, 16~25명, 26명 이상 (각각 오전, 오후반 구별) • 아동: 아동의 연령, 학교재학중인 아동, 장애아동 • 부모: 편부모, 강제이주자, 외국인, (정치적) 망명자 • 교육인력: 전문보육교사(학력유형), 보조원(학력유형), 성별, 근무유형(파트타임, 반나절, 반나절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방, 특별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아동이 유치원을 다닌 비율 (100×그 지역에서 3~5세의 아동이 유치원을 다닌 수/ 그 지역에 주거주지를 둔 부모의 3~5세 아동 수)
교육지도	상담자를 통한 도움 사회집단 상담을 통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특성: 성, 연령, 형제자매, 국적, 가족과의 동거여부 • 상담 기간: 3개월 이하 ~ 36개월 이상, 평균 • 상담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 상담을 받은 내용 :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육문제, 범죄행위, (마약, 약물)중독, 학대, 성폭력경험, 부모의 이혼, 주거문제, 실직, 기타 가정문제
가족을 위한 사회교육 지도	서비스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유형: 부모, 편부모, 부/모와 계부모, 조부모, 친척, 위탁가정 • 상시 가족과 동거하는 아동의 수 • 아동: 성별, 연령별, 국적
부모의 집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별 • 청소년의 특성: 성별, 연령별, 국적,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교육 상태, • 부모상태: 미혼, 동거, 결혼, 이혼, 사별, 모름 • 보호유형: 주간보호, 위탁가정, 보호센터, 집중사회교육프로그램 • 가정재판관결여부 • 프로그램을 끝내게 된 이유(법적근거 포함) • 프로그램을 마친 후 주거지

〈표 3-9〉 계속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계, %)
입양	입양아동과 입양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 양부와의 친척관계여부와 국적 • 외국입양아들의 탄생국가 • 입양 전 아동의 주거유형, 입양을 위탁한 부모의 가족사항 • 입양기관유형 • 총 입양아동 수, 입양을 포기한 수
위탁,후견, 양육권 등.	아동의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청에 의한 보호/후견 • 부자관계 확인 • 양육권 철회: 신고, 가정재판판결
일시적 보호	아동의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전이나 보호받는 동안의 거주지 • 보호유형 • 보호기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입/지출	수입/지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복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구분 • 서비스유형별

나. 장애인 및 노인복지

1) 중증장애인 통계

중증장애인에 관한 통계자료는 바이언 주의 ‘원호와 가정장려사무국’(Landesamt für Versorgung und Familienförderung)에서 2년마다 통계 및 정보 처리국에 익명으로 보고한다(표 3-10 참조).

〈표 3-10〉 중증장애인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
중증 장애인	연령, 성, 장애정도, 국적	연령: 6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정도: 50~100%
	가장 심한 장애유형	연령: 4세 이하~75세 이상
	국적, 연령, 성	연령: 4세 이하~65세 이상
	가장심한 장애유형과 합병 장애유형	성별 합병장애종류와 정도
	연령, 장애수, 장애정도, 성별	연령: 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 수: 하나의 장애, 두 개 이상의 장애 장애정도: 50~100%
	장애 이유	출생 때부터 산재, 교통사고, 집안사고, 질병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시, 지방관구(군) 장애정도: 50~100%

2)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가) 생산방법

성인장애인을 위한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는 바이언 주정부의 “노동·사회안정·가정·여성·보건부”의 의뢰에 따라 통계 및 정보처리국이 2년마다 수집하고 있다.

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종류

- (1) 요양원(Pflegeheim): 장애정도가 심해 시설 밖 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시설.
- (2) 주거요양원(Wohnpflegeheim):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재활원 등에 다닐 수 있는 이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

- (3) 기숙사(Wohnheim): 일반 직장에 다니거나 장애인작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기숙사.
- (4) 단기요양원(Kurzzeitpflegeheim): 성인 장애인들이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주거할 수 있는 곳.
- (5) 일시주거시설(Übergangseinrichtung): 처음 주거시작 때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만 머물 수 있는 곳.
- (6) 주거공동체(Wohngemeinschaft/Betreute Wohnform): 성인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유형의 주거지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에서 외래로 수발공급자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곳

〈표 3-11〉 성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계, %)
성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 법인별 • 행정구역별 • 설립연도별 • 장애인 특성 •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종류 • 장애인들의 전 주거지 • 장애인들의 근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 요양원, 주거요양원, 기숙사, 단기요양원, 일시주거시설, 주거공동체 • 방 크기: 요양원-독방/2인/3인 이상 기숙사-7/7~11/11~15인 이상 • 방 상태: 휠체어 사용가능, 세면대 • 법인: 법인유형, 주거가능 수, 주거하는 장애인 수 • 설립년도: 1900년 전 ~ 1980년 이후 • 장애유형: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질병 등. • 성별, 연령별 • 서비스 종류 : 교육, 소득사업, 다양한 치료, 복지시설 내 사용 가능한 휴식시설 (수영장, 실내운동장, 휴게실 등) • 장애인들의 전 주거지 : 시설이 있는 시, 같은 행정구역, 다른 주나 외국 • 장애인들의 근로 : 근로지, 근로유형(산업별), 추가교육

〈표 3-11〉 계속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계, %)
성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 시설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별 • 근로유형별: 상근, 반나절, 보조자, 직장체험자, 공익근무자, 유료/무료봉사자 • 근로부서별 • 전문 교육유형별/전문 직업명
	• 평균 시설 사용료(하루당)	• 시설유형별, 법인유형별, 행정구역별

3) 요양시설(재가복지서비스 및 요양원)과 수발수당수급자

가) 생산방법

2년마다 수집되는 요양시설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독일연방통계청이 재가서비스에 대해 주(州)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수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및 민간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수발보험자들은 수발보험법에 근거하여 수발보험과 관계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3-12〉 요양시설과 수발현금급여 수급자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
요양시설과 수발수당 수급자	• 수발등급에 따른 수발현금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등급별: 1, 2, 3 • 연령별: 5세 이하~ 95세 이상 • 성별 • 급여종류: 시설, 재가서비스, 수발수당
	• 수발현금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별 • 수발등급별: 1, 2, 3 • 수발서비스 종류별, 수발현금급여와의 중복여부 • 수발보험사별

〈표 3-12〉 계속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
(계속) 요양시설과 수발수당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수발서비스 : 서비스법인유형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근로유형별: 상근, 반나절(25%이하, 25~50%), 보조자, 직장체험자, 공익근무자, 유료/무료봉사자) • 근로부서별 • 전문교육과정/직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수발서비스 - 서비스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법인유형별 • 서비스등급별 • 연령별,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별 • 수발등급별: 1, 2, 3 • 서비스종류: 24시간, 주간보호, 단기보호, 야간서비스 • 이용 가능한 자리 수: 서비스종류별, 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 • 방 종류: 독방, 2-, 3-, 4인실과 5인실 이상 • 근로자(재가수발서비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 이용료(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종류별 • 수발등급별 • 법인유형별

4)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Heime der Altenhilfe)

가) 생산방법

바이엔주에서는 양로원에 대한 조사를 2001년까지 매년 실시하였으나 수발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로원 주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통계및정보처리국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통계에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호스피스시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노인을 위한 시설

(1) 양로원(Altenheim/Altenwohnheim)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나 다른 일반 주거형태를 갖춘 시설로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추가로 갖추어질 수 있다.

(2) 요양원(Altenpflegeheim)

수발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만을 위한 요양시설

〈표 3-13〉 노인보호시설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
노인 보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별 • 행정구역별 • 시설유형별 • 서비스유형별 • 설립연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가능한 자리 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 • 행정구역별: 전체 이용가능한 자리 수, 인구1000명당 이용 가능한 자리 수 • 설립연도: 1960년 전 ~ 2001년 이후 • 서비스유형: 독실, 2, 3인실, 이 중 요양 자리 수, 전문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유형: 상근, 반나절, 보조자, 학생/직장체험자, 공익근무자, 유료/무료봉사자) • 근로부서별 • 전문교육과정/직업명 • 행정구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 공공부조수급자, 주거수당수급자, 수발보험급여수급자

5) 수발수요자들의 생활상태

가) 생산방법

수발수요자들의 생활상태에 관한 조사는 독일연방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상황, 수발수요정도, 경제상황 등이 포함된다.

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에 속하는 모든 제도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수입이나 지출 상황은 바이언 지방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KDB사를 통해 보고통계나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통계에 의해 파악된다. 주요 부조내용은 생계유지를 위한 부조, 수발을 위한 부조, 장애인을 위한 부조, 임산부를 포함한 환자들을 위한 부조,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와 긴급상황시 지급되는 부조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부조(Sozialhilfe)

사회부조에 관한 조사내용은 크게 수입과 지출부분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부조의 종류는 두 종류로 아래와 같다.

가) 생계보조(Hilfe zum Lebensunterhalt)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조

나) 특별보조(Hilfe in besonderen Lebenslagen)

갑작스런 질병 또는 장애상황 등에 지급되는 부조.

〈표 3-14〉 사회부조의 종류에 따른 사회부조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유로, %)
사회부조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거주자 • 자가 거주자 • 수행기관의 관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보조 • 특별부조: 교육-, 의료-, 위생-, 출산-, 가족계획-, 맹인-, 장애인-, 갱생-, 결핵-, 수발- 및 노인보조
사회부조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거주자 • 자가 거주자 • 수행기관의 관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 수급권자의 부양자, 해당되는 사회복지수행기관, 수급권자의 배상금 등.

〈표 3-14〉 계속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유료, %)
생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외국인 • 사회적 상황 • 보조금 지급기간 • 소득종류 • 월 소득액 • 주소득 • 지역자치단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국가별, 망명배경 • 수급자유형 : 연령별(3세 이하 ~ 85세 이상), 성별, 결혼/동거, 아동수(18세 기준), 가족구성원, 부양자 • 사회적 배경: 배우자의 죽음, 중독, 아동 출생, 신용불량, 무주택, 가족구성원이 시설보호를 받는 중 등. • 지급기간: 1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 소득종류: 근로소득, 모든 사회보장제도 급여 종류별, 위자료, 기타 소득 • 월 평균소득액: 25유로 이하 ~ 1,250 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외국인 • 사회적 상황 • 보조금 지급기간 • 소득종류 • 월 소득액 • 주소득 • 지역자치단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국가별, 망명배경 • 수급자유형: 연령별(3세 이하 ~ 85세 이상), 성별, 결혼/동거, 아동수(18세 기준), 가족구성원, 부양자 • 사회적 배경: 배우자의 죽음, 중독, 아동 출생, 신용불량, 무주택, 가족구성원이 시설보호를 받는 중 등. • 지급기간: 1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 소득종류: 근로소득, 모든 사회보장제도 급여 종류별, 위자료, 기타 소득 • 월 평균소득액: 25유로 이하 ~ 1,250 유로 이상 • 교육수준
특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유형별 • 내국인/외국인 • 지방자치단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유형: 연령별, 성별 • 생계보조 수급여부, 동시에 여러 종류의 보조금 수급여부 • 외국인: 국가별, 망명배경, 연령별(18세 이하 ~ 60세 이상),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거주자 -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음-

다) 욕구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금(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

‘욕구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로써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표 3-15〉 욕구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금 현황

통계명	영역	세부영역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주거자 • 시설주거자 • 지방자치단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외국인 • 성별 • 연령별: 18세 이상 ~ 95세 이상 • 수급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죽음, 갑작스런 지출, 위자료 지급 정지 등 • 사회부조 지급여부와 법적근거

※ 아래의 라)~아)의 공공부조는 독일에서 사회급여통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본 연구의 지역복지통계의 정의상 광의의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세부적 변수의 나열은 생략하고자 한다.

라) 전쟁피해자원호(Kriegsopferversorgung)

1950년 이후부터 집계된 전쟁피해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현물/현금급여를 말한다. 상이군인연금, 미망인연금, 고아 및 부모연금은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군인원호법(Soldatenversorgungsgesetz), 비군사적업무법(Zivildienstgesetz), 폭행피해자보상법(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죄수구제법(Häftlingshilfegesetz)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전쟁포로자의부양자생계지원법(Gesetz über die Unterhaltsbeihilfe für Angehörige von Kriegsgefangenen)에 의해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마) 망명자들을 위한 급여(Asylbewerberleistungen)

1993년 11월 1일 망명자보호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의 시행이후 망명자들이나 이 법에 의해 망명자로 인정된 자들은 이전에 받던 사회부조(Sozialhilfe) 대신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망명자들을 위한 부조금은 사회부조통계(Sozialhilfestatistik)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옳으나, 아직까지 많은 사회부조수행기관에서 외국인 사회부조수급자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 망명자들을 위한 급여로는 현금급여와 질병, 임신 및 출생 시 현물급여, 직업알선 등의 다양한 현물급여가 있다.

바) 주택보조금(Wohngeld)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동거하는 가족의 구성원 수와 연령,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 그리고 임대료 및 부대비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통계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의 국적과 모국(현재 35개국으로 구분)도 포함된다.

사) 교육촉진금(Ausbildungsförderung)

교육촉진금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생에게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지급. 교육촉진금에 대한 자료는 교육기관에서 중앙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및정보처리국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2차 자료이다.

아) 직업능력향상교육금(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

전문자격증을 전제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금을 지급한다. 직업능력향상교육금에 대한 자료는 교육기관에서 중앙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및정보처리국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2차 자료이다.

자) 아동수당(Kindergeld)

가족정책 제도 중 하나로 1955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수입제한선 없이 양육할 아동이 있을 경우 지급된다. 통계의 세부항목으로는 지역별, 지불년도, 아동수당이 지불된 아동의 수, 국적, 지불한 금액 등이 포함된다.

제 3 절 일본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인 47개의 도도부현과 3,132개(2004년)의 시정촌, 그리고 특별지방공공단체로 23개의 특별구와 그 외의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방공공단체의 범위로 인정되어 사회보장통계 및 각종 통계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보통지방공공단체와 일부 특별지방공공단체이다.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시정촌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대도시, 중핵시, 특별시, 도시, 정촌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세원이양」,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지방교부세의 개정」 등의 삼위일체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파로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금까지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통계조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생산방법

중앙정부가 실시한 국가통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집계하여 지역통계를 생산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기초통계데이터(국민생활전반의 실태; 약 3,800개 통계)를 매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지방정부가 생산한 지역통계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통계의 예로 요코하마시의 통계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요코하마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통계로는 지역복지추진사업,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추진사업, 생활보호사업, 국민연금사업, 국민건강보험사업, 의료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고령자복지사업, 개호보험사업, 육아지원사업, 그리고 그 외의 복지사업 등이 있다.

가. 아동복지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11개의 실태조사들을 1회한 또는 1, 3, 5년 주기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차세대육성지원 등에 대한 요구조사

본 조사는 지방정부 모두(218개, 도도부현)가 참여하여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지역에 따라 「양육지원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아동양육실태조사」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본 조사의 조사내용은 아동과 가족의 상황, 직업, 방과 후 아동클럽의 이용 상황, 그리고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모자 및 부자세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본 조사는 19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역에 따라 모자세대와 부자세대의 실태조사, 부모가 없는 아동세대의 생활실태조사, 양육자세대의 실태조사, 그리고 과부세대의 생활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1개 이

상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의 조사내용은 세대·주택·건강상태, 수입, 복지제도의 이용 상황 등이다(부표 2 참조).

다) 모자·부자세대 등 복지요구조사

본 조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등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5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세대 및 주거상황, 취로 및 생계유지 상황, 복지시책의 주지 및 이용상황 등이다.

라) 부자세대실태조사

본 조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부자세대의 복지수요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주기는 3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부자 가정수, 아동수, 부친의 연령 및 직업, 연간수입 등이다.

마) 과부세대실태조사

본 조사는 나가노현 내에 거주하는 과부세대에 대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로서 조사주기는 3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과부수, 연령 및 직업, 과부가 된 이유 등이다.

바) 모자가정 등 취로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본 조사는 현내에 거주하는 모자, 과부, 부자세대의 생활 및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조사주기는 시즈오카현에서 1회 한정 하였다. 세부조사내용은 일, 가계, 자녀교육, 생활, 복지시책의 이용 및 수급상황 등이다.

사) 자녀양육 환경 만들기에 대한 요구조사

본 조사는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 및 보육소에 다니는 유아를 가진 보호자의

실태, 양육환경 및 복지요구에 대한 조사이다. 즉, 조사대상은 아동, 보호자, 그리고 보육소보호자 이다. 조사주기는 5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가족, 자녀양육 등에 대한 실태와 보육료, 보육기간 및 휴일보육 등이다.

아)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조사

본 조사는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실태와 그 욕구과약을 위한 조사로서 조사 주기는 아키다현에서 1회 한정 하였다. 조사대상은 고용주와 근로자이다. 조사 내용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지원제도, 육아휴업, 노동시간 등의 인사관리 전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과 복리후생,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기관에 의 기대 등이다.

자) 아동생활실태조사

본 조사는 고베시에 거주하는 아동생활실태조사로, 취학 전 아동보육, 소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학동보육프로그램 이용, 양친의 취로상황, 지진에 의한 영향 및 양육지원에 관한 욕구과약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5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세대, 가족구성, 친족, 부모의 취로, 보육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육아, 휴일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친구관계 등이다.

차) 엔젤플랜 결과조사

「가가와 엔젤플랜21」의 달성도를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측인 현의 주민이 자녀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주기는 1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일과 육아의 양립, 자녀양육지원현상 등이다.

카) 소자화 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본 조사는 청소년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결혼 및 출산에 대

한 의식과 자녀양육의 현황, 행정서비스의 이용 상황 및 의향 등을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기타큐슈시가 1회 한정하였다. 세부조사내용은 결혼 및 가정, 출산 및 자녀양육, 자녀수, 주거환경, 자녀와 보내는 시간 등이다.

나. 생활보호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호세대의 생활실태조사를 매년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피보호세대 생활실태조사

본 조사는 피보호세대의 생활실태 파악에 필요한 기초조사이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세부조사내용은 취로·주거·건강·행정서비스의 이용상황 등이다.

다. 사회복지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련 아래의 4개의 실태조사들을 1회한 또는 1, 3, 5년 주기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종합동태조사

본 조사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독거노인,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의향을 파악조사로, 조사주기는 3~5년으로 이와테현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부조사내용은 개별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6〉 사회복지종합동태 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내용	조사사항	조사 주기
	모자세대조사표 부자세대조사표	성별, 연령, 자녀사항,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가 된 이유, 취로상황, 수입 등	
	독신노인조사표	성별, 가족사항, 취로, 건강상태, 수입, 재택복지 서비스의 이용상황 등	
이와테현	신체장애인조사표	성별, 연령, 세대구성, 주택상황, 건강상태, 시설이용상황 등	3~5년
	지적장애인조사표 (0~14세)	성별, 연령, 세대인원, 합병증유무, 시설이용상황 등	
	지적장애인조사표 (15세 이상)	성별, 연령, 취로상황, 시설이용상황 등	

나) 사회복지기초조사

본 조사는 사회복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도쿄도의 아동과 가정실태를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1년이다. 세부조사 내용은 아동·양친·세대의 상황과 아동의 생활 등이다.

다) 복지마을 만들기 정비 상황조사

본 조사는 니이가타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대상 시설 중에서 조례 시행 시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시설의 조례적합 상황을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5년이다. 세부조사내용은 건물, 주차장, 통로, 계단, 숙박시설 등이다.

라) 사회공헌활동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본 조사는 지역내 사회공헌활동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며, 조사주기는 도치기현의 1회 한정이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회공헌활동단체의 활동내용, 운영, 향후활동 등이다.

라. 사회복지시설관련 조사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하여 2개의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등 의식조사

지역(니이가타현) 내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장의 시설운영, 직원 대우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직원채용, 노동조건, 복리후생, 인재육성, 능력개발 등 이다.

나) 복지맨 파워 의식조사

지역(니이가타현) 내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의 노동실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건강상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전직경험, 취직경위, 직무내용의 평가 등 이다.

마. 장애인관련 조사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실태나 욕구와 관련하여 13개의 조사들을 1, 5, 10년 주기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고차(高次)뇌기능장애인 실태조사

지역(도쿄도) 내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복지에 관한 기초조사.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내용은 성, 연령, 주거, 장애정도, 연금 등 소득상황 등 이다.

나) 지적장애인 복지요구조사

지역(도쿄도) 내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내용은 성, 연령, 주거, 장애정도, 연금 등 소득상황 등 이다.

다) 정신장애인 복지요구조사

지역(니이가타현) 내 정신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의료 및 주거상황, 경제기반, 일상생활자립도, 상담지원체제 등 이다.

라) 심신장애인 현황조사

지역(니이가타현) 내 심신장애인현황을 파악.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내용은 성, 연령, 직업, 휠체어사용상황 등 이다.

마) 공공·관광시설 등의 배리어 프리 대응도 조사사업

지역(니이가타현) 내 관광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스키장, 관광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의 수용상황, 배리어 프리 대응도에 대한 조사.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내용은 등록절차, 시설장비, 장애인과 고령자의 수용상황 등 이다.

바) 신체장애인 복지요구조사

지역 내(도야마현, 니이가타현) 심신장애인의 요구사항 등을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여가 및 사회참가, 취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상황 등 이다.

사) 신체장애인(아)실태조사

지역(나고야시, 시가현) 내 신체장애인의 생활 및 치료상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연령, 세대구성 및 배우자의 장애상황, 장애원인, 외출빈도, 개호필요도, 치료, 수입,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 등의 이용상황 등 이다.

아)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사

지역(고베시) 내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복지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장애등급, 통원, 입원기간, 치료상황, 일상생활, 긴급입원 등 이다.

자) 장애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사

지역(교토부) 내 장애인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현재의 「교토부 장애인 기본계획」 이후 향후 10년간의 장애인 시책검토. 조사주기는 10년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7> 과 같다.

<표 3-17> 장애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교토부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조사표A)	생활, 외출, 치료, 건강, 사회참가 등	장애인 기본 계획 책정시/ 대략 10년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조사표B)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조사표C)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조사표D)	현 생활의 만족도, 요구사항 등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조사표E)		
	장애인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시설직원조사표)	시설에서의 생활, 생활지원 등	

〈표 3-17〉 계속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계속) 교토부	정신보건복지에 관한조사 (통원A표)	생활지원, 구급의료 등	장애인 기본 계획 책정시/ 대략 10년
	정신보건복지에 관한조사 (통원B표)		
	정신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입원A표)		
	정신보건복지에 관한조사 전문직조사표(입원B표)		
	정신보건복지에 관한조사 (가정용표)		

차) 장애인실태조사

지역(교토시, 돗토리현, 가가와현) 내 「국제장애인의 해 제 2년차 교토시 행동계획」의 진전을 위해 장애가 있는 시민의 실태와 요구사항의 변화조사. 조사주기는 5년 또는 부정기적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8〉 과 같다.

〈표 3-18〉 장애인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교토시	조사표A (신체장애가 있는 시민용)	장애의 종류·정도·원인·가정· 생활상황, 취로상황 건강상태 등	5년
	조사표B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용)		
	조사표C (지적장애가 있는 시민용)		
	조사표D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용)		

〈표 3-18〉 계속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돛토리현	신체장애인 등 실태조사표	성별, 연령,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유무, 세대인원 등	5년
가가와현	장애인실태조사조사표 (신체장애자용) 장애인실태조사조사표 (지적장애자용)	장애·취로·수입·시설 이용상황 등	부정기

카) 심신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지역(고베시, 후쿠오카시) 내 차기 「장애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자치단체와 조사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9〉 와 같다.

〈표 3-19〉 심신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고베시	심신장애인생활실태조사표 (조사표A) 심신장애인생활실태조사표 (조사표B)	장애등급,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 개호상황, 수입, 주거, 외출상황 등	5년
후쿠오카시	신체장애인실태조사표(1) 지적장애인실태조사표(2) 심신장애인실태조사표(3) :정서장애인과 자폐증환자 포함	장애종류, 정도, 원인, 장애에 관한 상담, 훈련, 생활상황, 직업, 가정상황, 외출상황 등	5년

타) 장애인복지계획책정에 관한 요구조사

지역(히메지시) 내 장애인의 사회참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일곱 개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20〉 과 같다.

〈표 3-20〉 장애인 사회참가의 기초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히메지시	신체 및 지적장애인시설입소자조사표	성별, 연령, 장애의 정도 및 종류, 장애의 원인, 시설입소전상황, 입소이유, 퇴소후의 생활 등	5년
	신체장애아조사표		
	신체장애아조사표		
	지적장애아조사표		
	지적장애인조사표		
	정신장애인조사표(입원) 정신장애인조사표(통원)		

파) 장애인 생활요구조사

가가와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네 개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21〉 과 같다.

〈표 3-21〉 장애인 생활요구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가가와현	조사표(신체장애인)	일상생활, 사회참가, 취로 및 진로, 복지서비스 및 시설 등의 이용 등	5년
	조사표(지적장애인)		
	조사표(입원환자)	주거, 생활, 취로 등	
	조사표(통원자)		

바. 고령자관련 조사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실태나 욕구와 관련하여 13개의 조사들을 1회

한 또는 1, 3, 5년 주기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외상노인 및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역(사이타마현) 내 고령자세대수 및 외상 및 독거노인 조사. 조사주기는 1이며, 조사내용은 고령자세대수 및 고령자 수, 외상노인 수, 독거노인 수 등 이다.

나) 고령자복지관계 시정촌 단독사업 등 실시상황조사

지역(사이타마현) 내 고령자복지 관련 사업의 실태조사. 조사주기는 1이며, 조사내용은 실시주체, 보조율, 예산액, 사업내용 등 이다.

다) 외상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역(치바현) 내 외상노인과 건강한 고령자의 생활실태 파악. 조사주기는 1회한정이며, 조사내용은 두 개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22> 와 같다.

<표 3-22> 외상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치바현	외상예방실태조사표 (건강한 고령자)	병력, 50세경의 생활습관 등	1회 한정
	외상예방실태조사표 (요개호자)	개호도, 외상상태가 된 주된 이유, 병력, 50세경의 생활습관 등	

라) 고령자시책에 대한 의식조사

지역(도쿄도, 사네마현) 내 고령화의 현상과 고령자급부사업의 이용실태 및 고령자시책에 대한 의식 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자치단체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3> 과 같다.

<표 3-23> 고령자시책에 대한 의식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도쿄도	고령자대책에 대한 의식조사표	고령자시책, 개호, 의료기관의 이용상황, 노인의료비조성제도 등	1회 한정
사네마현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의식조사표 (40~64세용)	고령기에 대한 이미지, 건강과 개호, 생활환경, 사회참가와 학습 등	1회 한정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의식조사표 (65~79세용)	고령기에 대한 이미지, 건강과 개호, 생활환경, 사회참가와 학습, 취업과 자산 등	

마) 고령사회대책 실태조사

지역(교토시) 내 고령자 등의 의식과 각 분야에 걸친 생활실태 등을 조사. 조사의 바탕은 「교토시 고령사회 대책추진계획」에 두고 있음. 조사주기는 10년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4> 와 같다.

<표 3-24> 고령사회대책 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교토시	고령자생활실태조사표	건강상태 및 개호상황, 직업과 경제상황, 취미와 사회참가 등	10년
	고령자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표	고령자문제에 대한 인식, 고령기와 취로, 노후 생활비, 공적시설 등	

바) 고령자기초조사

지역(니이가타현) 내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종합적인 기초조사. 조사주기는 부정기적이며, 조사내용은 건강상태, 개호보험제도, 사회활동, 경제상태, 주거 등이다.

사) 고령자현황조사

지역(야마나시현) 내 고령자현황 파악.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5> 와 같다.

<표 3-25> 고령자복지현황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 사 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야마나시현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인구관계)	65세 고령자인구, 외상노인의 질병요인 등	5년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세대관계)	총세대수, 고령자가 있는 세대수 등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시설입소자관계)	시설 입소자수	

아) 고령자복지기초조사

지역(야마나시현) 내에 거주하는 고령자인구, 재가 외상노인 수, 독거노인 수 및 고령자세대의 파악.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6> 과 같다.

〈표 3-26〉 고령자복지기초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인구관계)	65세고령자인구, 외상노인의 질병요인 등)	
야마나시현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세대관계)	총세대수, 고령자가 있는 세대수 등	5년
	고령자복지기초조사표 (시설입소자관계)	시설입소자수	

자) 개호예방 등에 대한 고령자실태조사

지역(야마나시현) 내 고령자보건복지의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가족, 주거, 소득상황, 현재의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의식, 개호예방, 생활지원사업 등 이다.

차) 고령자생활조사

지역(시즈오카현, 고베시, 돗토리현) 내 재택고령자의 생활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 조사주기는 1~5년이며, 조사내용은 자치단체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7〉 과 같다.

〈표 3-27〉 고령자생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시즈오카현	고령자생활현황조사표	동거가족의 유무, 개호유무, 지역복지활동, 건강상태 등	1년
	고령자생활실태조사표	본인 및 세대상황, 거주상황 등	5년
고베시	고령자일반조사(조사표1)	일상생활동작, 건강상태,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상황 등	3년
돗토리현	재택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실태조사(조사표2)	치매증상의 유무, 시설이용상황 등	3년
	시설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실태조사(조사표3)	치매증상의 유무 및 일상생활의 자립상태 등	

카) 요개호고령자(재가)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도쿠시마현) 내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생활상황 및 요구사항 파악. 조사주기는 3년이며, 조사대상은 독거노인, 외상노인,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생활상황, 건강 및 개호상황, 취로, 일상생활 등 이다.

타) 일반(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고령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도쿠시마현) 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생활상황 등의 실태조사. 조사주기는 부정기적이며, 조사내용은 생활상황, 건강 및 개호상황, 취로, 일상생활 등 이다.

파)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치단체(구마모토현)가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조사. 조사주기는 부정기적이며, 조사내용은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등 이다.

사. 보건복지 관련 조사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실태나 의식조사와 관련하여 2개의 조사들을 1회한으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건강복지기초조사

시가현 내에 거주하는 세대와 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세대, 주거, 세대의 경제상황, 복지서비스의 민간참여 등 이다.

나) 건강복지시책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지역(다카라즈카시) 내 건강복지시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복지전반, 장애인복지, 고령자복지, 아동복지 등 이다.

아. 기업 및 NPO관련 조사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4개의 조사들을 1회한으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실태 및 요구조사

지역(후쿠시마현) 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의 실태 및 요구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복리후생제도의 현상, 향후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 등 이다.

나) 근로자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지역(이바라키현) 내 중소기업집단연합회의 구성사업소 및 지역내 대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복지, 특히 법정 외 복리후생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재직중의 생활보장, 건강관리실시상황, 노후생활의 대비상황, 종업원의 여가활용, 복리후생제도 등 이다.

다) 자원봉사 및 NPO 활동 실태조사

지역(나라현) 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NPO의 활동실태 및 과제, 요구사항 등을 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자원봉사단체와 NPO의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이다.

라) 지역 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조사

지역(나라현) 내 기업의 자원봉사와 NPO 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지역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현상파악.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기업의 개요, 업종, 사회공헌활동의 개시시기,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내규 등 이다.

자. 개호보험

1) 생산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호보험과 관련하여 4개의 조사들을 1회한으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개호서비스 이용 상황 실태조사

지역(미야기현, 치바현) 내 개호서비스 이용상황의 실태파악. 조사주기는 1회 한정 또는 6개월이며, 조사내용은 자치단체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8> 과 같다.

<표 3-28> 개호서비스 이용 상황 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미야기현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상황 실태조사표	본인의 속성, 보험료 징수전후의 개호서비스이용동향, 개호서비스이용을 억제하는 요인, 개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6개월
	개호서비스 이용실태조사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 원인, 방문조사에 대한 만족도, 요개호 인정 결과 등	1회 한정

나) 요개호 및 요지원 고령자 실태조사

지역(도쿄도) 내 치매 의혹이 있는 고령자 및 주된 개호자(가족 등) 의 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조사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표 3-29> 와 같다.

<표 3-29> 요개호 및 요지원 고령자 실태조사

지방자치 단체명	조사표	조사사항	조사 주기
도쿄도	요개호 및 요지원고령자실태조사표 (고령자본인용)	일상생활동작능력 등	1회 한정
	요개호 및 요지원고령자실태조사표 (주된 개호자용)	개호자의 속성, 개호실태 및 문제점, 신체질환, 재가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	
	요개호 및 요지원고령자실태 조사표 (케어매니저용 기본정보)	케어매니저 및 요개호자의 속성	
	요개호 및 요지원고령자실태 조사표 (케어매니저용)	담당요개호자의 심신상태 및 재가서비스의 이용상황 등	

다) 개호보험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앙케이트

지역(야마니시현) 내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 상황과 만족도 조사.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서비스이용상황,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사업자의 선택 등 이다.

라) 개호보험이용자 등에 대한 앙케이트

지역(고베시) 내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양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충을 파악. 조사주기는 1회 한정이며, 조사내용은 케어매니저와 케어플랜,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 등 이다.

제 4 절 시사점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호주, 독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역사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하게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복지국가의 지역복지통계는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노동시장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이슈가 되는 특정주제를 선택하여 심층조사 및 분석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고자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경상적인 내용은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시기의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이거나 1회 한정이 많았다. 또한 특정시점의 현황파악을 토대로 지역복지계획수립에 필요한 주민의식조사 등은 대개 부정기적이거나 1회 한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같은 이름의 조사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 및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

서구사회의 다양한 지역복지통계는 기존의 기본 틀인 소득보장 또는 생계급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고용지원,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해소 등을 포괄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수요가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복지국가의 경우 생산된 지역통계를 신속하게 공표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호주, ABS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서구복지국가의 경우에도 일관된 복지통계의 범주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내 자치단체 간의 비교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새롭게 생산해야 할 통계로는 저출산 고령

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자녀양육 욕구나 기업의 자여양육에 따른 지원내용 조사, 청소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향후 자녀에 대한 의식조사, 고령사회대책실태조사 등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복지자원과 관련하여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단체와 기업의 실태조사, 자원봉사 및 NPO활동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사, 복지 맨 파워의식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제 4 장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 측면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재의 복지선진국가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분석 방법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검토하고, 현재 주요 선진국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지역복지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1 절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필요통계

1. 지역복지계획수립 개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4년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8)}.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구성을 예시하면 <표 4-1> 과 같다.

주8)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표 4-1〉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구 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 현안과제, 지향하는 목표, 계획의 주요내용 - 진행과정 (개괄적으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목표를 구체화하여 기제, 근거 등 필요사항 기재
② 지역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황과 과제 - 지역일반현황(인구, 지역특성 등) - 사회복지기관현황 - 지역사회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자원현황 · 수요 및 공급 이용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세부사업별 관련사항만 필요시 기술
③ 비전 및 방향설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변화 전망 및 복지수요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주민 생활양식 등) · 인구변화추이 · 복지욕구 및 물리적 환경변화 - 기본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 기타 유사·관련계획 검토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별로 필요사항 기재
③ 부문별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부문)별 사업계획 - 사업영역(부문)별 목표 - 사업영역(부문)별 수요측정 - 사업영역(부문)별 중점핵심사업 - 사업영역(부문)별 우선순위 결정 - 연차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방법 - 일반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일반사업은 간략히 기술
⑤ 사회복지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방안 - 기타 기반조성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분만 기술
⑥ 행·재정 등 복지 자원 조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및 정비계획 - 총괄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자원 확충방안 - 인력 및 조직 확보(활용) 및 관리방안 - 재정계획 및 확보방안 - 통계의 수집 및 정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분만 기술
⑦ 평가 및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사업추진과정 자체평가의 방법 기술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안내, 2005

계획수립 대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이며, 계획수립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한 4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계획의 개요와 지역일반현황, 지역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부문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행정·재정적 재원의 투자 계획, 계획에 대한 평가 등 환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내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근거로 하며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복지욕구조사는 지역주민과 유형별 복지대상자(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대상, 복합욕구대상, 시설수급자 등)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일반현황으로 지리적 여건, 교통, 산업구조, 지역 현안과제 등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일반현황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복지대상자 유형을, 복지만족도 및 욕구로는 현 서비스 평가(복지급여 및 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현 서비스의 적절성·필요성, 이용 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복지수요 및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내 필요한 복지기관 및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대상, 복지관련 활동 참여 의향, 지역복지 개선방안 등 이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는 복지공급자 일반 현황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보건소,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및 종교기관 등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설치 현황으로는 지역별 분포, 대상 인구 및 이용률, 적용기준 등을, 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 참여 전문가, 자원봉사 인력 등을, 그리고 복지활동중인 주민조직,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의 조직·인력 등을 파악한다.

2. 지역복지계획수립지침에 비춰 본 필요통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는 다음과 같이 여섯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세부분야로는 가구특성, 보육·아동·청소년복지육구, 여성복지육구, 노인복지육구, 장애인복지육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복지육구 등이다.

가. 가구특성

1) 가구특성

- 가구의 일반특성
- 가구의 취업여부 및 직종 등
-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소비액, 부채액
- 생활정도
- 정부에서 지원받는 내용 등

2) 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상태

- 현 취업 여부 및 직업종류, 종사상지위, 직업 유형
- 취업시 가정생활상 가장 큰 문제점
- 미취업시 그 이유, 구직활동 내용, 향후 취업여부 및 원하는 일의 형태

3)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특성

-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여부 및 도움 필요 여부
-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향후 참여 여부
- 지역사회내 이용시설 종류별 인지여부, 이용여부, 향후 이용 의향
- 지역사회 문제들의 시급성 정도
-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지역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

나. 보육 /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 주간에 주로 아동을 돌보는(이용하는) 사람(시설) 등
- 시설(기관)이용시 이용 시간, 비용 부담 정도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향후 시설(기관) 이용 의향
-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현황 및 도움 정도
- 시설이용 선택시 고려 요인
-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지역내 안전관련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설치수준 및 필요여부

다. 여성복지욕구

- 생애단계별 취업여부 및 직종의 변화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취업특성(가구특성 참조)
- 출산관련 복지제도 이용여부(육아휴직제도 등)
- 여가시간 활용방법
- 시설제공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향후 이용여부
- 지역내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라. 노인복지욕구

- 현 취업여부(경제활동참가, 종사상 지위 등), 구직활동 여부
-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의 필요성
- 여가시간 활용방법
- 여가시설 이용 여부 및 원하는 프로그램 종류
- 생활상 가장 어려움 점
-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지역내 노인복지정책 수행시 우선시행 할 사업(복지욕구조사)

마. 장애인복지욕구

- 장애유형 및 등록여부
- 현 취업여부, 향후 구직활동 여부
- 재활보조기구별 사용 여부
-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시 불편 정도
- 외출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불편정도와 불편사항
- 여가시간 활용방법
- 자원봉사참여
- 이용시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차별경험
- 지역내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시 우선 시행해야 할 사업
- 향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희망하는 지원 내용

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욕구

- 수급자(가구) 현황
- 급여내용별 수급자 현황

- 1년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 정부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내용
-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사업 내용
- 자활후견기관 사업별 인지 여부 및 필요 정도

제 2 절 외국의 사회복지에 비춰 본 필요통계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가의 지역복지통계 생산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회·환경여건과 앞으로 복지선진국가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통계를 선정하여 필요통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복지통계

- 아동보호유형
 - 공식적 보호: 방과 전·후 보호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주간가정보호센터, 임시보호, 유치원, 기타,
 - 비공식적 보호: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족, 기타
 - 두 유형의 보호를 모두 받지 않는 아동
- 아동지원서비스
 - 취학전 아동보육서비스
 - 방과후 저학년아동보육프로그램 내용
- 노동과 아동보호
 - 부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여건
 - 탄력적 근무시간 조절여부
 - 기업의 양육지원 내용

- 입양의 일반특성
 - 입양아동
 - 양청소년
- 청소년 복지서비스
 - 서비스 기관, 서비스유형 등

2. 노인복지통계

- 고령사회대책 실태
 - 건강상태(개호 필요여부 등)
 - 가구구성(독거노인 여부 등)
 - 경제상태(경제활동, 소득 등)
-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 노인요양시설 현황
- 노인보호시설 현황

3. 장애인복지통계

- 장애인 실태
 -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
 -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현황
 - 장애가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
-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현황

- 수발공급자들의 경험 등
-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 장애인요양시설 현황

4. 공공부조통계

- 저소득가구의 생활실태조사
 - 생계보조 정도
 - 주택보조 정도
 - 자활능력향상 지원정도
- 전쟁피해자보호(국가보훈 참조)

5. 사회복지자원통계

- 사회공헌활동의 단체 및 기업의 실태
-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능력과 복지맨 파워 파악
- 자원봉사 및 NPO활동
-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

제 5 장 지역복지통계의 체계개발

제 1 절 체계개발의 방법론 고찰

오늘날 국민들의 사회복지, 후생, 여가 등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점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체계의 검토와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통계는 그 지역사회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당면한 지역문제를 제시하고, 정책결과의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등장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통계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동안의 중앙중심적 논리 때문에 지역단위의 지역통계가 제대로 발전·구축되지 못하였다.

지역복지통계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복지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쓰이는 접근방법 중 하나가 체계론적 접근방법(systems approach)이다. 여기서 체계론적 접근방법이란 일련의 제도시행의 과정 속에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호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 실행,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통합적이며 논리적인 접근방식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하위체계간 및 체계가 놓여있는 환경과의 상호관련성과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체계론적 접근방법은 한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도내부간과 타 제도와의 상호관련성과 환류를 연결해주는 일련의 각 통계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는가의 호

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체계론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시스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 일반시스템이론(*general systems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접근대상을 일종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그 시스템의 모든 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고체계 내지 철학으로 보고 있다(이진주 외4). 특히 Thome and Willard(1966)는 “시스템접근방식은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간의 욕구를 평가하는 체계적 방법의 하나로서 보다 객관적 입장으로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체계가 그 바탕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The systems approach is an orderly way of appraising a human need of a complex nature, in a let's-stand-back-and-look-at-this-situation-from-all-its-angles frame of mind

특히 체계론적 접근법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얻는 데 있어 ‘원인과 결과’와의 관련된 경로를 잘 설명해주는 *Logic model*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Logic model*이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 예정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혹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사고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분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방법이다”(W. K. Kellogg Foundation, 1998).

Basically, a logic model is a systematic and visual way to present and share y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resources you have to operate your program, the activities you plan to do, and the changes or results you hope to achieve.

*Logic model*은 프로그램 매니저와 평가자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설명하기 위해 20년 이상 사용해온 수단이다. 이러한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의 자원, 활동, 산출, 목표그룹, 그리고 특정 문제점 혹은 상황에 관련된 단기, 중기, 장

기간 성과 간의 논리적 연계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즉, Logic model은 현재의 여건(상황)에 개입(자원투여, 산출물)하고, 그 결과인 영향(성과)과 연결시킨다. Logic model은 활동이 특정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잠재적 가설을 전달하는 진행 과정에 대한 화술적 또는 도식적인 서술이다(University of Idaho, Home page). 따라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계획단계에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체계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다.

Logic Model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체계로부터 인적·물적 투입(자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입은 체계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성과인 유형·무형의 산출(satisfaction of need)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관리방식을 깨고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궁극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써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흐름도(Flow-Diagram)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Logic Model은 정책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통계체계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Logic Model은 일반적으로 투입(Resources), 과정(Activities), 산출(Outputs), 그리고 성과(Outcomes)의 네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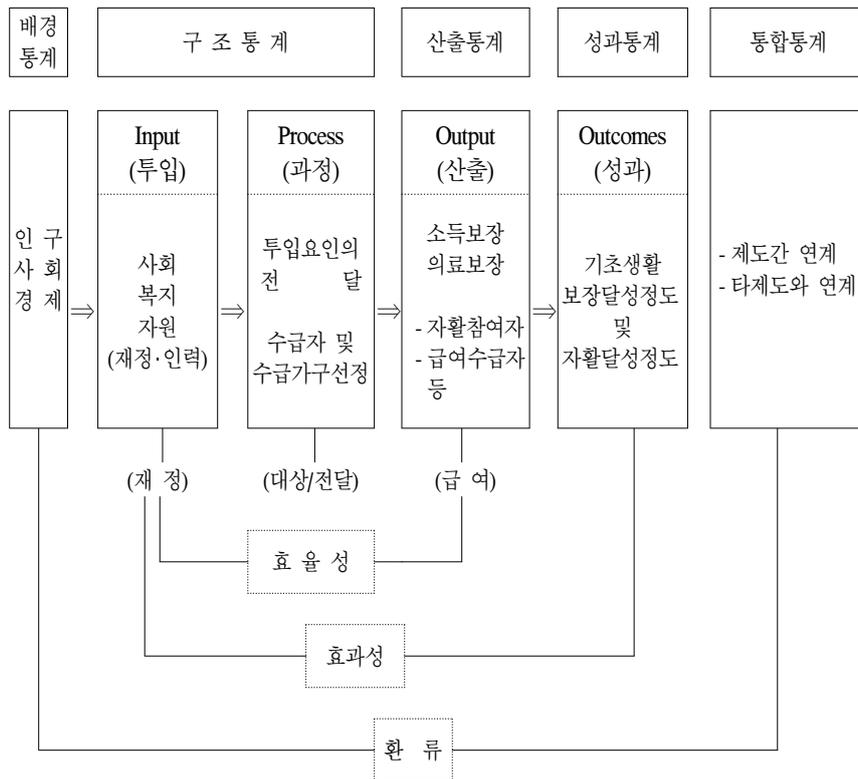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체계론적 접근방법보다는 보다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도시행의 각 단계별 통계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Logic Model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체계개발 모형과 구성 틀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체계를 각 제도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효과의 구성요소를 각 단계별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조망할 때 통계체계개발은 정책평가와 관련시켜 구조통계, 산출통계, 성과통계, 그리고 통합통계로 구분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제도

를 평가하는 통계체계는 ① 수급대상가능 인구와 그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수록하고 있는 배경통계군, ②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성숙을 말해주는 구조통계군, ③ 제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산출통계군, ④ 제도의 목표선정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성과통계군, ⑤ 사회복지제도의 하위 구성요소들간이나 사회복지제도 전체와 하위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통합통계군이 필요하다. 이를 체계구성요소와 관련시켜보면 다음의 모델과 같다.

[그림 5-1] 체계이론에 입각한 통계체계모델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위해 관련 변수(통계)들로 구성된 분석 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분석 틀은 개별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흐름도(Flow-Diagram)를 쉽게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Logic Model과 사회복지정책의 내적 내용의 분석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하는 네 가지 차원, 즉, 대상,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통계체계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 틀은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적 이해뿐만 아니라 향후 각 복지제도의 통계 및 지표의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복지제도별 통계체계개발

본 절에서는 공공부조,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등 주요 5개 부문에 국한하여 통계체계를 개발하여 보았다. 통계체계의 구성 틀은 복지환경을 둘러싼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구조통계(Input), 산출통계(Output), 성과통계(Outcomes), 그리고 복지제도 내외부 체계와의 관련성을 가진 통합통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5개 부문의 통계체계에 제시된 개별통계는 총 420개이다. 본 절에 제시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뿐만 아니라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필요한 일부 국가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로는 최저생계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요금감면현황 등이다.

1. 공공부조제도 부문

본 연구는 공공부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통계체계를 개발하였다. 즉, 공공부조의 통계체계는 제도의 운영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크게 5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 통계의 체계개발로 수급대상가능 인구와 그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수록하고 있는 배경통계군, 정책의 구성 및 투입요소를 나타내는 구조통계군, 제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산

출통계군, 정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성과통계군, 그리고 정책영역간 혹은 상위 체계와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둔 통합통계군으로 구성하였다(표 5-1 참조).

〈표 5-1〉 공공부조제도의 통계체계의 구성 틀

범	주	세	부	항	목
배	경	통	계		인구·사회
	대	상			수급자 선정, 수급자와 수급가구의 현황
구	조	통	계		인력현황, 업무량 및 처우, 접근용이성
	재	정			재정조달 및 재정지출
산	출	통	계	(급여)	급여적시성, 급여실적, 공제, 급여수준의 적절성
성	과	통	계		급여충족률, 자활률, 수급자의 고용률
통	합	통	계		공공부조제도 내외 체계와의 관련성

통계체계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통계군에는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산출통계군에는 급여를, 성과통계군에는 자활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끝으로 통합통계군에는 공공부조,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예산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2 참조). 이들 5개 영역의 통계체계 구성은 7개의 관심차원과 20개의 세부관심차원, 114개의 개별통계로 구성되었다(표 5-3 참조).

〈표 5-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통계체계 구성

부문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배경	인구 사회	인 구	최저생계비 미만 인구 등
		최저생계비 등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 등
		선정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등
대상	대 상	수급자 선정	소득평가 산정의 합리화 등
		수 급 자	수급자의 일반 및 세부현황
		수급가구	수급가구의 일반현황
구조	전 달	인력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현황 등
		업무량 및 처우	1인당 담당가구수 등
		접근용이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용이성
산출	급 여	재정	재정의 운영
		급여적시성	공공부조예산과 기금운용현황 등
		급여실적	긴급생계급여 등
성과	성 과	공 계	각 급여종류별 급여액과 수급가구수
		급여수준의 적절성	소득 및 재산공제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수준의 충분성 또는 현실성
통합	통 합	자활효과	현재가구소득의 만족도 등
		소득재분배효과	급여충족률, 자활률 등
		공공부조	지니계수의 개선도 등
통합	통 합	사회보장	제도별 적용인구 구성비 등
		경제·예산	사회복지제도의 총지출액 대 공공부조 총지출액 비율 GDP대비 사회복지예산

〈표 5-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부 문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별통계	주관적통계
배 경	1	3	11	1
구 조	3	7	48	7
대 상	1	3	33	2
전 달	1	3	8	4
재 정	1	1	7	1
산출(급여)	1	4	30	9
성 과	1	3	18	5
통 합	1	3	7	-
계	7	20	114	22

2. 영역별 통계군

가. 배경통계군

배경통계군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 실행을 위한 인구사회적 배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표 5-4 참조). 세부관심차원으로는 「인구」, 「최저생계비 등」, 「선정기준 등」의 3개 차원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인구’,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의 4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4〉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¹⁾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인구 사회		최저생계비 미만 인구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연중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수급자 종류별, 성별·연령별 (수급률 = 총수급인구/총인구×100)
		최저생계비	가구형태별(독신가구, 부부단독가구, 부부+아동1인가구, 부부+아동2인가구, 부부+아동3인 가구, 편부모가구, 미혼모가구로 구분)
	최 저 생 계 비 등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	연도별
		최저노령연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	연도별
		최저산업재해보상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	연도별
		가구 형태별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	·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의 근로자 선정 · 이 경우 남편은 근로활동,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정 · 가구 형태별로 적용되는 조세체계와 복지급여를 감안하여 가처분소득을 산출 ·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가처분 소득과 최저임금을 상호비교
	선정 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	수급자 종류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 종류별,	

주: 1) *는 주관적 통계

「최저생계비 등」의 세부관심차원은 ‘최저생계비’와 ‘최저노령연금과 최저생계비 격차’ 등의 5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선정기준 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선정에 대한 만족도’의 2개 개별지표로 제시하였다.

나. 구조통계군

구조통계군은 대상, 전달, 그리고 재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산출통계군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1) 구조통계군: 대상

구조통계군 중 대상은 공공부조제도의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제공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대상」이라는 1개의 관심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급자(가구)의 일반현황과 세부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는 「수급자 선정」, 「수급자」, 「수급가구」의 3개 차원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 선정」에는 ‘소득평가액 산정의 합리성’,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합리성’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일반현황(규모, 변동현황 등)’, ‘수급자의 세부(아동, 노인 등)현황’,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등의 14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가구」의 경우 ‘수급가구의 일반현황(규모, 변동현황 등)’, ‘수급가구의 가구특성’, ‘의료급여가구의 현황’ 등의 17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5〉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수급자 선 정	소득평가액 산정의 합리성*	
		재산의 소득환산액산정의 합리성*	
	수	수급자의 일반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령대별, 성별 분포 · 연도별,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대별: 연증가를 추가 (특성별 수급자 수 / 해당 특성의 전체 인구 ×100)
		- 수급자 규모	· 연령대별, 성별: 수급률
		- 수급자 변동현황: 신규 or 탈락	· 가구 형태별(부부+아동, 미혼모,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등) (연령별 수급자 수 /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 ×100)
		- 특례수급자(유형별)현황	· 연령대별, 성별: 수급률 · 가구 형태별(부부+자식, 부부, 독거 등) (연령별 수급자 수 /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 ×100)
		수급자의 세부현황	
		- 아동의 수급현황	
		- 노인의 수급현황	
	급	- 수급자의 장애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연령대별
		- 수급자의 교육수준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연령대별
		- 수급자의 건강상태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연령대별
		- 수급자의 경제상태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연령대별, 가구규모별
- 수급자의 취업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경제활동(취업형태별)과 비경제활동 구분	
- 수급자의 취업현황		· 연령대별, 성별: (잠재 근로능력자 = 전체대상자 - (미성년자, 60세 이상 노인) - (육아,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불가능자) - (취업활동자와 직업교육자)	
자	수급자 중		
	- 근로능력자 현황		
	- 잠재 근로능력자 현황		
	-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자		
	- 특례자 및 차상위층 자활사업 참여자	· 연령대별, 성별, 근로유형별	

주: *는 주관적 통계

〈표 5-5〉 계속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수 급 가 구	수급가구의 일반현황 - 수급가구 규모 - 수급가구 변동현황: 신규 or 탈락 - 특례수급가구(유형별)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령대별, 성별, 가족유형별 분포 · 연도별,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대별: 연증가율 추가 (특성별 수급가구 수 / 해당 특성의 전체가구×100)
		- 부양불능·거부·기피현황	· 연도별
		- 주거유형	·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유형별
		- 자가주택 건축상태	· 연도별, 가구구성별, 가구유형별
		- 전세금 분포현황	· 연도별, 가구유형별
		- 월임대료 분포현황	· 연도별, 가구유형별
		- 차량보유 현황	· 연도별, 가구유형별
		- 부양의무자 현황	· 연도별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판정
		수급가구의 가구특성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가구구성별(단독, 부부, 자녀동거, 그외가족동거, 비혈연가구) 가구유형별(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장애인, 일반가구)
		- 수급가구 보장사유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 수급가구의 보장기간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형태별
		- 수급가구의 소득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가구원수별: 10만원 간격
		- 수급가구의 재산현황	· 수급자 종류별, 연도별, 가구원수별: 500만원 간격
		- 의료급여가구의 현황	· 연도별, 가구구성별, 가구유형별

2) 구조통계군: 전달

어떠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대상’의 내용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느냐 하는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현재의 전달체계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달」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인력현황」, 「업무량」, 그리고 「접근용이성」의 3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성하였다(표 5-6 참조).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력현황」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현황’, ‘전담인력의 보수교육실태’, 그리고 ‘전담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등의 3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업무량」의 경우 ‘1인당 담당 가구수’, ‘업무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수 및 처우에 대한 만족’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접근용이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용이성’, ‘대상자의 공공부조제도 인지도’, 그리고 ‘자활사업기관분포 현황’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6〉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2.전달	인력 현황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배치현황	연도별
		전담인력의 보수교육실태	연도별
		전담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복지정책 DB의 관리정확성)	연도별
	업무량	1인당 담당가구수	연도별
		업무량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접 근 용이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용이성*	성별, 연령대별
		대상자의 제도 인지도*	성별, 연령대별
		자활사업의 기관분포 현황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등)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3) 구조통계군: 재정

재정통계는 공공부조에 투입되는 자원형태와 지출유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중요하다. 현재의 재정운영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재정의 운영」이라는 1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표 5-7 참조).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비부담액’, ‘현금·현물급여예산액’, 그리고 ‘자활사업예산액’ 등의 7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7〉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3.재정	재정의 운영	지방비 부담액	연도별
		생업자금융자 활용실적	연도별
		현물·현금급여 예산액 - 현금급여 예산액 - 현물급여 예산액	수급 종류별, 연도별
		조세부담과 공공부조에 대한 인식*	연도별
		자활사업 예산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예산: 취업/업그레이드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다. 산출통계군(급여)

공공부조제도에서 대상자에게 지출된 급여실적과 그 수준의 적절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 지출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급여현황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라는 관심차원 아래 「적시성급여 실적」, 「일반급여실적」, 「공제」,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4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표 5-8참조).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시성급여 실적」의 경우 ‘긴급생계급여’, ‘특례급여’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급여실적」의 경우 ‘월 평균

급여액’, ‘생계 급여액’,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등의 1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재산공제’의 2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의 경우 ‘생계급여의 적절성’, ‘주거급여의 충분성’, 그리고 ‘해산급여의 적절성’ 등의 1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8〉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급여	적 시 성 급여실적	긴급생계급여	연도별	
		특례급여	연도별	
	일 반 급 여 실 적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규모: 「구조통계군 대상」에 포함		연도별
		월평균급여액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생계급여액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수급사유별(실업, 비경제활동): 개인당 / 가구당	
		주거급여액	수급자 중 잠재 근로능력자별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교육급여액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개인당 / 가구당	
		해산급여액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개인당 / 가구당	
		장제급여액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개인당 / 가구당	
		의료급여액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개인당 / 가구당	
		자활급여액	성별, 연도별: 개인당 / 가구당	
취로사업 실적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중가율)			
생계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수급사유별(실업, 비경제활동), 잠재 근로능력자별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	연도별			

〈표 5-8〉 계속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일반 급여 실적		교육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해산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장제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자활급여 수급 가구수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공제	소득공제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재산공제	수급자 종류별, 성별, 연도별	
	급여		생계급여의 적절성*	· 가구형태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순수지원액 · 전체 대상가구를 다양한 형태 (부부+아동, 독신, 부부단독, 편부모, 동거가정 등)로 구분
			주거급여의 충분성*	가구형태별, 연도별
			교육급여의 현실성*	가구형태별, 연도별
급 여 수준의 적절성			장제급여의 적절성*	가구형태별, 연도별
			해산급여의 적절성*	가구형태별, 연도별
			의료급여 1인당 급여액	연령대별, 성별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도*	가구형태별, 연도별, 수급자 종류별
			의료급여대상자 1인당 본인 부담금 비율	연령대별, 성별
			의료급여대상자	연령대별, 성별
			의료비 부담에 관한 인식도*	

주: *는 주관적 통계

라. 성과통계군

성과통계군은 공공부조 대상자들의 최저생활보장 정도와 자활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군이다. 현재의 제도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최저생활보장」, 「자활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라는 3

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현재가구소득 만족도’, ‘상대적 소득인식에 관한 인식’,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의 3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경우 ‘지니계수의 개선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수 대 공공부조 수혜가구 비율’ 등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자활효과」의 경우 ‘급여충족률’, ‘자활률’, 그리고 ‘수급대상자의 비율변화’ 등의 1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9〉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성과 통계	최저 생활 보장	현재가구소득 만족도*	가구규모별	
		상대적 소득수준에 관한 인식*	가구규모별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제도별, 가구규모별	
	자 활 효과	급여충족률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이용하여 추계)	급여충족률	연도별
			자활률(수급자 탈출 현황)	기관별 (자활가구 수/ 총수급가구 수 ×100)
		생계급여개시 및 폐지세대 취업현황	생계급여개시 및 폐지세대 취업현황	가구원수별
			수급자의 소득증가 현황 (근로소득, 총소득)	연도별
		수급자의 태도변화 현황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수급자의 태도변화 현황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연도별
			수급자의 근로시간 증가 (총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연도별
		상위프로그램 진입현황 (재활→자활→취업)	상위프로그램 진입현황 (재활→자활→취업)	연도별
			생계급여 재신청률, 재신청 이유*	제도별, 성별, 연령별
			수급 후 생활상태*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표 5-9〉 계속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재활사업 등)	연도별
		수급대상자 비율 변화	연도별
		수급대상자 고용률	연도별
		지니계수의 개선도	전체제도, 제도별
	소 득 재분배 효 과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 증가율	보호종류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수 대 공공부조 수혜가구 비율	연도별

마. 통합통계군

통합통계군은 공공부조제도가 여러 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급여의 연계성 파악이라는 차원에서 「통합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공공부조」,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예산」이라는 3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조」의 경우 ‘지역의 총인구 대 제도별 적용인구’, ‘의료급여의 적용인구 비율’ 등의 3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인구 대 공공부조 수급인구 비율’과 ‘의료보험 대상인구대 의료급여 대상인구 비율’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예산」의 경우 ‘자치단체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 ‘자치단체예산 대비 행정관리비용(전담공무원인건비)’ 등의 2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10〉 공공부조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통합 통계	공공 부조	지역의 총인구 대 제도별 적용인구의 비율	수급자 종류별	
		의료급여 적용인구 비율	성별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인구 대 공공부조 수급인구 비율	연도별	
	사회 보장	의료보험 대상인구 대 의료급여 대상인구 비율	연도별	
		경제 및 예산	자치단체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	연도별
			자치단체예산 대비 행정관리비용 (전담공무원인건비)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2. 아동·청소년복지 부문

아동·청소년복지는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들에게 가장 적절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최근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확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요보호아동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아동복지법 개정(2003년)으로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사업도 2004년 6월부터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저출산 경향에 따라 출산정책과 양육의 질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1950년대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주로 고아, 가출아동의 보호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여건과 만성적 실업 등으로 빈곤가정이 늘고 가족 구조적으로도 이혼의 증가, 맞벌이부부, 청소년 가출 등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로부

터 이탈되는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아동복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 5-11〉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범	주	세 부 항 목	
배	경	통 계	인구·사회
구조 통계	대 상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수, 보육수요, 복지급여 수급 아동, 세대수 현황	
	전 달	아동복지 종사인력 현황, 복지시설, 접근용이성	
	재 정	아동복지 재정지출	
산	출 통 계(급여)	급여실적, 복지급여 수준	
성	과 통 계	복지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통	합 통 계	아동복지와 기타 복지체계와의 관련성	

가. 아동·청소년복지 통계체계의 구성

아동·청소년복지 통계체계에서는 보육사업을 포괄하여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조통계군에는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산출통계군에는 급여를, 성과통계군에는 생활만족도 및 욕구, 통합통계군에는 관련제도와의 관계, 경제·예산의 측면으로 구성하였고(표 5-12 참조), 이들 5개 영역의 통계체계 구성은 7개의 관심차원과 12개의 세부관심차원, 69개의 개별 통계로 구성되었다(표 5-13 참조).

〈표 5-12〉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부문	관심 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배경	인구	인 구	18세 미만 인구 비율, 증가율
		증가율 변화추이	아동인구 증가(감소)율
구조	대상	대상인구	18세 미만 아동중 요보호 아동, 보육수요 등
		시설 및 인력현황	아동복지 시설 및 담당인력의 현황 등
		접근용이성	아동인구 대비 아동복지시설 수, 서비스 인지도 등
	재정	재정의 운용	아동복지예산
산출	급여	급여실적	유형별 아동복지 서비스 실적 등
		급여수준의 적절성	각 급여수준의 충분성, 적절성
성과	성과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
		생활만족도 및 욕구	아동의 서비스 만족도 등
통합	통합	교육·복지	복지와 문화 등 관련 제도간 연계 현황
		경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 비율

〈표 5-13〉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부 문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별통계	주관적통계
배 경	1	2	5	-
구 조	3	4	28	-
대 상	1	1	12	-
전 달	1	2	11	3
재 정	1	1	5	-
산출(급여)	1	2	12	3
성 과	1	2	21	14
통 합	1	2	3	-
계	7	12	69	20

나. 영역별 통계군

1) 배경통계군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배경통계군은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인구 및 요보호 아동 수요와 대상자의 복지 수급률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 「인구」에서는 18세 미만 인구수와 아동인구 증가(감소)율로 구성되어 있고, 「수급」의 경우 ‘요보호아동’, ‘복지수급아동’, ‘보육대상아동’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14〉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인구 사회 수급	인구	18세 미만 아동 인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아동 수
		아동인구 비율	아동인구 비율(증감율)
	수급	요보호 아동 수	요보호 대상 수/전체 아동수
		복지수급 아동	복지 수급아동 수/ 요보호 아동수
		보육대상 아동	보육대상 아동

2) 구조통계군

가) 구조통계군: 대상

구조통계군 중 대상은 일반아동과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아동, 보육 수요 아동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개의 관심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서 일반현황에는 ‘18세 미만 인구의 비율’, ‘증가(감소)율’ 등이며, 요보호아동 현황에서는 ‘소년소녀가정’, ‘미아·기아아동’, ‘기출아동 현황’, ‘시설 아동’, ‘입양아동’, ‘보육대상 아동’ 등 총 1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15〉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대상 인구	전체아동인구 및 비율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 연도별 증가(감소)율
		소년소녀 가정수	소년소녀 가정 세대수
		미아, 기아수	미아, 기아 발생수
		가출아동수	가출아동 발생수
		시설아동수	보육시설 등 아동 현황
		입양아동수	입양아동수
		보육대상아동수	연령별, 성별 보육아동 수
		학대 경험 아동수	연도별
		장애아동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아동 출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안전사고 사상 아동비율	연도별
		부모 이혼 아동 비율	연도별

나) 구조통계군: 전달

아동복지 전달체계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전달」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시설 및 인력현황」과 「접근용이성」의 2개 세부관심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시설 및 인력현황」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등의 6개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접근용이성」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이용률’, ‘복지시설 공급률’,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 ‘아동인구 대비 복지시설 수’, ‘보육아동 대비 보육시설수’의 5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16〉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2.전달	시설 및 인력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연도별	
		아동복지 종사자 1인당 아동수	연도별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연도별	
		아동복지(보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연도별	
			아동복지(보육)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연도별
	접근 용이성		아동복지 관련시설 이용률*	연도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공급률	연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	연도별
			아동인구 대비 아동복지시설 수	연도별,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대비 보육시설 수	연도별	

다) 구조통계군: 재정

재정통계는 아동복지에 투입되는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의 운영」이라는 1개의 세부관심차원에 ‘아동복지예산’, ‘보육예산’, ‘지방비 부담액’, 그리고 ‘보육대상아동 예산’, ‘아동 1인당 복지예산’ 등의 5개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5-17〉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3.재정	재정의 운영	아동복지 예산	연도별
		보육 예산	연도별
		지방비 부담액	연도별
		아동 1인당 복지예산	연도별
		보육대상 1인당 예산	연도별

라) 산출통계군(급여)

아동복지에서 「급여」라는 관심차원 아래 「급여실적」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여, 「급여실적」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학대예방센터 이용’, ‘가정위탁 보호실적’, ‘소년소녀가정’, ‘보육시설 1개소당 아동수’ 등 8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의 경우 ‘복지시설보호 수준의 적절성’, ‘보육수준의 적절성’,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절성’, 그리고 ‘아동 1인당 급여액’ 등 4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18〉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급여	급여실적	아동복지시설 이용 수 - 양육시설, 자립시설 - 아동상담소 등	연도별, 지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이용 수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실적	연도별
		소년소녀 가정	연도별
		불우아동 결연·후원사업	연도별
		아동급식	연도별
		가출청소년 쉼터	연도별
		보육시설 1개소당 아동수	보육시설 대비 보육아동
	급여수준의 적절성	복지시설 보호의 적절성*	시설서비스 수준
		보육수준의 적절성*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 수준
		서비스 프로그램 적절성*	연도별, 서비스 종류별
		1인당 아동복지 급여액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마) 성과통계군

성과통계군은 서비스와 생활만족 및 욕구로 구성하였는 바, 「성과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복지서비스」, 「생활만족」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비율’, ‘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의 7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만족 및 욕구」의 경우 ‘여가시간 활용실태’, ‘주요 상담 대상’, ‘프로그램 이용의향’,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14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19〉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성과 통계	복지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이용률	연도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비율	연도별
		아동복지 프로그램 만족도*	연도별
		복지시설 아동의 퇴소후 자립 비율	연도별
		보육시설 학부모의 만족도*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퇴소후 자립비율	연도별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참여도*	연도별
	생활만족 및 욕구	여가시간 활용실태*	연도별
		주요 고민 상담 대상*	연도별
		취학률(장애아동 포함)	연도별
		아동학대 경험률*	연도별
		취학전 보육시설, 유치원 경험률*	연도별
		학교폭력(집단따돌림) 경험률*	연도별
		학업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연도별
		도서관 이용률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음주·흡연 경험률*	연도별
		상담기관 이용의향*	연도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이용의향*	연도별
		지역내 희망하는 시설 또는 전용공간*	연도별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바) 통합통계군

통합통계군에는 아동복지의 특성상 교육과 복지간의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으로서 특히 장애아동과 관련지어 「교육·복지」, 「경제·예산」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복지」의 경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과 ‘통합교육 현황’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제·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 대비 아동복지 지출 규모’의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통계 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구현황이 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아동에 관한 지역통계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변화, 교육여건의 변화, 사교육의 증가와 집단따돌림과 같은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5-20〉 아동·청소년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통합통계	교육·복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연도별
		장애아 통합교육 현황	연도별
	경제·예산	지역재정 대비 아동 복지지출	연도별

3. 여성복지 부문

우리의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성역할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참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요보호 여성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일반여성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여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서 특히, 한쪽 부모와 자녀가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모·부자복지의 직접적 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래는 모자복지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부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동등한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5-21〉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범 주	세 부 항 목	
배 경 통 계	인구·사회	
구조 통계	대 상	요보호 여성 수, 복지급여 수급 여성
	전 달	여성복지 종사인력 현황, 복지시설, 접근용이성
	재 정	여성복지 재정지출
산출통계(급여)	급여실적, 복지급여 수준	
성 과 통 계	생활만족도 및 욕구	
통 합 통 계	여성복지와 기타 복지체계와의 관련성	

가. 여성복지 통계체계의 구성

여성복지 통계체계에 있어서도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조통계군에는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산출통계군에는 급여를, 성과통계군에는 생활만족도 및 욕구, 통합통계군에는 관련제도와의 관계, 경제·예산의 측면으로 구성하였고(표 5-22 참조), 이들 5개 영역의 통계체계 구성은 7개의 관심차원과 11개의 세부관심차원, 55개의 개별통계로 구성되었다(표 5-23 참조).

〈표 5-22〉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부문	관심 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배경	인구	인 구	여성인구 비율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수준	교육수준별 분포
		결혼상태	결혼상태별 분포
구조	대상	대상인구	요보호 여성, 모자복지 대상 현황
		시설 및 인력현황	여성복지 시설 및 담당인력의 현황 등
		접근용이성	여성인구 대비 복지시설 수, 서비스 인지도
재정	재정의 운용	여성복지예산	
산출	급여	급여실적	여성복지 서비스 실적 등
		급여수준의 적절성	각 급여수준의 충분성, 적절성 등
성과	성과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
		생활만족도 및 욕구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책 요구사항
통합	통합	교육·복지	여성복지 관련 제도 등
		경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여성복지예산 비율

〈표 5-23〉 여성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부 문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별통계	주관적통계
배 경	1	1	6	-
구 조	3	3	20	-
대 상	1	1	9	-
전 달	1	2	7	3
재 정	1	1	4	-
산출(급여)	1	2	10	3
성 과	1	2	17	11
통 합	1	2	2	-
계	7	11	55	17

나. 영역별 통계군

1) 배경통계군

여성복지 분야의 배경통계군은 여성인구 현황과 복지 수급률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는 「인구」에서는 여성 인구수와 경제활동 현황, 교육수준, 결혼상태별 인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수급」의 경우 ‘요보호여성’, ‘복지수급여성’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24〉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인구 사회	인구	여성인구 현황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여성인구 수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연도별
		여성의 교육수준	교육수준별 여성 인구수
		여성의 결혼상태	결혼상태별 여성 인구수
	수급	요보호 여성 현황	요보호 대상 수/전체 여성수
		복지수급 여성 현황	복지수급 여성 수/ 요보호 여성수

2) 구조통계군

가) 구조통계군: 대상

구조통계군 중 대상은 일반여성과 복지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는 여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개의 관심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서 일반현황에는 ‘여성인구비율’, ‘경제활동’, ‘교육수준’ 등이며, 요보호여성 현황에서는 ‘모자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녀학비 및 양육비 수급인원’ 등의 9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25〉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대상 인구	연령별 분포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연도별
		교육수준별 분포	연도별
		결혼상태별 분포	연도별
		모자복지시설 이용 여성	연도별
		미혼모시설 이용 여성	연도별
		모자일시보호시설 이용 여성	연도별
		성(가정)폭력 경험 여성	연도별
		자녀학비, 양육비 수급 여성	연도별

나) 구조통계군: 전달

여성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전달」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시설 및 인력 현황」과 「접근용이성」의 2개 세부관심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시설 및 인력현황」에서는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등의 4개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접근용이성」의 경우 ‘여성복지시설 인지도와 경험률’, ‘지역별 복지시설의 분포’, 그리고 ‘여성인구 대비 복지시설 수’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26〉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2.전달	시설 및 인력현황	여성복지시설 현황	연도별, 시설유형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	연도별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연도별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연도별
	접근용이성	여성복지시설 이용률*	성별, 연령별
		단위 지역별 복지시설의 분포	연도별, 유형별
		여성인구 대비 여성복지시설 수	연도별, 유형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다) 구조통계군: 재정

재정통계는 여성복지에 투입되는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의 운영」이라는 1개의 세부관심차원에 ‘여성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액’, 그리고 ‘요보호여성 복지예산’, ‘여성 1인당 복지예산’ 등의 4개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5-27〉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3.재정	재정의 운영	여성복지 예산 및 비율	연도별 (여성복지예산/전체 복지예산×100)
		지방비 부담액	연도별
		시설복지예산 및 비율	연도별 (시설복지예산/전체 여성복지예산×100)
		여성 1인당 복지예산	연도별

3) 산출통계군(급여)

여성복지에서 「급여」라는 관심차원 아래 「급여실적」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여, 「급여실적」의 경우 ‘복지시설 현황’, ‘모자일시보호’, ‘자립보호실적’, ‘여성 직업훈련 실적’ 등 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의 경우 ‘복지시설보호수준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긴급보호의 적절성’, 그리고 ‘여성 1인당 급여액’ 등 4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28〉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급여	급여실적	모자복지(보호)시설	지역별 여성복지시설 이용 여성수
		모자일시보호시설 현황	연도별
		모자자립시설 현황	연도별
		생업자금 융자 이용 현황	연도별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현황	연도별
		여성 직업훈련 실적	연도별
	급여수준의 적절성	복지시설 보호의 적절성*	요보호 여성대비 시설이용자 수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성*	연도별, 서비스 종류 및 이용빈도
		긴급보호의 적절성*	성폭력 전화상담, 쉼터 이용률
		1인당 급여액	여성복지 지출

주: *는 주관적 통계

4) 성과통계군

성과통계군은 서비스와 생활만족 및 욕구로 구성하였는 바, 「성과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복지서비스」, 「생활만족」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률’, ‘복지시설 여성의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만족도’, ‘직업훈련 후 취업’ 등의 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만족 및 욕구」의 경우 ‘여가시간 활용실태’, ‘여성프로그램 이용의향’,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 등의 11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29〉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성과 통계	복지 서비스	복지시설서비스 이용률	연도별
		복지시설 여성의 퇴소후 자립 비율	연도별
		생업자금 융자대상의 자립비율	연도별
		미혼모 시설 이용후의 자립비율	연도별
		직업훈련 후 취업여성 비율	연도별
		복지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생활만족 및 욕구	여가시간 활용실태*	연도별
		생활만족도*	연도별
		출산관련 복지제도(육아휴직 등) 이용여부*	연도별
		여성 프로그램 이용의향*	연도별
		지역내 여성공무원 비율	연도별
		가사분담 비율*	연도별
		자녀양육 분담 비율*	연도별
		성차별에 대한 인식*	연도별
		지역내 희망하는 시설*	연도별
		탁아 등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	연도별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5) 통합통계군

통합통계군에는 여성의 특성상 아동복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경제·예산」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요보호아동과 여성’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 대비 여성복지 지출 규모’의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통계 수준에서는 여성 인구현황이 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에 관한 복지지원은 여성인구에 비해 크게 미미한 실정이다. 양성평등의 원칙이 강조되고 남녀간 성역할의 변화가 대두되면서 지방화 시대의 여성의 복지 의식과 태도에 관한 통계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5-30〉 여성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성분류(또는 산출방법)
통합통계	복지서비스	요보호 여성대비 복지 수급자 비율	연도별
	경제·예산	지역재정 대비 여성 복지지출 규모	연도별

4. 노인복지 부문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시책,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의 내용으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 보건의료, 취업, 주택, 교통, 여가·문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급속한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노인복지영역에서의 통계지표는 지역인구 중에서의 ‘노인인구 비중’과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측면에서, ‘노인인구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노인시

설에 대한 수요증가의 측면에서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시설수 및 입소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표 5-31〉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범 주	세 부 항 목	
배 경 통 계	인구·사회	
구 조 통 계	대 상	65세 이상 인구수, 복지급여 수급 노인, 수급가구 현황
	전 달	노인복지 종사인력 현황, 복지시설, 접근용이성
	재 정	노인복지 재정지출
산출통계(급여)	급여실적, 복지급여 수준	
성 과 통 계	고용, 여가, 주거, 삶의 질, 서비스 이용실적	
통 합 통 계	노인복지와 기타 복지체계와의 관련성	

가. 노인복지 통계체계의 구성

노인복지 통계체계를 앞서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조통계군에는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산출통계군에는 급여를, 성과통계군에는 고용, 여가, 삶의 질과 통합통계군에는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그리고 경제·예산의 측면으로 구성하였고(표 5-32 참조), 이들 5개 영역의 통계체계 구성은 7개의 관심차원과 14개의 세부관심차원, 83개의 개별통계로 구성되었다(표 5-33 참조).

〈표 5-32〉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부문	관심 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배경	인구 사회	인 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수급현황	국민기초수급, 경로연금 등
구조	대상	대상인구	65세 이상 인구 중 복지이용 인구
		시설 및 인력현황	노인복지 시설 및 담당인력의 현황 등
	전달	접근용이성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수, 서비스 인지도
		재정	재정의 운용
산출	급여	급여실적	경로연금, 경로우대제 등 직접적 현물급여 실적
		감면	이용료 감면 등
		급여수준의 적절성	각 급여수준의 충분성, 적절성
성과	성과	보건 및 복지서비스	보건 및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
		삶의 질	노인의 여가, 주거, 시설복지 등
통합	통합	사회보험	국민연금 수급 공적 소득보장 현황 등
		복지서비스	65세 이상 중 장애등록 현황 등
		경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비율

〈표 5-33〉 노인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부 문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별통계	주관적통계
배 경	1	2	5	-
구 조	3	4	30	-
대 상	1	1	16	-
전 달	1	2	9	3
재 정	1	1	5	-
산출(급여)	1	3	14	3
성 과	1	2	24	17
통 합	1	3	5	-
계	7	14	83	23

나. 영역별 통계군

1) 배경통계군

노인복지분야의 배경통계군은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수급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으로 대상자의 수급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는 「인구」에서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수와 노인인구 증가율로 구성되어 있고, 「수급」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수’, ‘경로연금 등 수급자’, ‘경로우대제 수급자’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34〉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인구 사회	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지역별 노인 인구
		노인인구 증가율	성별, 연령별 인구비 및 증가율
	수급	기초수급 노인 및 가구비율	기초수급 노인의 성·연령별 (수급률 = 수급인구/총 노인수×100)
		경로연금 수급자 수	경로연금 수급률
	경로우대제(노인교통비) 수급자 수	경로우대제(노인교통비) 수급률	

2) 구조통계군

가) 구조통계군: 대상

구조통계군 중 대상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1개의 관심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노인의 일반현황과 세부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서 일반현황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증가율’ 등이며, 세부현황에서는 ‘기초생보수급 노인비율’, ‘치매노인 비율’, ‘노인단독세대 비율’이며,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 ‘재가노인 및 시설 노인비율’ 등의 1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35〉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관심 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대상 인구	노인인구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기초수급 노인비율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전체 수급자×100, 연도별
		치매 노인 비율	연도별 치매노인 유병률
		노인 만성질환율	연도별, 만성질환별
		노인단독세대	노인단독세대/전체가구수, 노인가구수
		경로연금 수급 노인수	경로연금 수급 노인 비율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취업형태별)과 비경제활동 구분
		중사상의 지위	연도별
		노인의 교육수준	연도별, 연령별 교육수준
		ADL 제한 노인비율	연도별, 연령별
		IADL 제한 노인비율	연도별, 연령별
		노인교통사고율	연도별
		노인의 주된 소득원	연도별, 연령별 경제상태
		노인의 주거유형	주택소유 및 형태
		전체노인 대비 시설생활 노인 비율	연도별 시설노인 수/전체 노인

나) 구조통계군: 전달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전달」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시설 및 인력현황」과 「접근용이성」의 2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인력현황」의 경우 ‘노인복지생활시설

수', '노인복지 이용시설 수',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등의 6개 개별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 「접근용이성」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시설 이용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노인인구 대비 복지시설 분포' 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36〉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2.전달	시설 및 인력현황	노인복지 생활(주거)시설 수	연도별, 시설유형별
		노인복지 이용시설 수	연도별, 시설유형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연도별
		종사자 1인당 보호 노인 수	연도별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연도별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연도별, 시설유형별
	접근용이성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률*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비율	연도별, 시설별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분포	연도별, 시설유형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다) 구조통계군: 재정

재정통계는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재정의 운영」이라는 1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액', 그리고 '재가복지예산', '시설복지예산', '노인 1인당 복지예산' 등의 5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37〉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3.재정	재정의 운영	노인복지 예산 - 경로연금, 교통비 등	연도별, 종류별
		지방비 부담액	연도별
		시설노인 복지예산 비율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연도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	연도별

3) 산출통계군(급여)

노인복지에서 대상자에게 지원된 급여실적과 그 수준의 적절성은 노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줄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급여」라는 관심차원 아래 「급여실적」, 「감면 실적」,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3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실적」의 경우 ‘경로연금 지급현황’, ‘노인교통비 지급현황’, ‘기초수급노인 현황’ 등의 9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감면실적」의 경우 ‘철도 및 지하철 관련 요금감면현황’ 1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의 경우 ‘경로연금의 적절성’, ‘노인교통비의 적절성’, ‘복지서비스 적절성’, 그리고 ‘노인 1인당 급여액’ 등 4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38〉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경로연금 지급 현황	연도별 (차상위계층 노인)
		노인교통비 지급 현황	연도별, 성별
		기초생보수급 노인 비율	성별, 연도별, 기초수급노인 / 전체 노인
		노인 1천명당 주거복지시설 비율 - 양로원, 유료양로원, 실비양로원	성별, 연도별, 복지시설 이용노인 / 전체 노인
급여 실적		노인 1천명당 노인의료시설 비율 -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성별, 연도별 이용자 비율
		노인 1천명당 여가복지시설 비율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성별, 연도별 이용자 비율
급여		노인 1천명당 재가복지시설 비율 -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성별, 연도별 이용자 비율
		무료 급식 이용자	성별, 연도별 이용자 비율
		노인 건강진단률	성별, 연도별 검진자 비율
감면 실적		철도, 지하철 등 이용료감면 현황	종류별, 성별, 연도별
		경로연금의 적절성*	경로연금의 생활비 비중
급여 수준의 적절성		노인교통비의 적절성*	교통비 비중, 사용처
		복지서비스 적절성*	복지서비스 수급 비율
		1인당 급여액	연령별, 성별

주: *는 주관적 통계

4) 성과통계군

성과통계군은 노인복지의 주관심 영역으로 보건 및 복지와 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므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계층이라는 점과 함께 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영위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보건 및 복지서비스」, 「생활만족」이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 ‘재가복지 이용노인 비율’, ‘복지시설 이용노인 비율’,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의 총 9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만족」의 경우 ‘노인단독세대 비율’, ‘취업노인 비율’,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생활비 마련방법’, ‘희망하는 주거유형’ 등의 15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39〉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보건 및 복지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율	연도별 진단노인/전체노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령별, 성별
		재가복지 이용노인 비율	가정봉사이용노인/전체노인
		복지시설 이용노인 비율	시설이용노인/전체노인
		복지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지역의 복지혜택에 대한 욕구*	연도별, 성별
		복지시설 이용희망 비율*	연도별, 성별
		치매, 외상노인 비율	치매, 외상노인/전체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비율	기초수급노인/전체노인
성과 통계	삶의 질	노인단독세대 비율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률(1천명당)	연도별
		평생교육 참여율*	연도별, 성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연도별, 성별
		노인 PC 이용률*	연도별, 성별
		노인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성별
		희망하는 주거유형*	연도별, 성별
		여가시간 활용*	연도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연도별, 성별
		장래 살고 싶은 곳*	연도별, 성별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연도별, 성별
		노인여가활동 참여율*	연도별, 성별
		정당활동 참여율*	연도별, 성별
		시민단체 참여율*	연도별, 성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연도별, 성별

주: *는 주관적 통계

5) 통합통계군

통합통계군에는 노인복지의 특성상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및 예산과 연관지어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그리고 「경제·예산」이라는 3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과 ‘공적소득보장제도 제외 노인비율’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역복지시설 대비 노인시설 비율’과 ‘노인 중 장애인등록 비율’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 규모’의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통계 수준에서는 노인인구 현황이 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 방식의 변화,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점, 노인복지시설의 선호 등을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문화·여가활동, 복지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5-40〉 노인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성분류(또는 산출방법)
통합통계	사회보험	노인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	연도별
		공적소득보장 제외 노인 비율	연도별
	복지서비스	지역복지시설 대비 노인시설 비율	연도별
		노인중 장애인등록 비율	연도별
	경제·예산	지역재정 대비 노인 복지지출 규모	연도별

5. 장애인복지 부문

장애인복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가족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을 모든 생

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원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정상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범주의 확대로 1999년에 내부장애와 발달장애 등이 추가되었고 2003년부터는 간질, 안면장애, 간, 호흡기, 장루장애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15종의 장애가 법정 장애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서는 직·간접적 소득지원,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출현율과 복지욕구 등 장애인의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는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인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5-41〉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틀

범 주	세 부 항 목	
배 경 통 계	인구·사회	
구 조 통 계	대 상	추정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수, 복지급여 수급장애인, 수급가구 현황
	전 달	장애인복지인력 현황, 복지시설, 접근용이성
	재 정	장애인복지 재정지출
산 출 통 계(급여)	급여실적, 복지급여 수준	
성 과 통 계	재활, 사회통합 및 자립	
통 합 통 계	장애인복지와 기타 복지체계와의 관련성	

가. 장애인복지 통계체계의 구성

장애인복지 통계체계 역시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조통계군에는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산출통계군에는 급여를, 성과통계군에는 자립과 사회통합 효과를, 통합통계군에는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 그리고 경제·예산의 측면으로 구성하였다(표 5-42 참조). 이들 5개 영역의 통계체계 구성은 7개의 관심차원과 14개의 세부관심차원, 76개의 개별통계로 구성되었다(표 5-43 참조).

〈표 5-42〉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성

부문	관심 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배경	인구 사회	인 구	추정장애인과 등록장애인
		수급현황	국민기초수급, 장애수당 등
구조	대상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의 현황
		시설 및 인력현황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담당인력의 현황 등
		접근용이성	장애인가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수
		재정	재정의 운용
산출	급여	직접급여실적	장애수당 등 직접적 현물급여 실적
		간접급여실적	간접적 소득지원(감면) 실적 등
		급여수준의 적절성	각 급여수준의 적절성
성과	성과	재활	의료, 교육, 직업재활 수급 장애인 현황
		자립 및 사회통합	취업현황, 통합교육, 편의시설 등
		사회보험	산재, 국민연금 등과의 관계
통합	통합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시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경제·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표 5-43〉 장애인복지 사업의 통계체계 현황

부 문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별통계	주관적통계
배 경	1	2	4	-
구 조	3	4	27	-
대 상	1	1	13	-
전 달	1	2	9	2
재 정	1	1	5	-
산출(급여)	1	3	15	3
성 과	1	2	24	12
통 합	1	3	6	-
계	7	14	76	17

나. 영역별 통계군

1) 배경통계군

지역통계는 특정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 지역의 배경인 사회, 경제, 그리고 인구 등의 상태를 포괄하고 있다. 배경통계군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수급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으로 대상자의 수급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는 「인구」에서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추정장애인 수와 등록장애인 수의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급」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2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44〉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배경통계군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인구사회	인구	추정장애인 수	지역별 추정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수	장애종류별 인원, 증가율
	수급	기초수급 장애인 및 가구수	기초수급 장애인, 성별·연령별 (수급률 = 수급인구/총장애인 수×100)
		장애수당 등 수급자 수	장애수당, 복지서비스 수급율

2) 구조통계군

구조통계군은 대상, 전달, 그리고 재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는 산출통계군에서 다루고자 한다.

가) 구조통계군: 대상

구조통계군 중 대상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이라는 1개의 관심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일반현황과 세부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관심차원으로는 「등록장애인」 1개 차원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의 일반현황(장애유형별, 연령대, 성별, 등급별 현황 등)’, ‘등록장애인의 일반현황(장애유형별, 연령대, 성별, 등급별 현황 등)’, ‘등록장애인 비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수급 장애인 비율’ 등의 13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45〉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대상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1.대상 (할당)	등록 장애인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구 비율(출현율) 및 증가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비율	등록장애인수/전체 인구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기초수급 장애인 비율	연도별 기초수급 장애인 비율
		장애인의 ADL 제한 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IADL 제한 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원인별 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구직활동 장애인 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PC 이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전체 장애인 대비 시설장애인 비율	연도별, 장애유형별

나) 구조통계군: 전달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전달」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시설 및 인력현황」과 「접근용이성」의 2개의 세부관심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인력현황」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수’, ‘종사자 1인당 보호 장애인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등의 6개 개별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 「접근용이성」의 경우 ‘장애인복지 시설 이용률’, ‘재가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장애인구 대비 복지시설 분포’의 3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5-46〉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전달

관심차원	세 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2. 전달	시설 및 인력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수	연도별
		장애인 시설당 평균 장애인 수 (시설수용률)	연도별, 시설유형별
		시설종사자 1인당 보호 장애인 수	연도별, 시설유형별
		장애인 1천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비율	연도별, 시설유형별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연도별
	접근용이성	종사자의 업무량 및 만족도*	연도별, 시설유형별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이용률	연도별, 시설유형별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률	연도별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분포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다) 구조통계군: 재정

재정통계는 장애인복지에 투입되는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이라는 관심차원 아래 「재정의 운영」이라는 1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액’, 그리고 ‘재가복지예산’, ‘시설복지예산’, ‘등록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등의 5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47〉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구조통계군 중 재정

관심차원	세부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또는 산출방법)
3.재정	재정의 운영	장애인복지 예산 - 장애수당 - 생업자금 융자실적 - 교육비 지원 실적 - 의료비 지원 실적	연도별, 사업별
		지방비 부담액	연도별
		전체예산 대비 재가복지예산	연도별
		전체예산 대비 시설복지예산	연도별
		등록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연도별

3) 산출통계군(급여)

장애인복지에서 대상자에게 지출된 급여실적과 그 수준의 적절성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급여」라는 관심차원 아래 「직접급여실적」, 「간접급여 실적」,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3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급여 실적」의 경우 ‘등록장애인 현황’, ‘기초수급장애인 현황’의 7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간접급여실적」의 경우 ‘세금감면 이용률’, ‘이용료 감면이용률’, ‘LPG 지원 장애인 비율’ 등 3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절성」의 경우 ‘장애수당의 적절성’, ‘의료급여 1인당 급여액’, ‘의료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교육비 지원의 적절성’ 등 4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48〉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산출통계군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구조통계군 대상」에 포함
		기초수급 장애인 현황	성별, 연도별, 기초수급장애인 / 등록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장애인 비율	연도별, 시설유형별
직접급여 실적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비율	연도별, 시설유형별
		자녀교육비 지원 수급 비율	연도별
		자립자금 융자수급 비율	연도별
급여		의료비 지원 수급 비율	연도별
		재활보조기구 수급 비율	연도별
		세금 감면 장애인 비율 - 잔화료, 전기료 등	연도별
간접급여 실적		LPG 지원 장애인 비율	연도별
		이용료 감면 장애인 비율 - 철도, 지하철 등	연도별
급여 수준의 적절성		장애수당의 적절성*	생계비중 장애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의료비 지원의 적절성*	연도별
		자녀교육비 지원의 현실성*	연도별
		1인당 복지급여액	연도별

주: *는 주관적 통계

4) 성과통계군

성과통계군은 장애인복지 대상자들의 재활과 자립 및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군이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통계」라는 관심차원 아래 「재활」, 「자립 및 통합」라는 2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활」의 경우 ‘재활서비스 이용자 규모’, ‘재활서비스 실

적', 각 영역별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7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립과 통합」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 '취업희망 장애인', '통합교육 실적',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지역에서 희망하는 복지혜택' 등의 17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49〉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성과통계군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성과 통계	재활	재활서비스 실적	연도별, 재활서비스별
		의료재활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교육재활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연도별
		재활보조기구(보장구) 소지율	연도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율 (저소득 대상)	연도별
		장애인 등록률	연도별
	자립 및 통합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장애인 고용인원/ 50인 이상 업체의 의무고용인원×100
		장애인 취업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취업알선율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연도별
		장애인 중 복지시설 생활자 비율	연도별
		여가활동 참여율*	연도별, 성별
		사회활동 참여율 (자원봉사, 단체활동 참여)	연도별, 성별
		사회활동 만족도*	연도별, 성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고용, 직장, 학교, 가정 등	연도별, 성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연도별		
희망하는 복지혜택*	연도별, 장애유형별 욕구		
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	- 공공시설	연도별, 대상건물별	
	- 근린생활시설		
	- 교육시설	연도별, 대상건물별	
	- 의료시설		
	통합교육 실적	연도별, 통합학급 수	
	희망하는 재활치료 장소*	연도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연도별	
여성장애인 사회통합 실적	연도별 교육수준, 취업률		

주: *는 주관적 통계

5) 통합통계군

통합통계군은 장애인복지제도가 사회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와 관련되어 있고,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도 대상자의 중복과 급여의 조정에 관한 내용 파악을 위해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그리고 「경제·예산」이라는 3개의 세부관심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경우 ‘지역장애인 대비 공적보험 중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의 개별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역복지시설 대비 장애인시설 비율’과 ‘장애인 중 65세 이상자 비율’의 2개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 대비 장애인공공지출 규모’의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통계 수준에서는 등록장애인 현황이 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현재보다는 향후 장애범주 확대, 인구고령화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개별 지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관계가 주 관심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예산 차원에 있어서는 지역차원에서 장애인 부문 공공지출에 대한 비중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표 5-50〉 장애인복지의 통계체계: 통합통계군

관심차원	세부 관심차원	개 별 통 계	특 성 분 류 (또는 산출방법)
통합 통계	사회보험	지역 장애인 대비 산재 장애인비율	산재장애인/지역장애인연도별
		지역 장애인 대비 공적보험(장애급여) 수급장애인 비율	연도별
		공적소득보장 제외(사각지대) 규모	연도별
	복지 서비스	지역복지시설 대비 장애인시설 비율	연도별
		장애인중 65세 이상자 비율 (노인복지 대상 비율)	연도별
	경제·예산	지역재정 대비 장애인 공공지출 규모	연도별

제 6 장 지역복지통계의 효율적 생산방안

통계생산은 조사의 실시, 보고제도의 활용 또는 기존 통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역통계의 생산은 전국통계에 비하여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라 할지라도 신뢰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조사해야하는 등 용이한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통계제도의 개선 및 예산확보, 조사 및 보고통계의 개선, 그리고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1. 중앙정부의 역할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지만 국가단위의 전반적 통계분야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복지통계 분야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통계생산은 중앙정부의 통계생산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통계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즉, 지방정부의 복지통계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계생산 계획의 정보공유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

다. 중앙과 지방은 통계생산에 있어 각각 별개의 분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설계, 조사실시, 분석 그리고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호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상호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같은 통계 항목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하여 생산이 된다면 통계로서의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기준에, 같은 생산방법으로 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조사가 실시되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과 상호비용 절감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계전문가 양성 및 통계생산기법의 지원

최근 들어 지방정부에서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관련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 및 전문인력의 부재와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통계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통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직무교육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교육이수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소지역통계생산기법과 각종 자료의 활용 기법 등을 중앙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복지통계생산의 표준화 방안 마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조사

실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사표 개발 및 분석이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조사결과의 활용이 해당지역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후 조사에서도 표준화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조사의 비교 가능성이 높도록 표준화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통계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연계하여 통계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 통계생산실태 파악

우선 지역의 복지통계생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후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장 필요한 통계와 정책의 수행과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통계가 무엇이며, 이 가운데 어떤 통계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생산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가의 생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통계생산 조직 및 인력의 확보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면 지역이나 중앙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필요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갖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에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단위의 통계부서는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통계담

당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점차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강조되면서 통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걸 맞는 통계담당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의 확보는 수적인 충원에서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전문조사원의 원활한 확보는 조사실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원 DB 구축과 함께 조사원의 효율적인 면접조사방법 등의 개발 등 조사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조사능력향상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원의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 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인 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전문성 제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국의 통계가 아닌 지역의 통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효과도 그 만큼 커질 수 있다. 과거처럼 전국통계를 사용하거나 감에 의한 대략적인 수치를 사용한다면 뒤 떨어진 행정으로 기대치 이하의 목표달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성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복지정보 DB구축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복지통계에 대해 DB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그리고 기초자료 등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개괄적인 복지정보는 최근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한 국가복지포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획된 국가복지포털을 활용하기까지는 자료의 입력과 검증 등의 과

정 때문에 상당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앙에서 일선까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DB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그 이외의 조사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복지통계자료를 함께 관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많은 필요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및 주민참여 고취

통계생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이 있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모든 통계가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통계를 생산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질 높은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기관의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제공은 행정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사환경의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현재 통계청 지방사무소에서는 통계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통계생산 보다는 국가통계에 더 주력하고 있다. 통계생산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이 미흡한 지방에서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역할이 미흡한 것은 상호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고, 지방사무소로서 통계청 본부에서 계획된 조사 등 국가통계생산을 위한 자료수집에 국한된 활동을 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통계생산을 기반으로 국가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 곳에서 통계생산을 관장할 경우 각 분야별 깊이 있는 통계생산보다는 다양한 생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의 직접 생산보다는 지도감독을 통한 원활한 통계생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효율적인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직 및 인력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제도개선 및 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위해 관련법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은 분산형으로 되어 있어 기관별로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청에서는 이를 조정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가 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은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소관통계를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통계생산체제는 지금까지 지방에서 통계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형태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이 용이한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실시에 따른 필요통계를 중앙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의 보건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의 경우 국가단위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도 있으나 자체적인 조사로 얻는 통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의 보완 및 검토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조사를 실시하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조사자료의 획득이 개인정보보호나 주민의 호응저조 등으로 점차 조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부문이다.

지자체의 통계생산은 중앙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조사표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맞는 조사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조사나 중앙과 협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에서는 지방사무소와 함께 국가 통계 전반의 원활한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동시에 통계전문 인력의 양성, 통계생산기법의 개발, 지방통계생산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의 통계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예산의 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조사의 확대실시를 모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의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통계생산 시 지역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설계를 하는 방안과 지역과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조사 및 보고통계의 개선

본 절에서는 조사통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어서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보고통계를 여러 차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복지정책DB’의 검토와 보완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내용의 표준화와 지역조사방법론 연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실시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조사설계 부분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조사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방법 등 조사설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 및 방법은 조사결과 활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떤 항목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산출방법과 중요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방법과 함께 각 항목의 정의 및 산출기준 등 조사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본장 4절 참조).

한 나라의 국가통계 생산이 각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는 국가통계의 생산이 곧 지역통계의 생산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통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효율적 생산방법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최근 통계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소지역통계생산기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통계생산기법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2. 조사통계생산의 우선순위 결정

조사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통계 중 우선적으로 생산할 통계가 무엇인지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통계생산의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효율적인 정책의 수행과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시 또는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생산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분야에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가 무엇이며 선택통계는 무엇인지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조사확대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통계생산을 위하여 국가통계의 생산방법과 기준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통계생산은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조사내용과 방법을 중앙과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장의 4절에 제시된 복지분야의 기본통계와 선택통계에 대해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존조사에서 생산이 가능한 통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지역통계가 생산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의 한계로 지역통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석기법의 미흡으로 생산이 되지 못한 경우, 또한 관심부재로 생산이 가능하나 미처 생산되지 못한 통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하되 생산의 확장 단계는 우선 중앙에서 기존규모의 조사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통계, 조사의 규모 확대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생산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가능한 중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항상 중앙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단위는 우선 시·도 단위의 통계생산방안이 검토되고 다음은 시·군·구 단위의 통계생산방안을 검토하되 시도의 필요통계가 해결된 다음 시군구 통계생산을 위한 추진이 아니라 가능한 통계에 대해서는 동시에 검토되면서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정책DB 활용 강화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와 업무보고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통계를 받을 때에는 복지정책DB를 활용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정책DB는 지역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만 활용되고 풍부한 기초자료들이 사장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보고통계를 위해 별도 서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중 업무가 발생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그 동안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자료의 미입력 또는 부정확하게 입력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가 자료를 분석 및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및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때 다양한 보고통계의 생산이 용이해 질 것이다. 나아가 신규공무원과 시스템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통계에 대한 관심도 자아내야 한다.

5. 입력자료의 검토·보완

가. 입력자료의 신뢰성(유효성) 검토 및 개선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력자료의 가능범위나 로직을 미리 설정하여 돕으로써 입력자가 자료를 범위 밖의 것 또는 입력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거나, 나아가 틀린 로직자료가 입력되는 경우, 확인 또는 검토요망의 신호가 작동되도록 입력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DB에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오류로 초고령자(110세 이상)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 13단위 중 성별판단 번호인 뒷 번호의 첫째 단위(7번째 단위)가 1800년대와 1900년대에 따라 성별구분번호가 다르다(1800년대: 남(9), 여(0), 1900년대: 남(1), 여(2), 2000년대: 남(3), 여(4)). 따라서 입력오류가 발생하면 연령계산에 100이란 수치가 추가되어 100세 이상의 수급자로 잘못 계산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13단위 중 뒷 번호 첫째 단위(7번째 단위)를 출생연대와 관련하여 자동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예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개보험이 실시되고 있어 의료급여(1,2종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 DB’를 분석해보면, 모름(분류불능) 항목의 선택이 많이 발견된다. 이의 원인은 입력담당자가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는 재정과 관련되어 정확히 입력 하지만 그 외는 다소 입력에 소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담당자가 ‘의료급여 구분’에 대한 combo box의 목록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입·출력구조의 보완 : combo box의 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독립항목들이 조사되어야만 통계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자들 중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combo box내용에 없는 것들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보장구분’의

combo box에는 ‘기초생활’,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등 7개가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건강보험소액납부자’ 등의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가구) 유형 중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일본위안부 등 세부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6. 지속적인 feedback 시스템의 운영

중앙정부는 복지정책DB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자료가 발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수정을 요구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함과 아울러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미활용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동 시스템을 활용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신규공무원과 시스템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Online, Offline)도 겸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

본 절에서는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생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개별통계의 선정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해야 할 통계 및 지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고 동시에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역복지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양적도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해야 할 통계 및 지표는 지역주민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역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로 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준 파악

지방자치제의 점진적 성숙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변화에 따른 현황파악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정책평가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상태와 지역복지의 정도를 측정하고 정책의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의 재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요구된다.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통계와 지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활용

지방자치제 실시는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업 법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수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중 통계관련 다음과 같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평가, 그리고 환류 등에 필요한 통계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 현재 복지선진국의 통계반영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가의 지역복지통계 생산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환경여건과 앞으로 복지선진국가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

통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고령사회의 대책, 장애인들의 사회봉사활동참여정도, 자원봉사 및 NPO활동, 그리고 지역내기업의 근로복지실태조사 등의 통계가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통계의 기본 또는 선택의 판단관점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면서 그 통계가 정책수립과 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계는 ‘기본’으로, 또한 통계가 있으면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되고, 없으면 불편할 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개발 현황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의 개발현황은 7개 분야에 203개의 개별통계를 제시하고 있다(표 6-1 참조). 부문별 개별통계의 분포를 보면, 노인과 장애인이 41개(20.1%), 아동 38개(18.7%), 공공부조 31개(15.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부문을 제시한 본문 제5장의 체계개발과 본 절의 7개 분야를 비교해 보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절의 7개 부문 중 2개 부문(배경, 보육)이 제5장의 5개의 유사부문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절의 203개의 개별통계 중 제5장 제4절 체계개발에 제시된 통계와는 121개가 일치한다. 다만, 두 절의 유사 및 관련통계까지 고려하면 약 180여개가 일치된다.

또한 통계생산방법별로 볼 때 보고통계가 110개, 조사통계가 99개로, 통계필요정도별로 볼 때 기본통계가 91개, 선택통계가 112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6-1〉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총괄

	부 문	개별통계	통계생산 방법		지역 통계 우 선 순 위	
			보고	조사	기본	선택
	계	203	110	99	91	112
	배경(인구·가족)	12	9	6	6	6
1	배경(사회복지일반)	12	10	2	5	7
	배경(사회보험)	5	5	-	5	-
2	공공부조	31	31	-	24	8
3	아 동	38	9	28	15	22
4	여 성	10	7	3	3	7
5	노 인	41	11	32	16	25
6	장애인	41	16	27	13	28
7	보 육	13	12	1	4	9

〈표 6-2〉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인구·가족)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인구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인구증가 또는 감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의 합. - 자연증가율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총인구(통상적으로 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 자연증가율=[출생-사망]/연앙인구×1,000 =조출생률 - 조사망률 - 사회적 증가율은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를 연앙인구로 나눈 것을 1,000분비 한 것임. - 사회적증가율=[(전입인구-전출인구)/연앙인구]×1,000 - 인구성장률=자연증가율+사회적 증가율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연앙인구]×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인구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 수 - 특정지역 인구의 남녀 구성비를 보여줌 - 인구센서스 자료, 주민등록인구 등에 의하여 작성가능 - 성비=(특정지역, 특정년도의 남자인구/특정지역, 특정년도의 여자인구)×100 	○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노령화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동 지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인구의 노령화’라 하며, ‘인구의 연소화’에 대한 상대적 개념 - 인구센서스 자료, 주민등록인구 등에 의하여 작성가능 - 노령화지수=[노령층인구(65세 이상) / 연소층인구(0-14세)]×100 	○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인구 부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 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을 나타내는 지표. - 일반적으로 부양비가 증가하면 저축능 력이 감소되고 부양비가 감소하면 저 축능력이 향상 - 인구센서스 자료, 주민등록인구 등에 의하여 작성가능 - 인구부양비=[유년인구(0~14세인구)+노 인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 세)]×100 	○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가구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 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의미,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 - 일반가구: 통상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생 활을 같이하는 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 연가구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 을 같이 하는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들을 의미 - 집단가구: 기숙사, 교아원, 양노원, 모 자원, 특수병원 등의 사회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집단시설가구와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 한 거처 내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비혈 연 6인 이상 가구 의미. - 동 지표는 최근 가족형성과 가족해체 양상이 급변하고 있어 장래의 추이자 료로 활용. 이는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 하여 작성가능. - 가구증가율=(해당연도 가구수-기준년 도 일반가구수)/기준년도의 일반가구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가구당 승용 자가용 보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특수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별로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가능 - 본 지표에서는 승용차만을 포함하여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것만을 지표로 구성 - 자동차 보유율=(승용자동차 등록대수/일반가구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전체 예산대비 가족 복지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예산은 가족과 관련 사업 및 모부자복지사업을 포함. - 가족복지예산비율=(가족복지예산/전체 예산)×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자료
한가구당 가족 복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구당 가족복지예산 =가족복지관련예산/일반가구수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및 내부자료
가족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전공자 혹은 가족 복지 관련 전공자의 비율 - 가족복지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가족(복지)관련 전공자/가족복지 담당공무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조혼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 혼인과 이혼의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연보 사용. - 조혼인율=(특정연도 1년간의 혼인건수/특정연도의 연앙인구)×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조이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 혼인과 이혼의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연보를 사용. - 조이혼율=(특정연도 1년간의 이혼건수/특정연도의 연앙인구)×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가구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실태조사 실시는 지자체의 선택. - 가구의 특성 - 가구소득소비 - 생활수준 - 가구원의 취업여부 및 직종 등 - 미취업 이유 - 가정생활의 어려운 점 - 지역사회 활동환경 등 - 지역사회 이용시설 이용 또는 인지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표 6-3〉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사회복지일반)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사회복지예산 / 전체예산)×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자료
1인당 사회복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 1인당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자치단체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내부자료
사회복지 생활시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결핵 및 나장애 시설)의 수 의미.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결핵 및 나장애 시설)의 수용인원수 의미. -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생활인원수=(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원수/ 총 인구수)×100,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수	- 사회복지 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 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결핵 및 나장애 시설)의 종사자 수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사회 복지관수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수를 의미.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 이용자수	- 시설유형별 사회복지관 이용자수 의미. -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 이용자수= (사회복지관이용자수/총인구 수)×100,000	○		○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내부자료
늘려야할 복지시설	- 복지분야별 복지시설의 증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내는 지표. - 사회복지일반, 아동, 청소년, 노인, 여 성, 기타 등의 분야별 복지시설의 증 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측정.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자원봉사 단체수	- 지역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단체수 의미.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인구 10만명당 자원 봉사자수	- 각 지역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 의미. -인구 10만명당 자원봉사자수=(자원봉사 자수/ 총인구수)×100,000	○		○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내부자료
자원봉사 참여율	- 지자체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의미 - 자원봉사참여율=(자원봉사를 경험한 인구수/ 전체인구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사회복지 자원조사	- 동 조사 실시는 지자체의 선택. · 사회공헌활동의 단체 및 기업의 실태 ·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능력과 복지맨 파워 파악 · 자원봉사 및 NPO 활동 ·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표 6-4〉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배경(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국민연금 가입자수	- 국민연금 가입형태별(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수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수	○		○		
	- 국민연금 가입자의 업종별 가입자수	○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수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수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국민연금 급여실적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별(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지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 국민연금 급여실적=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별 지급 금액과 수급자 수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직장건강보험, 공교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나타내는 지표. -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수(피보험자+피부양자)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국가보훈 (사회보상)	- 국가보훈대상(애국지사, 순국·애국유족, 전투·공무상사상군경,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자, 4·19유족,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반공귀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유족, 지원대상자, 전역하사관, 월남귀순자)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표 6-5〉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공공부조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수급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수+일반수급자수	○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수급률*	- 총인구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지자체 총인구)×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생애 주기별 수급자수*	- 생애주기별 시설수급자수 •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 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 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장애인 수급자수*	- 장애인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장애인 수급률*	-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비율 - (장애인 수급자수/ 등록 장애인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노인 수급률*	- 65세 이상 주민등록 노인 중 수급자 비율 - (65세 이상 수급자수/ 65세 이상 주민 등록 노인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수급자 가구수*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 하의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의 가구 (세대)단위로 보장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일반 수급자수*	- 수급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일반 수급자 비율*	- 전체 수급자중 일반수급자 비율 - (일반수급자수/ 전체 수급자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수급대상 가구의 자가 소유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 - (자가 소유가구수/ 전체수급대상가구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자활대상자 대비 자활후견 기관의수*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대비 자활후견기관의 수 - (자활후견기관의 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전체예산 대비 공공부조 예산*	- 전체 예산 중 공공부조 관련예산의 비율 • 공공부조예산은 국고보조 및 지방분 담금 예산의 합. • 공공부조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예 산과 자활관련 예산의 합. - (공공부조 관련 예산/ 지자체전체예 산)×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서
저소득층 1가구당 공공부조 예산	- 저소득층 1가구당 공공부조 예산의 비율 •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포함한 개념 - (공공부조 관련 예산/전체 저소득층 가구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서
청소년 수급률	- 19세 이하 주민등록 청소년 중 수급 자 비율 - (19세 이하 수급자수/ 19세 이하 주민 등록 청소년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시설 수급자수	- 시설에서 수용·보호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시설 수급자 비율	- 전체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비율 - (시설수급자수/ 전체 수급자수)×100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자활관련 전담부서 설치여부	- 자활부문을 담당하는 전담 행정부서 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 행정부서는 적어도 팀 또는 계(係) 단위이어야 함. 다른 업무와 혼합된 행정부서가 있거나 담당자 1인만 있 는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봄.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자활후견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전 공자의 비율 - (사회복지전공자 수/ 자활후견기관 종 사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자활사업 대상자대비 자활후견 기관 종사자수	- 자활사업 대상자 대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 자활사업대 상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	-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주거급여 수급자수*	- 주거급여 수급자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합계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교육급여 수급자수*	- 교육급여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교육급여 총액*	- 교육급여 총액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해산급여 수급자수*	- 해산급여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장제급여 수급자수*	- 장제급여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의료급여 수급자수*	- 의료급여 수급자수	○		○		국민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자활급여 수급자수*	- 자활급여 수급자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생계급여 수급가구수 *	- 생계급여 수급가구수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생계급여 수급자수*	- 생계급여 수급자수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합계	○		○		시군구복지 행정시스템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업율*	- 자활사업 참여자 대비 취업·창업자의 비율 - (취업·창업자수/ 자활사업 참가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자활사업 참가자 수/자활사업 대상자)×100	○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주 :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표 6-6〉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아동분야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아동인구*	- 18세 미만 아동 인구		○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아동인구 비율*	- 총 인구 중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 - (18세 미만 아동 인구/총인구)×100		○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아동복지 수용시설 보호 아동수*	- 아동복지 수용시설 종류별 18세 미만 보호아동수 ·시설종류: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교호시설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입양 아동수*	- 0~11세의 국내 입양 아동 수 및 국외 입양 아동수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부모에 의한 학대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유형별 비율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상의 전체 학대 - (부모의 학대유형별 18세 미만 학대 경험 아동수/ 18세 미만 아동수)×100 		○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 문화원, 『아동발달백서』 2001, 청소년보호 위원회,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1999
장애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세의 연령계급 및 장애 종류별 아동수 ·연령계급: 6~11세, 12~17세, 6~17세 ·장애종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전체 장애 		○		○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시군구복지행정 시스템
장애아동 출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세의 연령계급별로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 중 장애종류별 아동의 비율 ·연령: 6~11세, 12~17세, 6~17세 ·장애종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모든 장애 - (해당 연령계급의 장애종류별 아동수/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수)×100 		○		○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안전사고 사상 아동비율*	- 18세 미만 아동의 연령계급별로 안전 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유형별 아동의 비율 ·연령계급: 0~5세, 6~11세, 12~17세, 6~17세 ·사고유형: 교통사고, 추락사고, 익수사 고, 약물 중독, 기타 - (해당 연령계급의 안전사고 유형별 사 상 아동수/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 수)×100,000		○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부모이혼 아동수*	-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이혼한 아 동수		○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보』
부모이혼 아동의 비율*	-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이혼한 아 동의 비율 - (부모 이혼 당시 18세 미만 아동수/ 18 세 미만 아동수)×100		○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보』
아동인구 만명당 아동복지 이용시설 설치율*	-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2조에 따라 18 세 미만을 말하며 아동복지이용시설은 아동상담소, 전용시설, 아동복지관등을 포함. - (아동복지이용시설수/ 아동수)×10,000	○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자료
보육시설 이용률*	-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원 - (0~5세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수 / 0~5세 아동수)×100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아동복지 관련 담당공무원 전문성*	- 아동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사 회복지전공자 혹은 아동관련 전공자 비율 - (아동(복지)관련 전공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수)×100	○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청소년복지 관련 담당공무원 전문성	- 청소년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전공자 혹은 청소년관련 전공 자 비율 - (청소년(복지)관련 전공자/ 청소년복지 담당 공무원수)×100	○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전체예산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 전체 예산 중 아동·청소년예산의 비중 - (아동·청소년예산/ 전체예산)×100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의 수혜율 - 아동복지예산/ 아동인구수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청소년 1인당 청소년 복지예산	- 청소년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의 비율 ·연령: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은 9세~24세 이하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0~18세(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음). - 청소년복지예산/ 청소년수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및 통계연보
여가시간 이용방법*	- 15~17세 아동의 여가시간 이용 방법별 비율 ·여가시간 이용방법: 감상, 관람, TV시청, PC관련 놀이, 스포츠, 여행, 친구 관련, 가족과 함께, 잠일, 휴식 수면, 기타 - (15~17세의 여가시간 이용방법별 아동수/ 15~17세 아동수)×100		○		○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2000)
취학률*	- 6~17세 아동의 연령계급별로 해당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연령계급: 6~11세(초등학교),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 (해당 연령계급의 교육과정 참여 학생수/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수)×100		○		○	교육인적 자원부·한국 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취학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5세 아동 중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이용 중인 비율 -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5세 아동수 / 5세 아동수)×100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연보』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연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세 재학생이 학교주변이나 교내에서 폭력 유형별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 ·폭력 유형: 협박, 물리적 폭력, 물품 빼앗기, 집단 따돌림, 이상의 모든 폭력 - (12~17세의 학교 폭력을 경험한 폭력 유형별 학생수/ 12~17세 학생수)×100 		○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집중 종합실태조사』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폭력실태조사』 2001
학업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세 재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정도별 비율 ·스트레스 정도: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은 편임, 거의 없음 - (12~17세의 학업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별 학생수/ 12~17세 재학생 수)×100 		○	○		한국아동학회 ·한솔 교육문화원 『아동 발달백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국민건강 ·영양조사』
도서관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7세 학생의 연간 학교 외의 도서관을 이용해 본 비율 - (15~17세의 학교 외의 도서관을 이용해 본 학생수/ 15~17세 학생수)×100 		○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문화예술 통계』
인터넷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세 아동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 - (12~17세의 인터넷 이용 아동수/ 12~17세 아동수)×100 		○	○		통계청 『정보화실태 조사보고서』 2002.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음주 경험률*	- 12~17세 아동의 연령계급별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비율 ·연령계급: 12~14세, 15~17세, 12~17세 - (해당 연령계급의 음주 경험 아동수/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수)×100		○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조사』
흡연 경험률*	- 12~17세 아동의 연령계급별로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비율 ·연령계급: 12~14세, 15~17세, 12~17세 - (해당 연령계급의 흡연 경험 아동수/ 해당 연령계급의 아동수)×100		○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조사』
아동상담소 이용자 만족도	- 아동상담소를 이용하는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의 만족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조사대상자 중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라고 응답한자의 비율로 나타냄 -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응답한자/ 조사대상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특수교육 대상 아동 취학률	- 6~17세의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의 비율 - (특수교육기관 재학 6~17세 아동수/ 6~17세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수)×100		○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연보』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	- 15~17세 아동의 연간 공연장 및 전시장 유형별 입장경험률 - 15~17세 아동의 연간 1인당 평균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횟수 ·공연 및 전시장 유형: 음악, 연극, 영화, 운동경기, 각종 전시회, 이상의 모든 유형 - (15~17세의 공연 및 전시 유형별 관람 경험 아동수/ 15세~17세 아동수)×100 - (15~17세의 공연 및 전시 유형별 관람 경험 아동의 총 관람횟수/ 15세~17세 아동수)×100		○		○	한국아동학회 ·한솔문화 연구원 『아동발달백서』, 2001 통계청 『2000년 사회 통계조사 보고서』 및 『한국의 사회지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예술통계』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인 취학전 아동의 모의 취업여부 및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기관)별 0~5세 아동 비율 ·제공자: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혈연, 비혈연 - (모의 취업여부 및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별 0~5세 아동수/ 0~5세 아동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 조사 보고』 통계청 『1998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및 『한국의 사회지표』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비율 - (0~5세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0~5세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대리보호 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돌보지 못하여 국가가 대리보호(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하는 아동의 비율 - (18세 미만 대리보호아동수/ 18세 미만 아동수)×100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업의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여부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급식지원 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세의 학생 중 학교 급식을 지원 받는 비율 - (학교급식 지원을 받는 6~17세 학생수 / 6~17세 아동수)×100 		○		○	없음
성폭력 피해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세 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 - (6~17세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수/ 6~17세 아동수)×100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권현황과 대책 연구』 1998
학대신고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학대로 신고되어 학대로 판명된 학대유형별 18세 미만 아동수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표 6-7〉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여성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여성정책·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 여성정책·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전공자 혹은 여성복지 전공자의 비율. - 여성정책·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여성(복지)관련 전공자/여성정책·복지 담당공무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전체예산 대비 여성정책·복지예산 비율*	- 전체예산 중 여성정책·복지예산의비율 - 여성정책·복지예산=(여성정책·복지예산/전체예산)×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서
여성인구 1인당 여성정책·복지예산*	- 여성인구 1인당 여성정책·복지예산 - 여성: 18세 이상~65세 미만 - 여성 1인당 여성정책·복지예산=(여성정책·복지예산/여성인구수)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서
육아 휴직제도 이용율*	-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 - 육아휴직이용률=[(육아휴직이용)응답한자/ 조사대상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가사 분담 비율*	-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부인에게 평소의 실제 가사분담 실태를 질문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계조사」에서 생산됨. - 가사: 육아, 식사준비(요리포함), 설거지, 청소, 세탁 등 온갖 집안일 의미. - 본지표의 가사분담비율은 조사대상자 중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 - 가사분담비율=[(공평하게 가사분담)응답한자/ 조사대상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자녀양육 분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 - 부부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부인에게 평소의 실제 자녀양육분담비율을 측정함. - 자녀양육이 부인의 주도일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스트레스로 여성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요 문제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공평하게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봄. - 본지표의 자녀양육분담비율은 조사대상자 중 ‘공평하게 자녀양육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응답한자의 비율. - 자녀양육분담비율=[(공평하게 자녀양육분담)응답한자/ 조사대상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정원)중 여성(현원)이 차지하는 공무원의 비중 파악. -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현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정원)]×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이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의의 - 본 지표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법률·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직 위원 중 여성(당연직 제외)의 비율 파악 -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여성위원수/위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여자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진학률은 당해연도 졸업자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 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 학교를 포함. - 여자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당해연도 여자 고등학생 대학 진학수/ 당해연도 여자 졸업생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 일부추가 조사
남자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진학률은 당해연도 졸업자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 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 학교를 포함. - 남자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당해연도 남자 고등학생 대학 진학수/ 당해연도 남자 졸업생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 일부추가조사

주 :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표 6-8〉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노인분야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노인 인구비*	-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 인구/ 총인구)×100	○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노인치매 유병률*	-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 비율 - (65세 이상 치매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장기 요양보호 욕구조사』,
노인만성 질환율*	- 65세 이상 노인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유병률 - (65세 이상 만성 질환의 종류별 노인 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경로연금 수급자비율*	-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연금 수급자의 비율 -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경제활동 참가율*	-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노인구직 활동비율	- 65세 이상의 노인 중 고령자 고용촉진 법에 의한 직업안정센터에 구직신청한 비율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종사상의 지위*	-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종사상의 지위 별 비율 • 종사상의 지위: 자영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65세 이상 종사상의 지위별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ADL 제한비율*	- 65세 이상 노인 중 목욕, 옷갈아입기, 식사,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 등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동작 (ADL)에 제한을 받고 있는 비율 - (65세 이상 ADL제한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장기 요양보호 육구조사』,
IADL 제한비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용품 구입, 전 화걸기, 버스·전철타기, 가벼운 동, 집 안일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에 제한을 받고 있는 비율 - (65세 이상 IADL제한 노인수/ 65세 이 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장기 요양보호 육구조사』,
노인 교통사고율*	- 6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 - (65세 이상 교통사고 경험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	- 65세 이상 노인이 가정에서의 안전사 고를 경험한 비율 - (65세 이상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경험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소비자 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주된 소득원*	-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된 가계소득 에 대한 출처별 비율 • 출처: 자녀보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공연금, 공공부조 등 -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가구 수/ 65세 이상 노인가구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 육구조사』
주택형태*	-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형태별 거주 비 율 • 주택의 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기타 - (65세 이상 주택형태별 거주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장기 요양보호 육구조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통계편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률*	- 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 -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체 예산대비 노인복지 예산*	-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비율. 노인복지예산은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예산과 타부서 노인관련 사업예산 포함 - (노인복지예산/ 전체예산)×100	○		○		지방 자치단체 예산서
노인1인당 노인복지 예산*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의 비율 - (노인복지예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100	○		○		지방 자치단체 예산서 지방 자치단체 통계연보
노인1인당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비율	- 노인인구 1인당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의 비율 - (노인복지관련 담당공무원수/ 65세 이상 인구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 회관의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음. 본 지표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 복지회관의 수 -(노인복지회관의수/65세 이상 인구수)×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노인건강 진단율*	-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질환의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비율 - 1) 무료건강진단: (65세 이상 검진인원 /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수)×100 2) 건강진단제도: (공교, 지역보험별 65세 이상 검진인원/ 65세 이상 노인수)×100 3) 자비부담 진단: (65세 이상 자비부담 검진인원/ 65세 이상 노인수)×100		○		○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 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진단 결과분석』 3) 없음
평생교육 참여율*	-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률 - (65세 이상 평생교육을 받아본 노인수 /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PC 이용률*	- 65세 이상 노인의 PC 이용률 - (65세 이상 PC 이용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노인 인터넷 이용률*	-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 -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노인의 주관적 건강*	- 65세 이상 노인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별 비율 •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 - (65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별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 자원봉사활동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노인 여가 활용방법*	-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의 종류별 비율 • 여가활동: 감상·관람, TV 시청, 창작 적 취미오락, 잡기 및 승부놀이, 스포 츠 및 여행, 수련 및 가사잡일, 기타 - (65세 이상 여가활동종류별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
정당 활동 참여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정당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 정당활동 참여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없음
시민단체 활동 참여율*	- 65세 이상 사교, 문화활동, 운동, 기타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별 참여자 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종교 활동참여율	- 65세 노인 중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 종교활동 참여 노인수/ 65 세 이상 노인수)×100		○		○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
재가복지 시설 종사자수	-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수	○			○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현황보고』
재가복지 시설 종사자비율	-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재가복지시 설 종사자비율 - (재가복지시설 총 종사자수/65세 이상 노인수)×1000	○			○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현황보고』
장기 입소시설 종사자수	- 장기입소시설(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	○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복지 시설조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현황보고 』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장기 입소시설 종사자 비율	-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입소시설(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사자비율 - (장기입소시설 총 종사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0	○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노인복지 시설조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현황보고 』
동거형태	- 65세 이상 노인의 동거형태별 비율 • 동거형태: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 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 (65세 이상 동거형태별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
교육수준	-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단계별 비율 - (65세 이상 교육단계별 졸업자수/ 65 세 이상 노인수)×100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노후 준비교육 참여율	-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준비교육을 받 아본 경험률 - (65세 이상 노후준비교육을 받아본 노 인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없음
여가복지 서비스이용 경험률	- 65세 이상 노인 중 여가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 - (65세 이상 여가복지시설 종류별 참여 자수/ 65세 이상 노인수)×100		○	○		(경로당이용 경험노인은 98년도 노인조사 결과에 있음)
노인 재가복지 시설 이용자 만족도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이용자 만 족도를 측정. 조사대상자 중 ‘매우만 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자들의 비율을 측정 -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응답한자/조사 대상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노인 재가복지 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만족도	-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시설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 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종사자의 근 무환경 만족도를 측정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 회관 종사자 수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회 관 종사자수 -(총 노인복지회관종사자수/65세 이상 인구수)×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노인회관 이용자 만족도	-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를 5 점 척도로 측정. - 조사대상자 중 ‘매우만족’하거나 ‘만족 하는편’이라고 응답한 자들의 비율을 측정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응답한자/조사 대상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학대 발생율	- 노인학대란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신 체적,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을 당하는 것 -(노인학대 발생건수/65세 이상 인구수) × 1,000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주 :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표 6-9〉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장애인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등록 장애인수*	-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수	○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보고 자료』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장애인 등록률*	-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의 비율 - (등록 장애인수/ 총 장애인수)×100	○	○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보고자료』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출현율*	- 총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 (장애인수/ 총 인구)×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인 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ADL 제한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목욕, 옷갈아입 기, 식사,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 등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동작(ADL)에 제한을 받고있는 비율 - (15세 이상 ADL제한 노인수/ 15세 이 상 노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IADL 제한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용품 구입, 전화걸기, 버스·전철타기, 가벼운 운동, 집안일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에 제한을 받고 있는 비율 - (15세 이상 IADL제한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 18세 이상 장애인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별 비율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 - (18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별 장애인 수/ 18세 이상 장애인)×100		○		○	지방 자치단체 별도조사
장애원인*	- 장애인의 장애가 된 원인 - (장애원인별 장애인수/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구직활동 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PC이용률*	- 15세 이상 장애인의 PC이용률 - (15세 이상 PC 이용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장애인 시설별 장애인 보호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 수용보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비율 - (15세 이상 장애인 수용보호시설 장애 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보호 장애인 수*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대비 보호받는 장애인의 수의 평균으로 추정하며, 이는 종사자의 소진(burn-out)의 주요 요인 으로서 종사자의 업무의 질을 향상하 고 보호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의 지표. -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수/ 장애인생활 시설 종사자수	○			○	지방 자치단체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등록장애인 1,000명당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비율*	- 장애인복지법 제 48조 2항에 규정된 장애인복지관,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의 료재활시설, 그룹홈, 체육시설, 수련시 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 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을 말함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 등록장애인 수)×1,0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중 사회복지 및 장애인 관련 전공자의 비율 - (사회복지 및 장애인관련 전공 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1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률*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 - (15세 이상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이 용경험자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현황 보고』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전체 예산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 예산을 정부정책 실현의 의지를 표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 지관련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은 지방정부의 총예 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율로 측정 - (장애인 복지예산/ 총예산)×100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율 -(장애인복지예산/ 등록장애인구수)×100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자 만족도*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과 관련 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이 용자 만족도 측정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응답한자/ 조 사대상수}×100		○		○	지방자치단체 별도조사
보장구 소지율*	- 15세 이상 장애인이 보장구를 소지하 고 있는 장 비율 - (15세 이상 보장구 소지 장애인수/ 15 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실태 조사』
저소득층 장애인 1,000명당 재활보조 기구 교부율*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등록 한 저소득층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뇌병 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지체, 심 장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 호기의 리모콘, 음성타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교부받은 장애인의 비율 -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 수/ 재 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대상 장애인 수)×1,0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취업 알선율*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안정기 관을 통해 구직 신청한 장애인 중 취 업한 비율 -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장애 인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장 애인수)×100		○		○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고용제외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 공무원 수의 비율 - (장애인 공무원 수/ 고용제외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수)×1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장애인 생활시설의 수용율*	- 장애인 생활시설 정원대비 현재 생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현원/ 장애인생활시설 수용정원)×1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여가 활동방법*	- 15세 이상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종류 별 비율 • 여가활동의 종류: 감상·관람, TV 시청, 창작적 취미오락, 잡기 및 승부놀이, 스포츠 및 여행, 수련 및 가사잡일, 기타 - (15세 이상 여가활동종류별 장애인 인 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자원봉사 참여율*	- 15세 이상 장애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 (15세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장애인 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시민단체 활동참여율*	- 15세 이상 사고, 문화활동, 운동, 기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 (15세 이상 각 시민단체 활동별 참여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종교활동 참여율	- 15세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15세 이상 종교활동 참여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 원, 『장애인 실태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사회활동 만족도*	- 15세 이상 사회활동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별 비율 •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 (15세 이상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별 사회활동 참여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가정내 차별*	- 15세 이상 장애인이 가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별 비율 •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없는 편임, 전혀 없음 - (15세 이상 가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별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 원 『장애인 실태조사』,
고용상 차별*	- (15세 이상 장애인이 고용시 노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는 정도별 비율 •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 없는 편, 전혀 없음 - (15세 이상 고용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별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재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 15세 이상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 -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응답한자/ 조사대상수)×100		○		○	지방 자치단체 별도조사
근린 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 근린생활시설(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수 대비 설치 수. - (설치수/ 설치대상 수)×100	○			○	지방 자치단체 내부자료
공공업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수 대비 설치 수 - (설치수/ 설치대상 수)×100	○			○	지방 자치단체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고 자료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의료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 종합병원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수 대비 설치 수 - (설치수/ 설치대상 수)×1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장애인 생활시설 정원대비 수용대상 장애인 (수급권자) 비율	-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대비 생활시설 수용대상 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의 수. - (수용대상 장애인수/장애인생활시설 수용정원)×100	○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	- 15세 이상 장애인이 가정에서의 안전 사고를 경험한 비율 - (15세 이상 가정 내의 안전사고 경험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교통 사고율	- 15세 이상 장애인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 - (15세 이상 교통사고 경험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재가복지 서비스 만족도	- 15세 이상 장애인의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별 비율 •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 (1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별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신체적부양 만족도	- 15세 이상 신체적 부양제공실태에 대한 만족도별 비율 •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 (15세 이상 신체적 부양 제공에 대한 만족도별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 수)×1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 조사』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부양 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장애인의 부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별 비율 •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 (15세 이상 부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별 장애인수/ 15세 이상 장애인수)×100 		○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주 :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표 6-10〉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및 지표: 보육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보육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시설, 민간(개인, 단체, 법인) 시설, 직장, 가정(놀이방)에 종사하는 자들의 1인당 보육아동수 - 종사자는 보육교사 이외의 시설장,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운전기사 등을 포함 - 종사자 1인당 보육아동수=(보육아동수/보육시설종사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영아전담 시설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전담시설 보육교사는 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씩 증원하게 되어 있으며, 2세 영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씩 증원(보육사업안내, 2004) - 영아는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가 많을 경우 보육교사는 업무의 효율성 뿐 만 아니라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적정 담당 아동수(3명)보호 - 영아전담시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보육아동수/ 영아전담시설보육교사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보육관련 담당공무원 전문성*	- 보육관련담당 공무원 중 사회복지전공 자 혹은 보육관련 전공자 비율 - 보육관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보육 (복지)관련전공자/보육담당공무원 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자료
보육시설 공급률*	- 보육시설의 종류(영유아보육법10조) : 국·공립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 설, 민간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개인, 단체, 법인시설)보육시설, 직장, 가정(놀이방) 포함 - 보육시설공급률=[보육시설정원/ 보육 대상아동(6세 미만)]×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영아전담 시설 설치율*	- 영아전담보육시설은(영유아 보육법 시 행규칙 제28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아전담시설 설치율=(영아전담시설수 /보육시설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 탁운영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자 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 하는 시설 -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보 육시설 정원대비 국·공립보육시설정원 을 비교함으로써 미래에 지역아동에 대한 보육욕구에 맞춰 국·공립보육시 설의 정원의 확대 및 시설확충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 - 보육시설정원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정원/보육시설 정 원)×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보육시설 이용률*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개인, 단체, 법인시설)보육시설, 직장, 가정(놀이방) 보육시설의 이용률 - 보육시설 이용률=(보육아동현원수/ 보 육아동정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개별통계	정의 및 산식	통계생산 방 법		지역통계 우선순위		참 고 자 료 원
		보고	조사	기본	선택	
영아전담 시설 이용률*	- 영아전담시설의 이용률 - 영아전담시설 이용률=(영아전담시설 현원수/ 영아전담시설 정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전체 예산대비 보육예산 비율*	- 전체 예산 중 보육예산의 비중 - 보육예산비율=(보육예산/ 전체예산)×100	○		○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서
장애전담 · 통합 시설 설치율	- (장애아복지법 제29조)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 장애전담·통합보육시설설치율=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보육시설수) ×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보육 대상아동 1인당 보육예산*	- 보육대상아동 1인당 보육예산의 수혜율 (보육대상: 6세 미만 - 영유아보육법) - 보육대상아동 1인당 보육예산= (보육예산/ 보육대상아동)×100	○		○		지방자치단 체 예산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의 만족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 측정 - ‘매우만족’, ‘만족’에 응답한 자들의 비율측정 - 보육시설이용 아동 학부모의 만족도 =[(매우만족+만족)응답한자/응답자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조사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율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아동의 안전보호. -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FVF=(화재보험 가입한 보육시설수/보육시설수)×100	○			○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내부자료

주 : *표는 제5장(지표체계개발)과 제6장(개별통계의 정의 및 생산방법)의 일치통계임

제 7 장 요약 및 정책과제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통계의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와 주요 선진국 지역통계의 생산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체계를 개발하여 보았다. 나아가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기본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본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생산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통계의 생산까지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결과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 96종(지역의 인구수·가구 수, 사업체 수 등) 중 64종이 전국 공통통계로서 지역간 비교를 통한 정책수립에는 유용하지만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통계연보에 수록된 복지관련 통계를 보면 보고통계가 10여종, 조사통계가 2~3종, 그리고 가공통계가 수개로 아주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복지통계의 생산현황을 생산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단위의 보고통계는 8종, 조사통계는 5종(17개 통계)으로 정리된다.

지역단위의 보고통계 8종은 지역사회배경,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민간자원이다. 다음 5종의 조사통계는 통계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5종은 복지우선과제, 소득수준, 가족관계, 고용구조, 그리고 사회참여 이다.

지역복지통계의 수요분석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현재의 복지선진국가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분석을 한 결과 지방정부가 신규로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문제들의 시급성 정도
-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지역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

2. 아동·청소년복지통계

- 아동보호유형
 - 공식적 보호: 방과 전·후 보호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주간가정보호센터, 임시보호, 유치원, 기타,
 - 비공식적 보호: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족, 기타
 - 두 유형의 보호를 모두 받지 않는 아동
- 노동과 아동보호
 - 부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여건
 - 탄력적 근무시간 조절여부
 - 기업의 양육지원 내용
- 출산관련 복지제도 이용여부(육아휴직제도 등)

3. 노인복지통계

- 고령사회대책 실태
 - 건강상태(개호 필요여부 등)
 - 가구구성(독거노인 여부 등)
 - 경제상태(경제활동, 소득 등)
-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 노인요양시설 현황

4. 장애인복지통계

- 차별경험
-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정도

5. 사회복지자원통계

- 자원봉사 및 NPO활동
-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

이들의 구성을 보면, 복지선진국가들의 일반추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정책관련 내용으로 고령사회대책, 아동보호, 육아휴직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정도와 NPO활동과 지역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실태에 대한 내용들이다.

오늘날 국민들의 사회복지, 후생, 여가 등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점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계에 대한 체계의 검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도시행의 각 단계별 통계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Logic Model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Logic Model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체계로부터 인적·물적 투입(자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입은 체계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성과인 유형·무형의

산출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궁극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써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흐름도(Flow-Diagram)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등 주요 5개 부문에 국한하여 통계체계를 개발하여 보았다. 통계체계의 구성틀은 복지제도가 놓여 있는 배경통계를 기본으로 구조통계(Input), 산출통계(Output), 성과통계(Outcomes), 그리고 복지제도 내외부 체계와의 관련성을 가진 통합통계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구조통계에는 대상, 전달, 재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통계체계개발에 사용된 개별통계의 선정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준 파악,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활용, 그리고 현재 복지선진국의 통계반영에 두었다. 지역복지정책에 필요한 개별통계의 현황은 7개분에 203개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개별통계의 분포를 보면, 노인과 장애인이 41개(20.1%), 아동 38개(18.7%), 공공부조 31개(15.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통계생산방법별로 볼 때 보고통계가 110개, 조사통계가 99개로, 통계필요 정도별로 볼 때 기본통계가 91개, 선택통계가 1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 정책과제

여기서는 앞에서 지적된 지역복지통계 생산 현황을 기초로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가. 중앙정부의 역할

1) 통계생산 계획의 정보공유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

다. 중앙과 지방은 통계생산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의 설계, 실시, 분석 그리고 예산의 확보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계전문가 양성 기능강화

최근 들어 지방정부에서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고조되면서 관련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 및 전문인력의 부재와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통계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무교육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이수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통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

지역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환경을 고려한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소지역통계생산기법과 각종 자료의 활용 기법 등을 중앙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통계생산의 표준화 방안 마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실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사표 개발 및 분석이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조사결과의 활용이 해당지역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후 조사에서도 표준화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상호비교 가능성이 높도록 표준화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지방정부의 역할

1) 통계생산 조직 및 인력의 확보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강조되면서 통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걸 맞는 통계담당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성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전문조사원의 원활한 확보는 조사실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원 DB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면접조사방법 등의 개발, 그리고 조사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조사능력향상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현재 통계청 지방사무소에서는 많은 통계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통계생산 보다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통계생산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이 미흡한 지방에서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지방통계생산을 기반으로 국가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 곳에서 통계생산을 관장할 경우 각 분야별 깊이 있는 통계생산보다는 다양한 통계생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의 직접 생산보다는 지도감독을 통한 원활한 통계생산이 가능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사 및 보고통계의 개선

가. 조사내용의 표준화와 지역조사방법론 연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실시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조사설계 부문이다. 이를 위하여 어떤 항목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산출방법과 중요도 등

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방법과 함께 각 항목의 정의 및 산출기준 등 조사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조사통계생산의 우선순위 결정

조사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통계 중 우선적으로 생산할 통계가 무엇인지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통계생산의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분야에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가 무엇이며 선택통계는 무엇인지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조사확대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생산을 위하여 국가통계의 생산방법과 기준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통계생산은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조사내용과 방법을 중앙과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복지정책DB 활용 강화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와 업무보고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통계를 받을 때에는 복지정책DB를 활용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정책DB는 지역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만 활용되고 풍부한 기초자료들이 사장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보고통계를 위해 별도 서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중 업무가 발생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그 동안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자료의 미입력 또는 부정확하게 입력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 입력자료의 검토·보완

1) 입력자료의 신뢰성(유효성) 검토 및 개선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력자료의 가능범위나 로직을 미리 설정하여 줌으로써 입력자가 자료를 범위 밖의 것 또는 입력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거나, 나아가 틀린 로직자료가 입력되는 경우, 확인 또는 검토요망의 신호가 작동되도록 입력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2) 입·출력구조의 보완: combo box의 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독립항목들이 조사되어야만 통계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자들 중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combo box내용에 없는 것들의 추가가 필요하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구) 유형 중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일본위안부 등 세부항목의 추가

바. 지속적인 feedback 시스템의 운영

중앙정부는 복지정책DB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자료가 발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수정을 요구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함과 아울러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미활용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동 시스템을 활용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신규공무원과 시스템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Online, Offline)도 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2004.
- 경기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_____, 『경기통계연보』, 2004.
- 경상남도,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_____, 『경남통계연보』, 2004.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4.
_____,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 고경환, 장영식, 도세록, 김형수, 이정우, 이내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통계체계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광주시, 『광주통계연보』, 2004.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4.
-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선기,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발전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심포지움 자료, 1994.12.
- 김승권·장영식·김영민·고미선·조윤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연구』, 인천광역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2004.
- 대전시, 『대전통계연보』, 2004.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공간현황』, 2004.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 사용지침서』, 2000.12.
_____,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안내』, 2005
_____,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_____, 『2001년도 복지행정시스템 사용안내』, 2001.
_____, 『복지정책 데이터베이스 다차원분석시스템』, 2001.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센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행정 -』, 2003.

-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2004.
- 부천시, 『부천시 사회지표』, 2004.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4.
- 송파구, 『송파지역사회지표』, 2004.
- 수원시, 『수원시 사회지표』, 2004.
-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2004.
- 윤혜미·김환준·강혜규, 『사회복지통계의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이병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8.
- 이은정, 『통계분석연구』, 제5권 제1호, 95, 2000.
- 이진주 외 4, 『사용자중심의 경영정보시스템』, 다산출판사, 1992.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2004.
- _____,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2004.
-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2004.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4.
- 정경희, 김미혜, 정순돌, 이윤경,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4.
- 종로구, 『종로구 사회지표』, 2004.
- 진주시, 『진주시 사회지표』, 2004.
- 최봉호, 『지역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5.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4.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4.
- 태안군, 『통계로 보는 태안군의 사회지표』,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총보고서』, 2004.
- _____, 『시도별추계인구』
- _____, 『인구이동통계연보』
-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 _____, 『사회통계조사』
- _____, 『통계목록』 2004.
- _____, 『정부승인통계목록』 2005.3.

_____, 『한국통계 조사현황(상권)』 2002

_____, 『지역통계연보』 2004.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용』, 2005.

地方財政調査研究會(2005) 『地方公共団体決算統計ハンドブック』ぎょうせい

地方財政調査研究會(2001) 『都道府縣決算状況調—平成11年度』日本加除出版 株式會社

地方財政調査研究會(2001) 『市町村別決算状況調—平成12年度』地方財務協會刊

土居 丈朗(2004) 『三位一体改革ここが問題だ』

總務省(2005) 『統計でみる都道府縣のすがた—2005』總務省統計局

總務省(2005) 『統計でみる市町村のすがた—2005』總務省統計局

總務省(2005) 『地方財政白書—平成17年版』國立印刷局

總務省統計局統計基準部(2004) 『統計調査總覽—國(府省等)』編

總務省統計局統計基準部(2004) 『統計調査總覽-地方公共団体—(都道府縣、市等)』編

독일노동 및 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5, Statistisches Taschenbuch, in: <http://www.bmas.bund.de/>

독일바이엔지방정부, Bericht der Staatsregierung zur sozialen Lage in Bayern

독일바이엔주지방통계청, 2005. <http://www.statistik.bayern.de/>

독일보건복지부, 2005,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ttp://www.bmgs.bund.de/>

독일연방통계청, 2005, Bundesstatistisches Amt, http://www.destatis.de/themen/d/t_hm_sozial.php

독일연방및지방통계사무소, 2005, <http://www.statistikporta.de/>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 2005, <http://www.nsw.go.au>

호주보건노동부, 2005, <http://www.health.gov.au/>

호주보건복지부, 2003, Australia's Welfare 2003

호주지방자치단체연합회, 2005, <http://www.alga.aun.au/>

호주통계청, 2005, "Year Book Australi. Income and welfare. Income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http://www.abs.호.머/Ausstats/...>

Lampert, H. & Althammer, J. Lehrbuch der Sozialpolitik. Berlin et al. Springer

Avrom Bendavid-Val, Regional and Local Economic Analysis for Practitioners, Praeger, 1983.

Gilbert, N., Specht, H., &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1998, p.3
_____,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Thome, P. G., and R. G. Willard, *The System Approach, a Useful Concept of Planning*,
Aerospace Management(General Electric Co.), Fall/Winter 1966.

W. K. Kellogg Foundation, *W. K. Kellogg Foundation Evaluation Handbook*, 1998.

University of Idaho(<http://www.uidaho.edu/extension/LogicModel.pdf>)

부 록

〈부표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필요통계

가. 지역특성 및 사회복지환경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인구 규모	○	○	○		
연령별 인구수 및 비율	○	○	○		
유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	○	○		
인구 규모·인구밀도·세대수	○	○	○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	○	○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	○	○		
인구 이동 현황	○	○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	○
사회복지대상별 인구수	○	○		○	
사회복지담당과 조직 및 인원 현황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			
사회복지관련 각종 기금현황		○			
사회복지관련 예산 현황	○	○		○	○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	○		○	○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	○	○		○	○
의료기관 수	○	○			
종교단체 수	○	○			
문화시설 수	○	○			

나. 노인복지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노인인구 및 노인인구 비율	○	○			○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성, 연령)	○	○		○	
노인인구 혼인상태, 교육수준 현황			○		
연령별 인구구성비	○	○			
경로연금 수급 현황	○	○			
노인인구의 사회복지수급자 현황	○				
지역별 노인가구 비율	○			○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분포	○		○		○
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	○	○	○	○	○
경로당 현황	○	○	○	○	
연도별 경로식당 이용현황	○				
노인의 건강진단 현황	○				
노인복지예산 내역		○	○		○
노인복지회관 사업실적		○			
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 현황		○			
사회복지관의 노인재가사업 현황		○			
장묘시설 현황				○	

다. 장애인복지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지역별 장애인 등록 현황	○	○	○	○	
장애인의 성별 현황	○			○	
장애인의 연령 현황	○			○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		○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	○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현황				○	

라. 여성복지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지역별·연령별 여성인구 현황	○	○	○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	○	○			
여성의 위원회 참여현황	○				
여성복지 사업 현황	○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금 실적	○				
이혼 건수 변화추이		○			
지역별·연령별 여성노인 인구현황		○			
여성 외국인 인구현황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복지예산 현황			○		

마.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아동인구 현황		○	○	○	
영유아 보육대상 아동수		○	○	○	
지역별·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인구 현황		○		○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인구 변화추이		○		○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정원		○	○	○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아동 정원		○		○	
영유아 보육률 현황		○	○	○	○
보육사업 예산 현황			○	○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		○	○
아동복지사업 계획 및 예산		○	○	○	
장애아 보육 현황				○	
청소년 규모		○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		○			○
청소년복지 예산 현황		○			

바. 기초보장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특성별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현황	○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현황			○		
조건부 수급자 규모 및 사업참여 현황	○	○			
자활후견기관 직원현황	○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사. 보건·의료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보건의료 기관 현황					○
보건의료사업 현황					○

아. 사회복지 민간자원

구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G지역	A지역	H지역	I지역	C지역
자원봉사자 현황					○
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

자료: 각 지역(기초, 광역)의 통계연보
 각 지역(기초, 광역)의 사회지표, 각 지역의 시민의식조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안내지침, 2005

〈부표 2〉 모자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명	개별통계	조사사항	조사주기
아오모리현	1) 모자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표	세대·주택·건강상태, 수입, 복지제도의 이용상황 등	5년
후쿠이현	1) 모자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표		5년
이바라키현	1)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모자세대) 2)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과부)		1회한정
군마현	1) 기초조사표 2)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모자세대) 3)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부자세대) 4)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양육자세대)		5년
도치기현	1)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모자세대) 2)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부자세대) 3) 모자세대 등 실태조사표 (과부세대)		1회한정
이시가와현	1)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 실태조사표 2) 과부세대 등 실태조사표		5년
야마나시현	1) 모자세대 및 보자세대실태조사표		4년
시즈오카현	1) 모자세대 및 보자세대실태조사표		5년
아이치현	1) 모자세대 및 보자세대실태조사표		5년
나고야시	1) 모자세대 및 보자세대실태조사표		5년
시가현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부모가 없는 아동세대 생활실태조사표 4) 과부세대 생활실태조사표		5년

〈부표 2〉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개별통계	조사사항	조사주기
돗토리현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과부세대 생활실태조사표	세대·주택·건강상태, 수입, 복지제도의 이용상황 등	5년
시마네현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과부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5년
후쿠오카현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과부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양육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세대·주택·건강상태, 수입, 복지제도의 이용상황 등	5년
기타큐슈시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양육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5년
후쿠오카시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양육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5년
구마모토현	1) 모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2) 부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3) 과부세대 생활실태조사표 4) 양육자세대 생활실태조사표		5년
오кина와현	1) 모자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표		5년
야마구치현	1) 모자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표 (모자, 부자, 양육자세대용) 2)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에 대한 실태조사표 (과부세대용)		5년

〈부표 3〉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기초생활보장

부 문	통 계 명
1. 일반현황	수급자 개인특성, 수급자 가구특성, 수급자 주거현황, 수급자 차량보유현황
2. 수급자 소득/재산	소득/재산 분포, 소득유형별 분포, 재산유형별 분포, 소득공제유형별 분포, 재산공제유형별 분포, 개인특성별 소득분석
3. 부양의무자 현황	부양의무자 특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분포, 부양의무자 소득분석, 부양의무자 재산분석, 수급자-부양의무자
4. 수급자 급여실적	가구급여실적, 개인급여실적, 긴급급여실적, 교육급여대상자 교육급여실적보고, 급여계좌분석, 사회보험급여분석, 타법지원분석
5. 수급자 관리	가구육구, 급여신청, 보장사유, 급여중지(보장대상탈피), 전출입분석, 소득등급변동, 소득등급변동사유, 시설일반, 시설수급자, 미신고시설거주
6. Welfare-net 조회결과	지적정보, 실업급여, 퇴직금정보, 종합소득정보,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자대부
7. 용자/영구 임대주택	용자신청, 용자승인, 영구임대주택
8. 자활사업 일반현황	자활사업별 조건불이행사유, 자활대상자별 자활실패이유, 자활사업 예산현황, 자활수득현황, 자활사업계획 및 참여현황, 재심사요청현황
9. 자활사업 내용현황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 수익금처리현황, 예산/사업기간 등 민간위탁기관 사업내용, 지역봉사/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별 참여인원
10. 자활 후건기관	자활후건기관별 종사자 현황, 자활후건기관 지정현황
11. 국민 기초생활 보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부표 4〉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노인

부 문	통 계 명
1. 노인 일반현황 및 생활실태	인구현황, 평균수명, 노인가구, 일반가구, 노인생활형태, 자가소유노인, 노인이혼, 노령화지수, 치매정도별 치매노인, 연령별 치매노인, 노인자살율, 노인진료비 현황, 각종 연금수급 현황
2. 노인 취업현황	성별 취업노인, 직업별 취업노인, 국가별 취업노인, 노인공동작업장 현황
3. 경로연금	급여실적, 시설보호노인 수급현황
4. 재가노인 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봉사 교육기관 교육현황, 가정봉사 파견시설 교육이수종사자 현황
5.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현황, 경로식당 운영기관별 현황, 전체노인대비 경로식당 이용자현황, 무료식사배달사업 현황, 무료식사배달사업기준정보, 전체노인대비 무료식사배달사업 급식지원자 현황, 무료식사배달사업 급식지원자, 무료식사배달사업 배달봉사자
6. 노인건강 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결과 현황, 노인건강진단 질병내역 현황
7. 치매상담 센터 및 병원	치매상담센터 현황, 치매상담센터 등록노인, 노인수급자 치매상담센터등록 현황 치매상담센터전문요원, 노인전문병원/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8.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경로당현황
9.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유료시설비용 현황, 자원봉사자현황, 시설종별 시설수·입소자수·직원수 증감현황, 시설입소자 법정 정원/현원, 법정배치 인원 및 현원수/비율, 종사자 연령별/성별현황, 종사자 직종별/성별인원수, 직종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등급별 소지자수/비율
10. 예산현황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예산,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지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산, 무료식사배달사업 예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예산,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시설비 예산,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예산
11. 장래	장래현황, 법인묘지 현황, 공설묘지 현황, 집단묘지 현황, 묘지사용 현황, 화장현황, 시설별 현황, 화장장시설부지/시설건평 현황, 화장로 현황, 납골시설 시설별 현황, 납골시설부지/시설건평 현황, 화장/납골실적 현황, 매장/화장/납골 사용현황, 납골현황

〈부표 5〉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장애인복지

부 문	통 계 명
1. 장애인현황	장애진단 기관현황, 장애인복지일반, 장애인복지카드
2. 생활안정 지원	자립자금유자 현황
3.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주체별 시설운영 현황, 시설현황, 시설설치시군구 비율, 복지관/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자 현황, 공동생활가정장애등급별 이용자현황, 예산현황, 장애인복지관운영비 현황,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현황, 의료재활시설 이용자 현황, 의료재활시설 직종별 현황,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이수자, 장애인복지관 직급별 직원 현황, 직원현황, 장애인복지관 직종별 직원 현황, 의료재활시설 진료과목별 이용자 현황, 차량보유 현황, 차량종류별 현황, 체육관이용자 현황, 의료재활시설 치료종류별 이용자 현황, 장애인복지관 컴퓨터기종별 현황, 장애인복지관 컴퓨터용도별 현황
4. 생활시설	생활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현황, 시설종별 시설입소자 법정정원현원, 시설종별 법정배치인원 및 현원수/비율, 시설종별 시설수·입소자수·직원수 증감현황, 시설별 자부담세부내역 현황, 시설별 예산현황
5. 직업재활 시설	상위시설전이현황, 생산품구매현황,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용 현황, 연령별 직업재활시설 이용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현황,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생산현황, 작업/보호/직업훈련시설 임금지급 현황, 근로작업시설 임금지급 현황, 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실적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증감현황, 직업훈련시설운영실적현황, 직업재활시설 직원현황
6. 재활보조기구	장애유형별성별 무료교부, 장애유형별/품목별 무료교부, 재활보조기구 예산, 재활보조기구 설립형태 현황, 재활보조기구 자본규모 현황, 재활보조기구 종사자현황, 재활보조기구 종사자 직종별 현황, 재활보조기구 생산품목별 현황
7. 실태조사	장애인 및 비장애인가구 현황,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지출현황, 장애인가구현황, 장애인유형별재가장애인현황, 차량종류별 차량보유장애인 현황, 차량명의자별 장애인차량 현황, 통행료할인카드발급장애인 현황, LPG차량 소유장애인 현황

〈부표 6〉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아동복지

부 문	통 계 명
1. 아동보호 일반	시설입소자아동특성1, 시설입조사아동특성2, 아동시설 입퇴소 현황, 소년소녀가장특성, 가정위탁보호아동특성, 가정위탁 가구특성, 그룹홈 운영비용, 그룹홈 일반, 그룹홈 보호아동특성
2. 미아찾기	아동카드작성아동, 미아신고아동, 가정복귀아동
3. 결연사업	결연현황
4. 아동학대	학대아동특성, 아동학대행위자
5. 입양	국내입양현황, 장애아입양, 의료비/양육비지원아동
6.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특성, 결식아동중 수급자수
7.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친인척종사자, 아동복지시설자격증소지자, 신고/미신고시설, 법인설립자와 운영자와의관계, 시설종별 법정배치인원 및 현원수/비율. 종사자 직종별/성별 이직율, 직종별 사회복지사자격등급별 소지자/비율, 시설종별 시설입소자 법정정원/현원/입소율, 시설종별입소자 종류별 입소현황
8. 보육일반 현황	보육시설정·현원현황, 보육시설유형별·지역별분포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설치현황
9. 저소득층지원	저소득층지원현황, 무상보육현황
10. 보육정보 센터	보육센터설치현황, 보육정보센터종사자
11. 특수보육 현황	영아현황, 취학전 장애아동, 장애아동보육현황

〈부표 7〉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모부자복지

부 문	통 계 명
1. 저소득모부자 가구특성	가구유형, 주거현황, 보장사유, 차량현황
2. 저소득모부자 개인특성	가구주특성, 자녀현황
3. 수급현황	교육급여대상자, 아동양육비 개인급여실적, 급여증지
4. 소득재산현황	소득유형별 분포, 재산유형별 분포, 소득재산분포
5. 생업자금융자 및 영구임대 아파트	융자신청, 융자승인, 입주현황
6.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공통특성, 입소자퇴소현황, 시설종별 시설입소자 법정인원/현원/입소율, 시설종별 법정배치인원 및 현원수 비율, 직종별 사회복지사 자격등급별소지자수/비율, 후원금 사용내역현황, 평균후원금 및 후원금증감현황
7. 모자일시 보호시설	입소자특성, 배우자특성, 입소시 동반한 아동특성
8. 미혼모시설	입소자시설
9. 모자자립, 보호시설	입소자특성

〈부표 8〉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복지지원

부 문	통 계 명
1. 자원봉사	자원봉사분포, 자원봉사현황
2. 결연사업	연도별결연현황, 복지분야별 결연현황, 협회별 결연현황
3. 푸드뱅크	회원현황, 연도별 회원현황, 기탁현황, 분배현황, 폐기실태, 홍보실적, 기탁물품가액, 장비보유현황, 장비보유율, 정보화장비현황
4. 재가복지 봉사사업	시설현황, 종사자 성별 현황, 자원봉사 현황, 사회복지사 현황, 재원조달현황
5. 부랑인사업	입퇴소 현황, 연령별분포 현황, 상태별 분포 현황, 직업재활실적, 시설종별 법정배치인원 및 현원, 시설종별 입소자 법정정원/현원/입소율, 시설별 예산현황
6. 노숙자 보호사업	거리노숙자현황, 시설현황, 입퇴소인원 추이, 취업현황, 퇴소사유별 현황, 거리상담 실적, 사회복지사 현황, 재원조달 현황

〈부표 9〉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복지대상자

부 문	통 계 명
1. 일반현황	개인특성, 가구특성, 주거실적, 차량보유실적
2. 소득/재산	소득/재산분포, 소득유형별 분포, 재산유형별 분포, 소득공제유형별 분포, 재산공제유형별 분포, 개인특성별 소득분석
3. 수급자 급여실적	가구급여실적, 개인급여실적, 급여계좌분석, 사회보험급여분석
4. 복지 대상자 관리	가구육구, 급여신청, 보장사유, 급여증지(보장대상탈피), 전출입분석, 소득등급변동, 소득등급변동사유, 시설일반, 시설수급자
5. 용자/영구 임대주택	용자신청, 용자승인, 영구임대주택

〈부표 10〉 복지정책 DB상의 생산가능 통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부 문	통 계 명
1. 사회복지 시설일반	시설종별 시설수/입소자수/직원수 증감현황, 한개법인내 시설소유현황, 법인 설립자와 운영자의 관계
2.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종사자연령별/성별 현황, 종사자직종별/성별 인원수, 시설종별 법정배치인원 및 현원수/비율, 직종별 사회복지사 자격등급별 소지자수/비율, 종사자 직종별/성별 이직율
3. 사회복지 시설입소자	시설종별 시설입소자 법정정원/현원/입소율, 시설종별 입소자종류별 입소현황
4. 사회복지 시설예산	시설별 예산현황, 시설별 자부담 세부내역 현황, 시설별 수입현황
5. 사회복지 시설후원금	후원금 규모별 현황, 후원금 사용내역별 현황, 평균후원금 및 후원금 증감현황
6. 복지관 일반	이용시설현황, 이용자현황, 자원봉사현황, 자원봉사자 분포
7. 복지관 종사자	종사자현황, 종사자연령별 분포, 종사자복지사 자격증현황
8. 복지관 예산및 후원금	예산현황, 지출현황, 후원금추이, 규모별 현황

연구보고서 2005-18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Production of Welfare Statistics by Local Governments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8,000원
저 자	고 경 환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59-3 93510